

어선법 관련 법령집

2010. 4.



총 목 차

<input type="checkbox"/> 어선법 · 시행령 · 시행규칙	1
<input type="checkbox"/> 어선의 등록 등에 관한 수수료 규칙	270
<input type="checkbox"/> 어선검사업무 등에 관한 대행업무 범위	272
<input type="checkbox"/> 어선 건조 · 개조허가 오차 허용범위	274
<input type="checkbox"/> 어선 명칭의 크기 및 표시 방법 등에 관한 고시	276

- 목 차 -

어선법	어선법 시행령	어선법 시행규칙	쪽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8
제2조(정의)		제2조(정의)	8
		제3조(신청·신고등의 의무자)	10
제3조(어선의 설비)			10
제4조(만재흡수선의 표시)		제41조(만재흡수선의 표시 생략)	11
제5조(무선설비)		제42조(무선설비의 설치대상어선 등)	12
제6조(국제협약 규정의 적용)			12
제2장 어선의 건조		제2장 어선의 건조·개조 등의 허가 등	12
제7조(어선의 건조조정) <삭제>			12
제8조(건조·개조의 허가 등)		제4조(건조·개조등의 허가구분)	12
		제5조(건조·개조등의 허가신청)	13
		제6조(개조 등의 허가 면제)	15
		제7조(건조·개조등의 허가조건 등)	15
제9조(어선의 건조·개조공사)<삭제>		제8조(건조·개조등의 착공계 제출)<삭제>	16
제10조(허가의 취소 등)		제9조(양도등의 허가신청)<삭제>	16
제11조(현장의 확인)<삭제>		제10조(공무원의 증표)<삭제>	17
제12조(현장확인공무원의 직무)<삭제>		제11조(허가서등의 재발급신청)<삭제>	17

어선법	어선법 시행령	어선법 시행규칙	쪽
제3장 어선의 등록		제3장 어선의 등록 및 톤수측정	17
제13조(어선의 등기와 등록)		제21조(등록의 신청 등)	17
		제22조(선적항의 지정등)	18
		제23조(등록사항)	20
		제33조(선박국적증서등의 서식)	21
		제34조(선박국적증서의 영역서의 발급 신청 등)	21
		제27조(어선명칭의 변경승인신청)<삭제>	22
		제28조(등록사항의 정정 신청 등)	22
		제30조(어선원부의 등본·초본의 발급신청 등)	23
		제31조(관할 구역 등의 변경에 따른 조치 등)	23
		제32조(등록 등의 통보)	23
제13조의2(소형어선 소유권 변동의 효력)			24
제13조의3(압류등록)	제2조(소형어선에 대한 압류등록)		24
	제3조(현장확인공무원의 자격 등) <삭 제>		25
제14조(어선의 총톤수 측정 등)		제12조(총톤수의 측정 또는 개측 신청)	25
		제13조(총톤수의 측정등의 장소)<삭제?	26
		제14조(총톤수측정등)	26
		제15조(어선총톤수측정증명서의 발급 등)	27
		제16조(건조중인 어선에 대한 총톤수의 부분측정)	27
		제17조(국제톤수증서등의 발급 신청 등)	28
		제18조(재화중량톤수증서의 발급 신청)	30
		제19조(국제톤수증서등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의 신고) <삭제>	31
		제20조(어선총톤수측정증명서등의 재발급 등) <삭제>	31

어선법	어선법 시행령	어선법 시행규칙	쪽
제15조(선박국적증서등의 비치)		제33조의2(선박국적증서등의 비치의무 면제)	31
제16조(어선 명칭등의 표시와 번호판의 부착)		제24조(어선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제25조(어선번호판의 제작등)	31 32
제17조(등록사항의 변경)		제26조(등록사항의 변경 신청)	33
제18조(선박국적증서등의 재발급)		제40조(선박국적증서등의 재발급신청 등)<삭제>	34
제19조(등록의 말소와 선박국적증서등의 반납)	제4조(직권등록말소의 예외)	제29조(등록말소와 어선원부의 보관) 제39조(선박국적증서등의 무효 통보)	34 35
제20조(선박국적증서등의 검인)<삭제>		제35조(선박국적증서등의 검인신청) <삭제> 제36조(선박국적증서등의 검인절차) <삭제> 제37조(선박국적증서등의 검인기일) <삭제> 제38조(검인기일의 연기신청등) <삭제>	35 35 35 35
제4장 어선의 검사		제4장 어선의 검사	35
제21조(어선의 검사)		제43조(정기검사) 제44조(중간검사) 제45조(중간검사시기의 연기) 제46조(특별검사) 제47조(임시검사) 제48조(임시항행검사) 제49조(어선의 검사 면제 등)	36 37 39 40 40 43 44
제22조(건조검사 등)		제50조(건조검사) 제51조(건조검사의 면제) 제52조(예비검사) 제53조(별도건조검사)	45 46 46 48

어선법	어선법 시행령	어선법 시행규칙	쪽
		제54조(도면의 승인 등) 제55조(검사의 준비 등) 제56조(검사의 준비 및 서류제출의 완화 등) 제57조(어선검사사항의 통지) 제58조(어선 검사 등의 참여)	49 50 51 52 52
제23조(검사사항의 변경)<삭제>			53
제24조(형식승인 및 검정 등)		제59조(형식승인의 신청 등) 제59조의2(검정의 신청 등) 제59조의3(형식승인의 변경 신청 등)	53 53 54
제25조(어선 등 우수건조사업장 등의 지정)		제59조의4(우수사업장의 지정기준 등) 제59조의5(우수사업장의 지정 등) 제59조의6(지정받은 사항의 변경) 제59조의7(지정대상물건의 확인 방법 및 절차) 제59조의8(지도·감독)	55 55 57 57 59
		제60조(하역설비의 확인) 제61조(하역설비의 확인신청) 제62조(하역설비에 관한 검사의 기록 및 비치)	59 59 60
제26조(어선검사공무원)<삭제>			60
제27조(검사증서의 발급 등)		제3절 어선검사증서등 제63조(검사증서의 서식 등) 제64조(어선검사증서의 기재사항 등) 제65조(검사증서등의 합격표시 등)	60 60 61 62
제28조(검사증서의 유효기간)		제66조(어선검사증서 유효기간 계산방법)	62

어선법	어선법 시행령	어선법 시행규칙	쪽
		제67조(어선검사증서 유효기간 연장)	63
제29조(검사증서등의 비치)		제68조(검사증서등의 비치면제)	64
제30조(재검사의 신청)		제69조(재검사등)	65
제5장 어선협회<삭제>			65
제31조(어선협회)<삭제>	제5조(업무)<삭 제> 제6조(임원)<삭 제> 제7조(임원의 임기)<삭 제> 제8조(임원의 직무)<삭 제> 제9조(승인사항)<삭 제> 제10조(예산과 결산)<삭 제>		65 65 65 65 65 66
제6장 어선의 연구·개발			66
제32조(어선의 조사·연구)			66
제33조(표준어선형의 개발)			66
제7장 어선의 관리등<삭제>			66
제34조(외국인에 대한 어선의 양도등)<삭제>	제11조(임차어선에 대한 법적용)<삭 제> 제12조(양도등의 허가대상)<삭 제> 제13조(양도등의 허가기준)<삭 제> 제14조(양도등의 허가절차)<삭 제>		66 66 66 66
제35조(방치어선의 관리)<삭제> 제36조(책임보험등의 가입)<삭제>	제15조(방치어선의 관리·처분등)<삭 제> 제16조(보험등의 가입등)<삭 제>		66 66
제8장 보칙		제5장 보칙	66

어선법	어선법 시행령	어선법 시행규칙	쪽
제37조(다른 법령의 준용)		제70조(어선의 결함신고) 제71조(증서등의 재발급 등)	66 67
제38조(청문)	제17조(청문의 절차)<삭 제>		69
제39조(수수료)			69
제40조(권한의 위임)	제18조(권한의 위임)		70
제41조(검사업무 등의 대행)		제72조(등록업무 등의 실적보고)	70
		제73조(등록업무 등의 확인·점검)	71
		제74조(대행업무의 고시등)	71
		제75조(대행업무 등의 계획·실적보고 등)	72
		제76조(대행업무의 지도·감독)	72
제41조의2(공단에 대한 경비의 보조)			72
제42조(법정대리인의 의무)		제77조(규제의 재검토)	73
제43조(벌칙)			73
제44조(벌칙)			74
제45조(벌칙)<삭제>			75
제46조(벌칙)			75
제47조(벌칙)			75
제48조(양벌규정)			75
제49조(벌칙의 준용)			76

어선법	어선법 시행령	어선법 시행규칙	쪽
제50조(벌칙의 적용)			76
제51조(벌칙 적용의 예외)			77
제52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77
제53조(과태료)	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77
부칙	부칙 시행령 별표	부칙 시행규칙 별표 시행규칙 별지	78
제 정 1977. 12. 31 법률 제3063호 1982. 12. 31 법률 제3641호 일부개정 1986. 5. 12 법률 제3829호 1986. 12. 31 법률 제3907호 1991. 3. 8 법률 제3641호 1991. 12. 14 법률 제4441호 전부개정 1993. 6. 11 법률 제4559호 1995. 12. 30 법률 제5131호 1996. 8. 8 법률 제5153호 1997. 12. 13 법률 제5453호 1997. 12. 17 법률 제5470호 일부개정 1999. 2. 8 법률 제5921호 1999. 4. 15 법률 제5971호 1999. 4. 15 법률 제5972호 2002. 1. 14 법률 제6609호 2007. 1. 3 법률 제8221호 2008. 2. 29 법률 제8852호 일부개정 2008. 3. 28 법률 제9007호 일부개정 2009. 5. 27 법률 제9718호	제 정 1978. 11. 6 대통령령 제 9198호 일부개정 1981. 3. 20 대통령령 제10257호 일부개정 1987. 1. 24 대통령령 제12066호 1987. 8. 13 대통령령 제12225호 일부개정 1988. 11. 14 대통령령 제12543호 1990. 12. 18 대통령령 제13184호 1991. 2. 18 대통령령 제13308호 1991. 4. 18 대통령령 제13353호 전부개정 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90호 1996. 8. 8 대통령령 제15135호 일부개정 1997. 7. 29 대통령령 제15447호 일부개정 1997. 12. 31 대통령령 제15598호 1998. 7. 1 대통령령 제15830호 일부개정 1999. 4. 7 대통령령 제16226호 일부개정 2002. 6. 3 대통령령 제17623호 일부개정 2004. 3. 17 대통령령 제18312호 일부개정 2008. 2. 29 대통령령 제20677호 일부개정 2008. 6. 25 대통령령 제20867호 일부개정 2009. 11. 2 대통령령 제21803호	제 정 1978. 12. 30 농수산부령 제 748호 일부개정 1979. 5. 25 농수산부령 제 762호 일부개정 1981. 6. 15 농수산부령 제 831호 일부개정 1982. 12. 29 농수산부령 제 876호 일부개정 1984. 2. 15 농수산부령 제 907호 전부개정 1987. 6. 20 농림수산부령 제 979호 1990. 5. 23 농림수산부령 제 927호 일부개정 1990. 9. 22 농림수산부령 제1053호 일부개정 1993. 4. 17 농림수산부령 제1118호 전부개정 1994. 6. 16 농림수산부령 제1143호 일부개정 1998. 1. 24 해양수산부령 제 48호 1998. 9. 5 해양수산부령 제 70호 일부개정 1999. 5. 17 해양수산부령 제 117호 2000. 1. 6 해양수산부령 제 156호 일부개정 2001. 12. 31 해양수산부령 제 212호 일부개정 2002. 7. 15 해양수산부령 제 231호 일부개정 2004. 8. 7 해양수산부령 제 277호 일부개정 2007. 10. 18 해양수산부령 제 386호 일부개정 2007. 11. 23 해양수산부령 제 390호 일부개정 2008. 2. 4 해양수산부령 제 408호 일부개정 2008. 2. 27 해양수산부령 제 413호 일부개정 2008. 3. 3 농림수산물부령 제 1호 일부개정 2008. 7. 8 농림수산물부령 제 19호 일부개정 2009. 12. 14 농림수산물부령 제 101호	

어선법	어선법 시행령	어선법 시행규칙
<p style="text-align: center;">제1장 총칙</p> <p>제1조(목적) 이 법은 어선의 건조·등록·설비·검사 및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선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전성을 확보하고, 어선의 성능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어업생산력의 증진과 수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5.27>[전문개정 2008.3.28]</p>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어선"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p> <p>가. 어업, 어획물운반업 또는 수산물가공업(이하 "수산업"이라 한다)에 종사하는 선박</p> <p>나. 수산업에 관한 시험·조사·지도·단속 또는 교습에 종사하는 선박</p> <p>다. 제8조제1항에 따른 건조허가를 받아 건조 중이거나 건조한 선박</p> <p>라. 제13조제1항에 따라 어선의 등록을 한 선박</p> <p>2. "개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p>	<p>제1조(목적) 이 영은 「어선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25></p>	<p style="text-align: center;">제1장 총칙</p>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어선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7.8></p> <p>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7.8, 2009.12.14></p> <p>1. "배의 길이"란 최소 형깊이(「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 제2조제5호에 따른 형깊이와 같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의 85퍼센트에 있어서의 계획만재흘수선에 평행한 흘수선 전 길이의 96퍼센트 또는 그 흘수선에 있어서 선수재의 전면으로부터 타두재의 중심까지의 길이중 큰 것을 말한다. 다만, 상갑판 보의 상면의 선수재 전면으로부터 선미외판 후면까지의 수평거리(이하 "측정길이"라 한다)가 24미터미만인 어선에 있어서는 상갑판 보의 상면에서 선수재 전면으로부터 타주가 있는 경우에는</p>

- 가. 어선의 길이·너비·깊이(이하 "주요치수"라 한다)를 변경하는 것
- 나. 어선의 추진기관을 새로 설치하거나 추진기관의 종류 또는 출력을 변경하는 것
- 다. 어선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어업의 종류를 변경할 목적으로 어선의 구조나 설비를 변경하는 것 [전문개정 2008.3.28]

- 타주의 후면까지, 타주가 없는 경우에는 타주재의 중심까지의 수평거리를 말한다.
- 2. "배의 깊이"란 배의 길이의 중앙에 있어서의 형깊이를 말한다.
- 3. "배의 너비"란 금속재외판이 있는 어선의 경우에는 배의 길이의 중앙에서 늑골외면간의 최대너비를 말하고, 금속재외판 외의 외판이 있는 어선의 경우에는 배의 길이의 중앙에서 선체외면간의 최대너비를 말한다.
- 4. "만재흡수선"이란 어선이 사람과 어획물 또는 화물을 신고서 안전하게 항행할 수 있는 최대한의 흡수를 나타내는 선을 말한다.
- 5. "동력어선"이란 추진기관[선외기(船外機)]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한 어선을 말한다.
- 6. "무동력어선"이란 추진기관을 설치하지 아니한 어선을 말한다.
- 7. "선령"이란 어선이 진수한 날부터 경과한 기간을 말한다.
- 8. "검사기준일"이란 어선검사증서의 유효기간 시작일부터 해마다 1년이 되는 날을 말한다.
- 9. "국제항해"란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에 이르는 해양을 항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한 나라가 국제관계에 관하여 책임이 있는 지역 또는 국제연합이 시정권자인 지역은 별개의 나라로 본다.
- 10. "도면"이란 설계도·사양서·계산서·표·자료 등 어선의 치수·형상 및 성능 등을 나

제3조(어선의 설비) 어선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갖추어야 한다.

1. 선체
2. 기관
3. 배수설비
4. 돛대
5. 조타·계선·양묘설비
6. 전기설비

타내는 서류를 말한다.

제3조(신청·신고등의 의무자) ① 이 규칙에 의한 신청·신고 기타 서류의 제출과 증서·증명서의 반환은 어선의 소유자(어선관리인 또는 어선임차인을 포함하며, 소유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소유자가 미성년자·한정재산자 또는 금치산자인 경우로서 「어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에 따라 법정대리인이 어선의 총톤수측정·개측의 신청 등의 의무자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선장이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유자 또는 선장은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5.17, 2008.7.8>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대리인이 신청 등을 할 때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08.7.8>

- 7. 어로·하역설비
- 8. 구멍·소방설비
- 9. 거주·위생설비
- 10. 냉동·냉장 및 수산물처리가공설비
- 11. 항해설비
- 12.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설비
[본조신설 2009.5.27]

제4조(만재흡수선의 표시) 길이 24미터 이상의 어선의 소유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만재흡수선(滿載吃水線)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은 만재흡수선의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5.27]

제5조(무선설비) ① 어선의 소유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전

제41조(만재흡수선의 표시 생략) 법 제4조 단서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선을 말한다.

1. 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수산업에 관한 시험·조사·지도·단속 또는 교습에 종사하는 어선
2. 선단조업형태의 어업을 하는 어선 중 어획물 또는 그 가공품을 해당 어선에 적재하지 아니하고 어로작업에만 종사하는 어선
3. 법 제21조제1항제5호에 따라 임시항행검사를 받고 항행하는 어선
4. 시운전을 위하여 항행하는 어선
5. 목선과 그 밖에 만재흡수선을 표시하는 것이 구조상 곤란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어선
[본조신설 2009.12.14]

제42조(무선설비의 설치대상어선 등) ① 법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과법」에 따른 무선설비를 어선에 갖추어야 한다. 다만,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에는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에 따른 세계해상조난 및 안전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무선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무선설비는 「전파법」에 따른 성능과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어선이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항행의 목적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무선설비를 갖추지 아니하고 항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5.27]

제6조(국제협약 규정의 적용) 국제협약의 적용을 받는 어선의 경우 그 협약의 규정이 이 법의 규정과 다를 때에는 해당 국제협약의 규정을 적용한다.[본조신설 2009.5.27]

제2장 어선의 건조

제7조(어선의 건조조정) <삭 제> <1999.2.8>

제8조(건조·개조의 허가 등) ① 어선을 건조하거나 개조하려는 자 또는 어선의 건조·개조를 발주하려는 자는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물부장관이나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

정하는 어선”이란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300톤 이상의 어선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선을 말한다.

1. 어획물운반업 또는 수산가공업에 종사하는 어선
2. 수산업에 관한 시험·조사·지도·단속 또는 교습에 종사하는 어선

②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항행의 목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임시항행검사증서를 가지고 1회의 항행에 사용하는 경우
2. 시운전을 하는 경우 [본조신설 2009.12.14]

제2장 어선의 건조·개조 등의 허가 등

제4조(건조·개조등의 허가구분)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어선의 건조·개조 또는 건조발주·개조발주의 허가권자(그 변경허가권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2.7.15, 2008.2.4, 2008.2.27,>

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이하 "건조·개조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3.28>

② 삭제 <1999.2.8>

③ 농림수산물부 장관은 건조·개조허가를 받은 어선의 주요치수·성능 및 총톤수 등에 관하여 오차허용범위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오차허용범위 안의 어선에 대하여는 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8.3.28>

④ 농림수산물부 장관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조·개조허가를 할 때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08.3.28>

⑤ 농림수산물부 장관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조정이나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건조·개조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3.28>

2008.3.3, 2008.7.8, 2009.12.14>

1. 농림수산물부 장관

가. 「원양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원양어업에 사용할 어선

나. 「수산업법」 제45조에 따라 농림수산물부 장관이 시험어업, 연구어업 또는 교습어업에 사용할 어선

다. 「해운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하는 외항화물운송사업에 사용할 수산물운반선

라. 농림수산물부 장관이 어업에 관한 기술보급·시험·조사 또는 지도·감독에 사용할 어선

2.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

제1호 각 목의 어선을 제외한 어선
[전문개정 2001.12.31]

제5조(건조·개조등의 허가신청)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어선의 건조·개조 및 건조·개조발주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다음 각 호의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변경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건조·개조 및 건조·개조발주의 허가 또는 동 허가의 변경허가(이하 "건조·개조등의 허가"라 한다)의 허가구분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4, 1999.5.17, 2001.12.31, 2002.7.15, 2004.8.7, 2008.3.3, 2008.7.8>

1. 어선의 소유자
2. 삭제 <1999.5.17>
3. 선적항
4. 어업의 종류
5. 주요치수
6. 총톤수
7. 추진기관
8. 그 밖의 설비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선의 건조·개조 또는 건조·개조발주의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허가서를,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변경허가서를 각각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4, 1999.5.17, 2002.7.15, 2008.3.3>

제6조(개조 등의 허가 면제) 법 제8조제1항 전단

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1.12.31, 2008.3.3, 2008.7.8, 2009.12.14>

1. 총톤수 2톤 미만의 어선을 개조하거나 개조의 발주를 하고자 하는 경우
2. 총톤수 2톤 이상의 어선으로서 「내수면어업법」 제6조·제9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면허어업·허가어업 또는 신고어업에 사용하는 어선을 개조하거나 개조의 발주를 하려는 경우
[전문개정 1999.5.17]

제7조(건조·개조등의 허가조건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어선의 건조·개조 등의 허가를 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1998.1.24, 2002.7.15, 2008.3.3, 2008.7.8>

1. 건조 또는 개조하는 어선의 건조 또는 개조공사의 착공시기에 관한 사항
2. 피대체되는 어선의 처리에 관한 사항(건조·건조발주의 경우에 한한다)
3. 삭제 <1999.5.17>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어선의 건조·개조 등의 허가를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8.1.24, 2002.7.15, 2008.3.3, 2008.7.8>

제9조(어선의 건조·개조공사) <삭제><1999.2.8>

제10조(허가의 취소 등)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조·개조허가를 받은 자나 어선의 건조·개조를 발주받아 건조·개조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조·개조허가를 취소하거나 어선의 건조·개조의 중지, 어선 또는 어선설비의 제거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허가사항을 위반하여 어선을 건조하거나 개조한 경우 [전문개정 2008.3.28]

1. 「수산업법」·「원양산업발전법」 및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면허어업·허가어업 또는 신고어업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삭제 <1999.5.17>
3. 「수산업법」·「원양산업발전법」·「내수면어업법」 또는 「어선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고 그에 관한 효력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인 경우
4. 제22조제4항에 따라 선적항으로 지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건조·개조등의 착공계 제출) <삭제>
<1998.1.24>**

제9조(양도등의 허가신청) <삭제> <1999.5.17>

제11조(현장의 확인) <삭 제><1999.2.8>

제12조(현장확인공무원의 직무) <삭 제><1999.2.8>

제3장 어선의 등록

제13조(어선의 등기와 등록) ① 어선의 소유자나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그 어선이나 선박이 주로 입항·출항하는 항구 및 포구(이하 "선적항"이라 한다)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선원부에 어선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박등기법」 제2조에 해당하는 어선은 선박등기를 한 후에 어선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한 어선은 어선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어선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서등을 발급하여야 한다.

1. 총톤수 20톤 이상인 어선 : 선박국적증서
2. 총톤수 20톤 미만인 어선(총톤수 5톤 미만의 무동력어선은 제외한다) : 선적증서
3. 총톤수 5톤 미만인 무동력어선 : 등록필증

④ 선적항의 지정과 제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10조(공무원의 증표) <삭제> <1999.5.17>

제11조(허가서등의 재발급신청) <삭제> <2009.12.14>

제3장 어선의 등록 및 톤수측정

제21조(등록의 신청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어선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 어선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22조제1항에 따른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4, 1998.9.5, 1999.5.17, 2001.12.31, 2002.7.15, 2008.7.8>

1. 어선건조허가서 또는 어선건조발주허가서(제2항에 따른 선박의 경우에는 수산업 또는 수산업에 관한 시험·조사·지도·단속 또는 교습에 종사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어선총톤수측정증명서
 3. 선박등기부등본(「선박등기법」 제2조에 따른 선박등기 대상인 어선에 한한다)
 4. 삭제 <1999.5.17>
 5. 삭제 <2002.7.15>
 6. 대체되는 어선의 처리에 관한 서류(어선을 대체하기 위하여 건조 또는 건조발주한 경우에 한한다)
 7. 삭제 <2008.7.8>
- ② 법 제13조제1항 전단에서 "농림수산물부

령이 정하는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으로서 어선으로 사용하고자는 선박을 말한다. <개정 1998.1.24, 1999.5.17, 2000.1.6, 2008.3.3, 2008.7.8>

1. 법 제19조에 따라 어선의 등록이 말소된 선박
2. 「선박법」 제8조에 따라 등록되어 있는 선박
3. 삭제 <2008.7.8>

4. 외국에서 수입한 선박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선의 등록을 한 때에는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어선규모에 따라 제33조에 따른 선박국적증서·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이하 "선박국적증서등"이라 한다)을 신청인에게 발급함과 동시에 별표 1에 따른 어선번호부여방법에 따라 어선번호를 부여하여 어선번호판을 제작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2.7.15, 2008.7.8>

제22조(선적항의 지정등) ①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선적항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어선 또는 선박이 항행할 수 있는 수면을 접한 그 소유자의 주소지인 시·구(자치구에 한한다. 이하 같다)·읍·면에 소재하는 항·포구를 기준으로 하여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선 또는 선박의 소유자가 지정하는 항·포구를 선적항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1999.5.17, 2008.7.8>

1. 국내에 주소가 없는 어선의 소유자가 국내에

선적항을 정하는 경우

2. 어선의 소유자의 주소지가 어선이 항행할 수 있는 수면을 접한 시·구·읍·면이 아닌 경우

3. 삭제 <1999.5.17>

4.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어선의 소유자의 주소지 외의 항·포구를 선적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② 선적항의 명칭은 항·포구의 명칭이나 어선 또는 선박이 항행할 수 있는 수면을 접한 시·군·구·읍·면의 명칭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다.

③ 삭제 <1999.5.17>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적항으로 정하고자 하는 항·포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항·포구를 선적항으로 정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9.5.17, 2002.7.15, 2008.7.8>

1. 지정받고자 하는 선적항이 당해어선 또는 선박이 주로 입·출항하는 항·포구가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

2. 지정받고자 하는 선적항이 매립·간척등 공개발예정지역으로 고시되어 공사착공기일의 촉박등의 사유로 선적항으로 지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삭제 <1999.5.17>

⑥ 삭제 <1999.5.17>

⑦ 삭제 <1999.5.17>

제23조(등록사항)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1조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 어선원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4, 1999.5.17, 2002.7.15, 2007.10.18, 2008.7.8, 2009.12.14>

1. 어선번호
2. 호출부호 또는 호출명칭
3. 어선의 종류
4. 어선의 명칭
5. 선적항
6. 선체재질
7. 범선의 범장(범선의 경우에 한한다)
8. 배의 길이
9. 배의 너비
10. 배의 깊이
11. 총톤수
12. 폐위장소의 합계용적
 - 가. 상갑판아래의 용적
 - 나. 상갑판위의 용적
 - (1) 선수루의 용적
 - (2) 선교루의 용적
 - (3) 선미루의 용적
 - (4) 갑판실의 용적
 - (5) 그 밖의 장소의 용적
13. 제외장소의 합계용적
 - 가. 선수루의 용적
 - 나. 선교루의 용적

- 다. 선미루의 용적
 - 라. 갑판실의 용적
 - 마. 그 밖의 장소의 용적
 - 14. 기관의 종류·마력 및 대수
 - 15. 추진기의 종류 및 수
 - 16. 조선지
 - 17. 조선자
 - 18. 진수연월일
 - 19. 소유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법인등록번호 및 주소)
 - 20. 공유자의 지분율(어선이 공유인 경우에 한한다)
- ② 제1항의 어선원부는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7.10.18>

제33조(선박국적증서등의 서식)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선박국적증서는 별지 제35호서식, 선적증서는 별지 제36호서식, 등록필증은 별지 제37호서식에 따라 각각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08.7.8>

제34조(선박국적증서의 영역서의 발급신청 등) ① 선박국적증서의 영역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8호서식에 따른 선박국적증서영역서발급신청서를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선박국

적증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2.7.15, 2008.7.8>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39호서식에 따른 선박국적증서영역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02.7.15, 2008.7.8>

③ 선박국적증서의 영역서를 소지한 자가 선박국적증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반환하는 때에는 그 영역서도 같이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02.7.15> [제목개정 2008.7.8]

제27조(어선명칭의 변경승인신청) <삭 제> <1998.1.24>

제28조(등록사항의 정정신청등) ① 어선의 소유자가 등록사항에 착오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 어선등록사항정정신청서를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7.15, 2008.7.8>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사항의 정정신청을 받거나 등록사항에 착오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어선원부의 기재사항을 정정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선박국적증서등의 기재사항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선박국적증서등을 다시 작성하여 발급하고, 구증서를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4, 1998.9.5, 2002.7.15,

2008.7.8>

제30조(어선원부의 등본·초본의 발급신청 등) 누구든지 어선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을 신청하거나 이해관계 있는 부분에 대하여 어선원부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8.7.8>
[제목개정 2008.7.8]

제31조(관할구역 등의 변경에 따른 조치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의 관할구역의 변경으로 선택항이 다른 시장·군수·구청장의 관할구역에 속하게 된 경우에는 변경전의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선의 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어선에 관한 어선원부와 부속서류를 변경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어선원부 등을 송부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변경된 사실을 해당 어선의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2.7.15>
② 행정구역의 개편이나 그 명칭 또는 지번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어선원부 및 선박국적증서등에 기재된 행정구역이나 그 명칭 또는 지번 등은 이를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2조(등록 등의 통보)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3조·제17조 또는 제19조에 따라 어선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거나 어선의 등록을 말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 그 사실을 지체

제13조의2(소형어선 소유권 변동의 효력) 총톤수 20톤 미만의 소형어선에 대한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본조신설 2008.3.28]

제13조의3(압류등록) 시장·군수·구청장은 「민사집행법」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압류등록의 촉탁이 있거나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에 따라 행정관청으로부터 압류등록의 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총톤수 20톤 미만 소형어선의 어선원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압류등록을 하고 선박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3.28]

제2조(소형어선에 대한 압류등록)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어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3에 따라 소형어선에 대한 압류등록을 촉탁받은 때에는 해당 어선원부에 채권자·채권금액·촉탁기관·촉탁일 등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압류등록을 하고,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선박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08.6.25]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2.7.15, 2007.11.23, 2008.3.3, 2008.7.8, 2009.12.14>

1. 해당 어선이 등기된 등기소(「선박등기법」의 적용을 받는 어선에만 해당한다)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다만,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어선의 검사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선박안전법」 제45조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이하 “선급법인”이라 한다)
3. 해당 어선에 관련된 어업의 면허·허가기관
[전문개정 2001.12.31]

제3조(현장확인공무원의 자격 등) <삭 제> <1999.4.7>

제14조(어선의 총톤수 측정 등) ① 어선의 소유자가 제13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면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어선의 총톤수 측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어선의 소유자는 어선의 수리 또는 개조로 인하여 총톤수가 변경된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총톤수의 개측(개측)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어선의 소유자는 외국에서 취득한 어선을 외국에서 항행 하거나 조업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외국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영사에게 총톤수 측정이나 총톤수 개측을 신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

제12조(총톤수의 측정 또는 개측 신청) ① 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어선의 총톤수 측정 또는 개측(이하 “총톤수의 측정등”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어선총톤수측정·개측신청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대한민국 영사(이하 “영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측정길이 24미터 이상인 어선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도면 또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4, 1998.9.5, 2008.3.3, 2008.7.8, 2009.12.14>

1. 일반배치도
 2. 선체선도
 3. 중앙횡단면도
 4. 강재배치도 및 재료배치도
 5. 상부구조도
 6. 제14조제1항에 따른 총톤수계산서(제16조에 따라 총톤수 부분측정을 받은 어선으로 한정한다)
 7.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총톤수측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영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서류 외에 조선지·조선자·진수일 및 선박의 원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8.1.24, 2008.3.3, 2008.7.8>

③ 제1항에 따라 총톤수측정등을 신청한 자는 농림수산물부 장관 또는 영사가 이를 측정하는데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4, 2008.3.3, 2008.7.8>

제13조(총톤수의 측정등의 장소) <삭 제>
<2009.12.14>

제14조(총톤수의 측정 등) ① 농림수산물부 장관 또는 영사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어선에 출입하여 총톤수측정등을 하게하고, 농림수산물부 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의한 총톤수계산서(이하 "총톤수계산서"라 한다) 및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어선총톤수측정증명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4, 2008.3.3, 2008.7.8>

② 농림수산물부 장관 또는 영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어선이 농림수산물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정부 또는 국내외의 공인된 선박검사기관의 총톤수측정등(제16조에 따른 부분측정을 포함한다)을 받은 것으로서 새로이 총톤수측정등을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총톤수측정등을 하지 아니하고 총톤수계산서 및 어선총톤수측정증명서를 작성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8.1.24, 2008.3.3, 2008.7.8>

③ 농림수산물부 장관 또는 영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국내외의 공인된 선박검사기관에 총톤수측정등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1998.1.24, 2008.3.3>

④ 총톤수·순톤수·재화중량톤수의 측정 또는 개측에 따른 세부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신설 2009.12.14>

제15조(어선총톤수측정증명서의 발급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영사는 제14조에 따라 어선총톤수측정증명서를 작성한 때에는 이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4, 2008.3.3, 2008.7.8>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영사는 총톤수의 개측을 한 결과 이미 등록한 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하여야 할 사항을 문서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4, 2008.3.3>

③ 영사는 제14조제1항에 따라 총톤수측정등을 한 때에는 총톤수측정등에 관한 서류를 지체없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4, 2008.3.3, 2008.7.8>
[제목개정 2008.7.8]

제16조(건조중인 어선에 대한 총톤수의 부분측정)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어선의 건조 또는 건조발주허가를 받아 건조 중에 있는 어선의 소유자는 그 준공 전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영

사에게 총톤수의 부분측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1998.1.24, 2008.3.3, 2008.7.8>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영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총톤수의 부분측정을 한 후 측정부분에 대한 총톤수계산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4, 2008.3.3, 2008.7.8>

③ 총톤수의 부분측정을 받은 자가 제12조제1항에 따른 총톤수의 측정을 신청하는 때에는 측정부분에 대한 총톤수계산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7.8>

제17조(국제톤수증서등의 발급 신청 등)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선박법」 제13조에 따라 국제톤수증서 또는 국제톤수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국제톤수증서발급신청서에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영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4, 2008.3.3, 2008.7.8, 2009.12.14>

1. 일반배치도
2. 선체선도
3. 중앙횡단면도
4. 강제배치도 또는 재료배치도
5. 상부구조도
6. 제14조제1항에 따른 총톤수계산서(제16조에 따라 총톤수의 부분측정을 받은 어선으로 한정

한다)

7. 그 밖에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이 총톤수측정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 또는 영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어선에 출입하여 국제총톤수 및 순톤수의 측정 또는 그 개측을 하게 하고,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따른 국제톤수계산서 및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국제톤수증서 또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국제톤수확인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4, 2008.3.3, 2008.7.8>

③ 제14조제1항에 따른 총톤수측정등을 받은 어선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국제총톤수 및 순톤수의 측정 또는 그 개측을 할 때에는 총톤수측정등에 사용한 수치를 적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8.7.8>

④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 또는 영사는 국제총톤수 및 순톤수의 측정 또는 그 개측을 한 때에는 국제톤수증서 또는 국제톤수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4, 2008.3.3, 2008.7.8>

⑤ 국제톤수의 측정 또는 그 개측의 생략 및 위측과 서류송부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제3항 및 제15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8.7.8>
[제목개정 2008.7.8]

제18조(재화중량톤수증서의 발급 신청) ① 법 제 37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선박법」 제3조 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른 재화중량톤수증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 재화중량톤수증서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영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4, 2008.3.3, 2008.7.8, 2009.12.14>

1. 일반배치도
2. 선체선도
3. 중앙횡단면도
4. 배수량등 배의 성능에 관한 곡선도 또는 표 (이하 "배수량등곡선도"라 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영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어선에 출입하여 재화중량톤수의 측정 또는 그 개측을 하게하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따른 재화중량톤수계산서 및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 재화중량톤수증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4, 2008.3.3, 2008.7.8>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영사는 재화중량톤수의 측정 또는 그 개측을 한 때에는 재화중량톤수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4, 2008.3.3, 2008.7.8>

④ 재화중량톤수의 측정 또는 그 개측의 생략 및 위측과 서류송부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

제15조(선박국적증서등의 비치) 어선의 소유자는 어선을 항행하거나 조업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제13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이하 "선박국적증서등"이라 한다)을 어선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만, 「내수면어업법」 제6조, 제9조 또는 제11조에 따라 면허·허가 또는 신고어업에 사용하는 어선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5.27> [전문개정 2008.3.28]

제16조(어선 명칭등의 표시와 번호판의 부착) ① 어선의 소유자는 선박국적증서등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어선에 어선의 명칭, 선적항, 총톤수 및 흘수(흘수)의 치수 등(이하 "명칭등"이라 한다)을 표시하고 어선번호판을 붙여야 한다.

제3항 및 제15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8.7.8> [제목개정 2008.7.8]

제19조(국제톤수증서등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의 신고) <삭 제> <2008.7.8>

제20조(어선총톤수측정증명서등의 재발급 등) <삭 제> <2009.12.14>

제33조의2(선박국적증서등의 비치의무 면제) 법 제15조 단서에서 “「내수면어업법」 제6조, 제9조 또는 제11조에 따라 면허어업·허가어업 또는 신고어업에 사용하는 어선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개정 2009.12.14>

1. 「내수면어업법」 제6조·제9조 또는 제11조에 따라 면허어업·허가어업 또는 신고어업에 사용하는 어선
2. 「수산업법」 제29조에 따른 어장관리에 사용하는 총톤수 5톤 미만의 어선 [전문개정 2008.7.8]

제24조(어선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어선에 표시하여야 할 사항과 그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8.1.24, 2008.3.3, 2008.7.8, 2009.12.14>

1. 선수양현의 외부에 어선명칭을, 선미외부의 잘 보이는 곳에 어선명칭 및 선적항을 10센티

② 제1항에 따른 어선번호판의 제작과 부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③ 어선의 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명칭등을 표시하고 어선번호판을 붙인 후가 아니면 그 어선을 항행하거나 조업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8.3.28]

미터 이상 크기의 한글(아라비아숫자를 포함한다)로 명료하고 내구력 있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어선의 식별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면 어업별로 어선명칭의 크기, 표시방법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2. 배의 길이 24미터 이상의 어선은 선수와 선미의 외부 양측면에 흘수를 표시하기 위하여 선저로부터 최대흘수선상에 이르기까지 20센티미터마다 10센티미터 크기의 아라비아숫자로서 흘수의 치수를 표시하되, 숫자의 하단은 그 숫자가 표시하는 흘수선과 일치시켜야 한다.

② 특수한 구조로 인하여 어선명칭 등 어선의 표시사항을 제1항에 따라 표시하기 곤란한 어선의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 이를 표시할 수 있다. <개정 1998.1.24, 2008.3.3, 2008.7.8>

제25조(어선번호판의 제작 등)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어선번호판은 알루미늄 또는 구리판의 금속재이거나 합성수지재의 내부식성 재료로 제작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가로 15센티미터, 세로 3센티미터로 한다. <개정 1999.5.17, 2008.7.8>

② 어선의 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규격으로 제작된 어선번호판을 조타실 또는 기관실의 출입구등 어선 안쪽부분의 잘 보이는 장소에 내구력

제17조(등록사항의 변경) 어선의 소유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8]

있는 방법으로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수산업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어선표지판을 설치하는 어선에 대하여는 어선번호판 부착을 면제한다. <개정 1998.1.24, 1999.5.17, 2008.7.8, 2009.12.14>

③ 삭제 <1999.5.17>

제26조(등록사항의 변경 신청) ① 법 제17조에 따라 어선의 등록사항에 관한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그 변경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 변경등록신청서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및 선박국적증서등을 첨부하여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4, 1999.5.17, 2002.7.15, 2008.7.8>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의 신청사항 중 선적항을 다른 시장·군수·구청장의 관할구역에 위치한 항·포구로 변경하는 내용이 있는 때에는 제22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어선의 어선원부 및 그 부속서류를 변경하고자 하는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송부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1999.5.17, 2002.7.15, 2008.7.8>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 또는 제2항에 따른 어선원부 등을 송부 받은 때에는 어선원부에 변경등록을 한 후

제18조(선박국적증서등의 재발급) 어선의 소유자는 선박국적증서등을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8.3.28]

제19조(등록의 말소와 선박국적증서등의 반납) ① 제13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어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어선의 소유자는 30일 이내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의 말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어선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
2.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경우
3. 멸실·침몰·해체 또는 노후·파손 등의 사유로 어선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4. 6개월 이상 행방불명이 된 경우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선의 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것을 최고 하여야 하며 그 어선의 소유자가 최고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그 어선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제4조(직권등록말소의 예외) 법 제19조제2항제3호 단서에 따라 수산업의 허가·신고·면허등의 효력이 상실된 후 1년이 경과되기 전이라도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직권으로 해당 어선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 경우는 「수산업법」·「원양산업발전법」 및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명령에 위반한 경우로 한다.<개정 1999.4.7, 2002.6.3, 2008.6.25>

선박국적증서등을 다시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1999.5.17, 2002.7.15, 2008.7.8>

제40조(선박국적증서등의 재발급신청 등) <삭 제>
<2009.12.14>

제29조(등록말소와 어선원부의 보관)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어선의 등록을 말소하려는 자는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 어선등록말소신청서에 선박국적증서등 및 어선번호판을 첨부하여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7.15, 2008.7.8>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고 어선의 등록을 말소하거나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어선의 등록을 말소한 때에는 해당 어선의 어선원부에 "말소"의 표시를 한 후 2년간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2.7.15, 2008.7.8>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선의 등록을 말소한 어선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어선등록말소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02.7.15, 2008.7.8>

제39조(선박국적증서등의 무효통보) 선적항을 관

2. 어선의 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등록의 말소 신청을 기간 내에 하지 아니한 경우

3. 해당 어선으로 영위하는 수산업의 허가·신고·면허 등의 효력이 상실된 후 1년이 지난 경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어선의 소유자는 지체 없이 그 어선에 붙어 있는 어선번호판을 제거하고 14일 이내에 그 어선번호판과 선박국적증서등을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어선번호판과 선박국적증서등을 분실 등의 사유로 반납할 수 없을 때에는 14일 이내에 그 사유를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20조(선박국적증서등의 검인) <삭 제><1999.2.8>

제4장 어선의 검사

제21조(어선의 검사) ① 어선의 소유자는 제3조

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선박국적증서등과 가선박국적증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증서가 무효임을 지체없이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2.7.15, 2008.7.8>

1.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어선의 등록을 말소한 경우
2. 법 제19조제3항 단서에 따라 분실 등의 사유로 반납할 수 없음을 신고 받은 경우
3. 삭제 <1999.5.17>

제35조(선박국적증서등의 검인신청) <삭제><1999.5.17>

제36조(선박국적증서등의 검인절차) <삭제><1999.5.17>

제37조(선박국적증서등의 검인기일) <삭제><1999.5.17>

제38조(검인기일의 연기신청등) <삭제><1999.5.17>

제4장 어선의 검사 <신설 2009.12.14>

제43조(정기검사) ① 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

에 따른 어선의 설비(길이 24미터 이상의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만재흡수선의 표시를 포함한다)에 관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기검사

최초로 항행의 목적에 사용하는 때 또는 제28조제1항에 따른 어선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때 행하는 정밀한 검사

2. 중간검사

정기검사와 다음의 정기검사와의 사이에 행하는 간단한 검사

3. 특별검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로 특수한 용도에 사용하는 때 행하는 간단한 검사

4. 임시검사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검사 외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행하는 검사

5. 임시항행검사

어선검사증서를 발급받기 전에 어선을 임시로 항행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때 행하는 검사

② 제5조제1항에 따른 무선설비에 대하여는 「전파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한다.[본조신설 2009.5.27]

라 최초로 항행에 사용하는 어선에 대하여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어선소유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어선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0조에 따른 건조검사 및 제53조제1항에 따른 별도건조검사 신청 시에 첨부한 서류는 첨부하지 아니하되,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는 해당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1. 법 제2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건조검사증서 또는 제53조제3항에 따른 별도건조검사증서(건조검사 또는 별도건조검사를 정기검사와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에는 생략한다)

2. 정기검사 관련 승인도면(도면을 승인한 대행 검사기관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생략한다)

3. 법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어선용품의 예비검사증서

4. 법 제2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어선용품의 검정증서

5. 법 제27조제1항제7호에 따른 어선용품의 건조·제조확인증 또는 정비확인증

② 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어선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어선에 대하여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어선소유자는 해당 증서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별지 제40호서식의 어선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는 해당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1. 법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어선검사증서
 2. 법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어선용품의 예비검사증서
 3. 법 제2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어선용품의 검정증서
 4. 법 제27조제1항제7호에 따른 어선용품의 건조·제조확인증 또는 정비확인증
-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 제3조 각 호의 설비와 법 제4조에 따른 만재흡수선의 표시에 대하여 검사한다.
-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정기검사에 합격한 어선에 대하여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어선검사증서의 뒤쪽에 다음 검사시기와 검사종류를 적어야 한다. [본조신설 2009.12.14]

제44조(중간검사) ①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중간검사는 제1종중간검사와 제2종중간검사로 구분하며, 어선 규모에 따라 받아야 하는 중간검사의 종류와 그 검사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총톤수 2톤 미만인 어선은 중간검사를 면제한다.

1. 배의 길이가 24미터 미만인 어선
제1종 중간검사를 정기검사 후 두 번째 검사기준일 전 3개월부터 세 번째 검사기준일 후 3개월까지의 기간 이내에 받을 것
2. 배의 길이가 24미터 이상인 어선

가. 제1종 중간검사: 정기검사 후 두 번째 검사 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 또는 세 번째 검사 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하나를 선택 하여 그 기간 내에 받을 것. 다만, 선저검사 (어선의 밑부분에 대한 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지난 번 선저검사일부터 3년을 초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제2종 중간검사: 정기검사 또는 제1종중간 검사를 받아야 하는 연도의 검사기준일을 제외한 검사기준일의 전후 3개월의 기간 이내에 받을 것

②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중간검사를 받으려는 어선소유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어선검사신청서에 제43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사한다.

1. 제1종 중간검사: 법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제6호, 제8호부터 제11호까지의 설비와 법 제4조에 따른 만재흡수선의 표시

2. 제2종 중간검사: 법 제3조제1호(선체의 내부 구조로 한정한다), 제2호(선체 내부의 추진설비로 한정한다), 제3호, 제5호(선체 내부의 조타설비로 한정한다), 제8호, 제9호, 제11호의 설비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중간검사에 합격한 어선에 대하여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어선검사증서의 뒤쪽에 다음 검사시기와 검사종류를 적어야 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어선소유자는 장기항해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중간검사를 검사기준일보다 3개월 이상 앞당겨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검사완료일부터 3개월이 지난 날을 새로운 검사기준일로 한다. [본조신설 2009.12.14]

제45조(중간검사시기의 연기) ① 해외수역에서의 장기간 항행·조업 등 부득이 한 사유로 인하여 중간검사를 받을 수 없어 중간검사시기를 연기 받으려는 어선소유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중간검사시기연기신청서에 해당 어선의 항해, 조업일정 및 현재의 위치를 나타내는 서류와 해당 어선의 검사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해당 어선의 항해 및 조업 일정을 고려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검사기준일부터 1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검사시기를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검사시기와 검사종류 등을 어선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연기 받은 기간 이내에 해당 어선이 중간검사를 받을 장소에 도착하면 지체 없이 중간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검사시기의 연기로 인하여 연기

된 중간검사와 정기검사가 겹치는 경우에는 정기 검사를 실시하고, 제1종 중간검사와 제2종 중간 검사가 겹치는 경우에는 제1종 중간검사를 실시 한다. [본조신설 2009.12.14]

제46조(특별검사) ① 법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어선소유자가 특별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법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 외의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어선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어선검사증서
2. 특별검사와 관련되는 서류[본조신설 2009.12.14]

제47조(임시검사) ① 법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라 어선소유자가 임시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의 길이, 너비, 깊이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체 주요부의 변경으로 선체의 강도, 수밀성(水密性) 또는 방화성에 영향을 미치는 개조 또는 수리를 하려는 경우
가. 상갑판 아래의 선체, 선루(船樓) 또는 기관실위벽(圍壁)의 폭로부(暴露部)

나. 갑판실(승선자가 거주하거나 항상 사용하는 것에 한정한다)의 측벽 또는 정부갑판(頂部甲板)

다. 선루갑판 아래의 폭로부 외판

라. 격벽에 설치되어 폐위(閉圍)구역을 보호하는 폐쇄장치(목제창구덮개 또는 창구복포는 제외한다)

2. 어선의 추진과 관계있는 기관 및 그 주요부의 교체·변경 등으로 기관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개조 또는 수리를 하려는 경우

3. 타(舵) 또는 조타장치의 변경으로 어선의 조종성에 영향을 미치는 개조 또는 수리를 하려는 경우

4. 탱크, 펌프실, 그 밖에 인화성 액체 또는 인화성 고압가스가 새거나 축적될 우려가 있는 곳에 설치되어 있는 전선로를 교체·변경하는 수리를 하려는 경우

5. 어선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어업의 종류를 변경할 목적으로 어선의 구조나 설비를 변경하려는 경우

6. 법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어선검사증서에 기재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다만, 어선명칭 및 선적항의 변경 등 법 제3조에 따른 어선의 설비에 변경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어선용품 중 어선에 고정 설치되는 것으로서 새로 설치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다만, 배의

길이 24미터 미만인 어선의 경우에는 어선에 고정 설치되는 것으로서 법 제3조제7호(어로설비는 제외한다), 제8호, 제11호의 설비로 한정한다.

8. 법 제4조에 따른 만재흡수선을 새로 표시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9. 복원성에 관한 기준을 새로 적용받거나 그 복원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어선용품을 신설·증설·교체 또는 제거하거나 위치를 변경하려는 경우
 10. 보일러 안전밸브의 봉인을 개방하여 조정하려는 경우
 11. 하역설비의 제한하중, 제한각도 및 제한반경을 변경하려는 경우
 12. 승강설비의 제한하중 또는 정원을 변경하려는 경우
 13. 해양사고 등으로 어선의 감항성(堪航性) 또는 인명안전의 유지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변경이 발생한 경우
 14. 어선의 정기검사 또는 중간검사를 할 때에 어선설비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등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임시검사를 받을 것을 지정하는 경우. 이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어선검사증서의 뒤쪽에 검사받을 내용 및 검사시기를 적어야 한다.
- ② 법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라 임시검사를 받으려는 어선소유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어선검

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수산물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43조제2항 각 호의 첨부서류 중 해당 서류
2. 임시검사 관련 승인도면(도면을 승인한 대행 검사기관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생략한다)
3. 어선개조(개조발주)허가(어선개조 또는 어선개조발주허가의 경우에만 제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개조 또는 수리를 하는 어선소유자는 해당 설비에 대하여 개조 또는 수리에 착수하였을 때부터 임시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 어선소유자는 제1항제14호에 따라 지정된 임시검사의 시기를 앞당겨 받을 수 있다.

⑤ 농림수산물부 장관은 제3항에 따른 임시검사에 합격한 어선에 대하여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어선검사증서의 뒤쪽에 다음 검사시기와 검사종류를 적어야 한다.

⑥ 어선소유자는 정기검사 또는 중간검사를 받을 때에 임시검사사항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임시검사를 받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09.12.14]

제48조(임시항행검사) ① 법 제21조제1항제5호에 따라 어선소유자가 임시항행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톤수의 측정 또는 개측을 받을 장소로 항행하려는 경우
2. 어선검사를 받기 위하여 시운전을 하려는 경우

3. 그 밖에 어선검사증서의 효력이 상실되었거나 어선검사증서를 발급받기 전에 부득이한 사정
으로 임시로 항행하려는 경우

② 법 제21조제1항제5호에 따라 임시항행검사를 받으려는 어선소유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어선
검사신청서에 해당 어선의 운항계획서를 첨부하
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 제3조제8호·제9호·제11호의
설비와 해당 어선의 감항성에 대하여 검사한다.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어선의 항행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제6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임시항행검사
증서를 발급한다. [본조신설 2009.12.14]

제49조(어선의 검사 면제 등) ① 법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어선의 검사가 면
제되는 어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톤수 5톤 미만의 무동력어선

2. 「내수면어업법」 제6조, 제9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면허어업, 허가어업 또는 신고어업에 사
용되는 어선으로 최초의 정기검사를 받은 어선

3. 어선검사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일정기간 동안
운항하지 아니할 목적으로 그 증서를 농림수산
식품부장관에게 반납한 후 해당 어선을 계류
(이하 “계선”이라 한다)한 어선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계선을 하려는 어선소유

제22조(건조검사 등) ① 어선을 건조하는 자는 제3조제1호·제2호·제3호·제5호·제6호의 설비와 제4조에 따른 만재흡수선에 대하여 각각 어선의 건조에 착수한 때부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건조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조검사에 합격된 부분에 대하여는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검사 중 최초로 실시하는 검사를 할 경우 그 건조검사에

자는 계선기간 및 계선사유 등을 기재한 별지 제42호서식의 계선사유서에 해당 어선의 어선검사증서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계선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그 기간이 끝난 경우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④ 계선한 어선이 제2항에 따른 계선사유가 없어진 경우에 해당 어선을 항행에 재사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어선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끝난 경우: 정기검사
2. 어선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경우
 - 가. 중간검사와 정기검사가 겹치는 경우에는 정기검사
 - 나. 제1종 중간검사와 제2종 중간검사가 겹치는 경우에는 제1종 중간검사 [본조신설 2009.12.14]

제50조(건조검사)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건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3호서식의 건조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어선의 건조를 시작하기 전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는 해당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1. 건조검사 관련 승인도면(도면을 승인한 대행검사기관에 건조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생략한다)

서 합격된 부분에 대한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제3조 각 호의 설비에 필요한 어선용품(이하 “어선용품”이라 한다)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용품을 제조·개조·수리 또는 정비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어선용품을 설치하여야 할 어선이 결정되기 전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검사(이하 “예비검사”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예비검사에 합격한 어선용품 및 「선박안전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예비검사에 합격된 선박용품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건조검사 또는 제2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검사 중 최초로 실시하는 검사를 할 경우 그 예비검사에서 합격된 부분에 대한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건조검사 및 제3항에 따른 예비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⑥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외국에서 수입되는 선박 등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조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선박에 대하여 건조검사에 준하는 검사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검사(이하 “별도건조검사”라 한다)를 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별도건조검사에 합격한 선박에 관하여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본조 신설 2009.5.27]

2. 법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어선용품의 예비검사증서
 3. 법 제2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어선용품의 검정증서
 4. 법 제27조제1항제7호에 따른 어선용품의 건조·제조확인증 또는 정비확인증
- ② 제1항에 따른 건조검사 시 수행하는 선체 압력시험방법은 별표 2와 같다. [본조신설 2009.12.14]

제51조(건조검사의 면제) 법 제2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건조검사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동력어선
2. 「내수면어업법」 제6조, 제9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면허어업, 허가어업 또는 신고어업에 사용되는 어선
3. 배의 길이 24미터 미만의 목선
4. 외국의 조선소에서 건조하는 어선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외국정부 또는 국내외의 공인된 선박검사기관에서 건조검사에 준하는 검사를 받은 어선 [본조신설 2009.12.14]

제52조(예비검사) ① 법 제22조제3항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용품”이란 별표 3의 어선용품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어선용품에 대하여 예비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예비검사신청서에 예비검사 관련 승인도면(제조·개조 또는 수입의 경우에 한정하며, 도면승인을 한 대행검사기관에 예비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생략한다)을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예비검사는 해당 어선용품에 대하여 제조·개조·수리 또는 정비에 착수하였을 때부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어선용품 중 팽창식 구명설비의 수리 또는 정비에 따른 예비검사인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곳 또는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54조제4항에 따라 팽창식구명설비 정비시설등확인서를 발급 받은 곳에서 수리 또는 정비에 착수하였을 때부터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 제3항 후단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표 4의 팽창식 구명설비의 수리 또는 정비에 따른 시설 등의 기준에 맞는 시설 등을 갖추고 별지 제45호서식의 팽창식 구명설비 정비시설 등 확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설명세서
2. 별표 4 제2호가목에 따른 정비기술자의 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3. 별표 4 제4호에 따른 자체 정비기준
 - 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확인신청을 받은 경우 팽창식 구멍설비 정비시설 등이 별표 4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46호서식의 팽창식 구멍설비 정비시설 등 확인서를 발급하고 이를 고시한다.
 - ⑥ 제3항 후단에 따른 팽창식 구멍설비의 수리 또는 정비에 따른 예비검사인 경우에는 예비검사 증서의 발급에 갈음하여 정비기록부에 선박검사원이 서명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 ⑦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예비검사에 합격한 어선용품에 대하여는 제65조에 따른 예비검사 합격증인을 표시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09.12.14]

제53조(별도건조검사) ① 법 제22조제6항에 따라 별도건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3호서식의 별도건조검사신청서에 별도건조검사를 받기 위하여 승인받은 도면(도면을 승인한 대행검사기관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생략한다)을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별도건조검사는 법 제22조제1

항에 따른 어선의 설비와 만재흡수선으로 하되, 선체 압력시험방법은 별표 5와 같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해당 설비에 대하여 검사하고, 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별지 제47호서식의 별도건조검사 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12.14]

제54조(도면의 승인 등) ①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선박안전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어선의 도면에 대하여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8호서식의 도면승인(변경)신청서에 별표 6에서 정한 해당 어선의 검사 종류별 관련 도면 3부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면의 승인을 생략할 수 있다.

1. 최초 도면의 승인을 받은 후 변경이 없는 경우의 도면
2. 같은 조선소에서 같은 내용으로 승인된 도면에 따라 건조되는 같은 형태의 후속 어선의 도면
3. 대행검사기관을 변경하여 검사를 받으려는 어선의 기존 도면. 다만, 기존 도면이 해당 어선과 같지 아니하거나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해당 대행검사기관에서 설계하거나 설계 감리한 도면
5. 제51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해당하는 어선의

도면

②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선박안전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도면승인의 표시는 별표 7의 증인(證印)을 도면의 적절한 곳에 날인하여야 한다.

③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선박안전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배의 길이 24미터 이상의 어선은 승인받은 도면을 선장이나 어선원이 즉시 꺼내어 확인할 수 있는 어선내의 적당한 장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만, 어선내의 장소가 좁아 도면을 갖추어 둘 수 없는 어선으로서 어선 소유자, 공단 또는 선급법인을 통하여 도면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09.12.14]

제55조(검사의 준비 등) ①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선박안전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해당 어선의 검사종류별 준비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검사 준비사항: 별표 8
2. 중간검사 준비사항: 별표 9
3. 특별검사 준비사항: 별표 8 중 해당 설비
4. 임시검사 준비사항: 별표 8 중 해당 설비
5. 임시항행검사 준비사항: 별표 10
6. 건조검사 준비사항: 별표 11
7. 별도건조검사 준비사항: 별표 12
8. 예비검사 준비사항: 별표 13

②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선박안전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선체두께의 측정은 선령 10년 이상의 강선으로서 배의 길이 24미터 이상인 어선에 대하여 해당 어선의 정기검사 시에 측정하며, 선체두께 측정범위 및 측정방법 등은 별표 14와 같다. [본조신설 2009.12.14]

제56조(검사의 준비 및 서류제출의 완화 등) ①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선박안전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정기검사나 중간검사에서 해당 정기검사일이나 중간검사일 전 6개월 이내에 부분적인 수리나 정비를 하고 임시검사에 합격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5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검사의 준비를 면제할 수 있다.

②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선박안전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최초의 정기검사를 받는 어선에 대하여는 별표 8의 제2호자목(효력시험에 한정한다), 제4호다목 및 제7호다목(구명설비의 현상검사에 한정한다) 외의 검사준비를 면제한다.

③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선박안전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선령 15년 미만의 어선에 대하여는 별표 9 제1호가목의 선체에 관한 준비사항 중 별표 8 제1호가목의 선체에 대한 입거 또는 상가준비를 수중검사 준비로 갈음할 수 있고, 별표 8 제1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준비는

면제할 수 있다.

④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수중검사 결과 부식 또는 손상 등으로 인하여 입거 또는 상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입거 또는 상가를 하게 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수중검사준비와 그 검사방법 등은 별표 15와 같다.

⑥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선박안전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 외의 검사준비 및 서류제출 등에 대하여는 별표 16과 같이 완화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12.14]

제57조(어선검사사항의 통지)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은 법 제21조에 따른 어선의 검사를 실시할 때 등록사항에 변경이 생기는 검사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해당 어선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09.12.14]

제58조(어선 검사 등의 참여) ① 어선의 검사 및 검정·확인을 받으려는 자 또는 그의 대리인은 어선의 검사 등을 하는 현장에 함께 참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어선의 검사 등에 참여한 자는 검사 및 검정·확인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12.14]

제23조(검사사항의 변경) <삭 제><1997.12.17>

제24조(형식승인 및 검정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어선용품 또는 소형어선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형식승인 및 검정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형식승인시험을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그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어선 또는 어선용품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해당 변경 부분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을 거쳐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그 건조·제조 또는 수입한 어선 또는 어선용품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검정에 합격한 어선 또는 어선용품과 「선박안전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형식승인을 받고 지정검정기관의 검정에 합격된 선박용물건에 대하여는 제2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검사 중 최초로 실시하는 검사 또는 제22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검사를 할 경우 그 검정에서 합격된 부분에 대한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 및 검정,

제59조(형식승인의 신청 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9호서식의 형식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형식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24조제1항 후단에 따른 형식승인 시험의 기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출한 형식승인에 필요한 관련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50호서식의 형식승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12.14]

제59조의2(검정의 신청 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검정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형식승인대상물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크기나 모양을 고려하여 표시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고 별지 제51호서식의 검정신청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형식승인 품명·형식 및 규격(규격이 있는 경우에만 표시한다)
2. 형식승인증서번호와 형식승인일자
3. 제조번호와 제조일자

변경승인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9.5.27]

제25조(어선 등 우수건조사업장 등의 지정) ① 농림수산물부령은 어선 또는 제3조 각 호에

- ②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검정기준에 관한 사항은 농림수산물부령이 정하여 고시한다.
- ③ 농림수산물부령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형식승인대상물건이 형식승인을 받은 제조공정, 부품, 자재 및 각 부품의 시험성적서를 확인하여 제조사양서대로 제조되었는지와 제2항에 따른 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합격한 경우에는 해당 형식승인대상물건에 제65조에 따른 검정 합격증을 표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12.14]

제59조의3(형식승인의 변경 신청 등) ①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2호서식의 형식승인사항 변경승인신청서에 변경내용을 적은 서류(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첨부하여 농림수산물부령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농림수산물부령은 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사항 변경승인 신청을 받은 때에는 형식승인에 필요한 관련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53호서식의 형식승인사항 변경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12.14]

제59조의4(우수사업장의 지정기준 등)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우수건조사업장·우수제조사업장

다른 설비를 건조·제조하거나 정비(개조 또는 수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사업장 중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적합한 사업장에 대하여 어선, 어선의 설비 또는 어선용품의 우수건조사업장·우수제조사업장 또는 우수정비사업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우수건조사업장·우수제조사업장 또는 우수정비사업장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어선, 어선의 설비 또는 어선용품의 건조·제조 또는 정비규정을 작성하여 농림수산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어선, 어선의 설비 또는 어선용품이 제1항에 따른 우수건조사업장·우수제조사업장에서 건조·제조되고 제2항에 따른 건조·제조규정에 따라 적합하게 건조·제조된 것을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한 경우에는 그 어선, 어선의 설비 또는 어선용품에 관하여는 제21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검사 중 최초로 실시하는 검사 또는 제22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검사를 할 경우 그 확인된 부분에 대한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어선, 어선의 설비 또는 어선용품이 제1항에 따른 우수정비사업장에서 정비되고 제2항에 따른 정비규정에 따라 적합하게 정비된 것을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한 경우에는 그 정비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실시하는 제2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또는 우수정비사업장(이하 “우수사업장”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어선, 어선의 설비 또는 어선용품(이하 “지정대상물건”이라 한다)의 범위, 우수사업장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설비, 인원 등 우수사업장의 지정에 관한 기준은 별표 17과 같다. [본조신설 2009.12.14]

제59조의5(우수사업장의 지정 등)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우수사업장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4호서식의 우수사업장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수산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장의 연혁·조직 및 업무분장의 개요
2. 제59조의4에 따른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3. 다음 각 목의 요건이 포함된 지정대상물건의 건조·제조에 관한 규정(우수건조사업장 또는 우수제조사업장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로 한정하고, 이하 “건조·제조규정”이라 한다)
 - 가. 지정대상물건의 구조
 - 나. 지정대상물건의 성능 및 주된 재료
 - 다. 건조·제조공정
 - 라. 품질관리
 - 마. 시험과 검사체계
4. 다음 각 목의 요건이 포함된 지정대상물건의 정비에 관한 규정(우수정비사업장의 지정을 받

정기검사 또는 중간검사를 할 경우 그 확인된 부분에 대한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어선, 어선의 설비 또는 어선 용품의 우수건조사업장·우수제조사업장 및 우수 정비사업장의 지정과 제2항에 따른 건조·제조 및 정비규정의 승인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 식품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9.5.27]

으려는 자로 한정하며, 이하 “정비규정”이라 한다)

가. 분해 및 조립방법과 사용공구

나. 부품 또는 부재별 점검 및 정비방법

다. 부품 또는 부재별 사용시간과 손상정도 등에 따른 사용한도의 판정기준

라. 조립 후의 조정방법

5. 지정대상물건에 대한 자체검사기준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해당 사업장이 제59조의4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서류와 현장심사(이미 지정받은 품목과 같은 품목인 경우에는 현장심사를 생략한다)를 통하여 확인하고, 건조·제조규정 또는 정비규정이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승인하며, 해당 사업장이 건조·제조 또는 정비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55호서식의 우수사업장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우수사업장을 지정한 때에는 그 지정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12.14]

제59조의6(지정받은 사항의 변경) ① 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우수사업장의 지정을 받은 자가

제59조의5제2항에 따라 확인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4호서식의 우수사업장지정(변경)신청서에 그 변경내용 및 사유를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변경내용 및 사유가 우수사업장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하고 이에 적합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09.12.14]

제59조의7(지정대상물건의 확인 방법 및 절차)

① 법 제2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정대상물건과 우수사업장으로 지정받은 자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확인을 받으려는 지정대상물건에 대해서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직접 확인하고, 그 외의 지정대상물건에 대해서는 우수사업장에서 자체검사를 실시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1. 우수건조사업장의 경우: 소형어선의 선체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가. 강화플라스틱제 선체
나. 알루미늄합금제 선체
2. 우수제조사업장의 경우: 연속최대출력 600마력 미만의 내연기관
3. 우수정비사업장의 경우: 연속최대출력 600마력 미만의 내연기관

② 제1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지정대상물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크기 또는 모양을 고려하여 표시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고, 별지 제56호 서식의 확인신청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우수사업장의 명칭, 지정번호 및 지정일자
2. 지정 품명·형식 및 규격(규격이 있는 경우에만 표시한다)
3. 건조·제조 또는 정비일자
4. 건조·제조번호 또는 정비번호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해당 지정대상물건이 제59조의5제2항에 따른 승인된 건조·제조규정 또는 정비규정에 적합하게 건조·제조 또는 정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합격한 경우에는 해당 지정대상물건에 제65조에 따른 확인 합격증인을 표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자체검사를 실시하는 우수사업장은 해당 지정대상물건이 제59조의5제2항에 따른 승인된 건조·제조 또는 정비규정에 적합하게 건조·제조 또는 정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합격한 경우에는 별지 제57호서식의 자체검사합격증서를 발급하고, 해당 지정대상물건에는 별표 18의 자체검사 합격표시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12.14]

제59조의8(지도·감독)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우수사업장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정대상물건의 건조·제조 또는 정비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12.14]

제60조(하역설비의 확인) ① 법 제3조제7호에 따라 총톤수 300톤 이상의 어선으로서 1톤 이상의 어획물 등의 하역에 사용하는 하역설비(하역장치 및 하역장구 등)를 갖춘 어선소유자는 제한하중·제한각도 및 제한반경(이하 “제한하중등”이라 한다)의 사항에 대하여 농림수산부 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하역설비에 대한 제한하중등을 확인하기 위한 기준은 별표 19와 같다. [본조신설 2009.12.14]

제61조(하역설비의 확인신청) ① 제60조제1항에 따라 어획물 등의 하역에 사용되는 하역설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한하중등의 확인을 받으려는 어선소유자는 별지 제58호서식의 제한하중등 신청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데릭(Derrick)장치: 제한하중 및 제한각도
2. 지브크레인(Jib Crane): 제한하중 및 제한반경
3. 그 밖의 하역장치: 제한하중
4. 하역장치에 처음으로 사용되는 하역장구와 용

제26조(어선검사공무원) <삭 제><1997.12.17>

제27조(검사증서의 발급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검사증서를 발급한다.

1.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검사에 합격된 경우에는 어선검사증서(어선의 종류·명칭·최대승선인원·제한기압 및 만재흘수선의 위치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접 등에 의하여 수리를 한 하역장구: 제한하중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한하중등의 확인을 한 때에는 별지 제59호서식의 제한하중등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하고, 어선소유자는 제한하중등의 표시를 하역설비의 잘 보이는 곳에 금속제 판 또는 용접 등 항구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12.14]

- 제62조(하역설비에 관한 검사의 기록 및 비치)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하역설비에 대하여 정기검사 또는 중간검사를 한 때에는 별지 제60호서식의 하역설비검사기록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어선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시할 수 있도록 적절한 장소에 갖추어야 한다.
1. 제한하중등확인서
 2. 하역설비검사기록부 [본조신설 2009.12.14]

제3절 어선검사증서등

제63조(검사증서의 서식 등)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검사증서, 검정증서, 건조·제조·정비확인증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어선검사증서
가. 배의 길이 24미터 미만인 어선: 별지 제61호서식
나. 배의 길이 24미터 이상인 어선: 별지 제62

2.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별검사에 합격된 경우에는 어선특별검사증서
 3. 제21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시항행검사에 합격된 경우에는 임시항행검사증서
 4. 제22조제1항에 따른 건조검사에 합격된 경우에는 건조검사증서
 5. 제22조제3항에 따른 예비검사에 합격된 경우에는 예비검사증서
 6. 제24조제2항에 따른 검정에 합격된 경우에는 검정증서
 7. 제2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확인한 경우에는 건조·제조확인증 또는 정비확인증
-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증서·검정증서 및 건조·제조·정비확인증을 발급하는 때에는 해당 어선 또는 어선용품에 합격표시 또는 증인(證印)을 붙여야 한다.[본조신설 2009.5.27]

호서식

2. 법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어선특별검사증서: 별지 제63호서식
 3. 법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임시항행검사증서: 별지 제64호서식
 4. 법 제2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건조검사증서: 별지 제65호서식
 5. 법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예비검사증서: 별지 제66호서식
 6. 법 제27조제1항제6호에 따른 검정증서: 별지 제67호서식
 7. 법 제27조제1항제7호에 따른 건조(제조·정비)확인증: 별지 제68호서식
- ② 제1항에 따른 검사증서, 검정증서, 건조·제조·정비확인증에 대하여 대항검사기관이 발급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정부의 권한을 위임받아 발급한다는 사실을 나타내야 한다. [본조신설 2009.12.14]

제64조(어선검사증서의 기재사항 등) ① 법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어선검사증서에 기재하는 최대승선인원과 제한기압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다.

② 어선원과 기타의 자[단순 어부, 「낚시어선업법」에 따른 낚시승객, 「수산업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2호에 따른 나잠어업(裸潛漁業)을 위하여 승선하는 사람 등 어선이 항행하는 동안 어

제28조(검사증서의 유효기간) ① 어선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기산방법은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어선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연장할 수 있다.

1. 어선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때에

선에 승선하는 사람으로서 어선원 외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각각 그 정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해양사고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임시로 탑승한 인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농림수산물부 장관은 어선 항행상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최대승선인원, 제한기압 및 만재흡수선의 위치 외에 해당 어선에 대하여 필요한 항행상의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농림수산물부 장관은 이를 어선검사증서에 적어야 한다. [본조 신설 2009.12.14]

제65조(검사증서등의 합격표시 등)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검사증서·검정증서 및 건조·제조·정비 확인증을 발급하는 경우 해당 어선 또는 어선 용품에 표시하는 합격표시 또는 증인은 별표 7에 따른다. [본조신설 2009.12.14]

제66조(어선검사증서 유효기간 계산방법)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어선검사증서 유효기간의 계산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부터 계산한다.

1. 최초로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해당 어선검사증서를 발급받은 날

2. 어선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 3개월이 되는 날 이후에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종전 어선검사증서의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

3. 어선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 3개월

해당 어선이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장소에 있지 아니한 경우

2. 해당 어선이 외국에서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로서 새로운 어선검사증서를 즉시 교부할 수 없거나 어선에 비치하게 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어선검사증서는 중간검사 또는 임시검사를 받아야 할 어선이 그 검사에 합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검사에 합격될 때까지 그 효력이 정지된다.[본조신설 2009.5.27]

이 되는 날 전에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해당 어선검사증서를 발급받은 날

4. 어선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종전 어선검사증서의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 다만, 다음 각 목의 사유로 인하여 종전 어선검사증서의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기검사를 받고 해당 어선검사증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가. 계선(제49조제2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경우

나. 1년 이상 어선검사를 받지 아니한 어선을 상속하거나 매수한 경우

다. 어선소유자의 과산 등의 사유로 1년 이상 어선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본조신설 2009.12.14]

제67조(어선검사증서 유효기간 연장) ① 법 제28

조제3항에 따른 어선검사증서의 유효기간 연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한차례만 연장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기간 내에 해당 어선이 검사를 받을 장소에 도착하면 지체 없이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1. 해당 어선이 정기검사를 받을 수 없는 장소에 있는 경우: 3개월 이내

2. 해당 어선이 외국에서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로서 새로운 어선검사증서를

제29조(검사증서등의 비치) 어선의 소유자는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어선검사증서·어선특별검사증서 또는 임시항행검사증서를 어선에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수산물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본조신설 2009.5.27]

즉시 발급할 수 없거나 어선에 갖추어 둘 수 없는 경우: 5개월 이내

② 제1항에 따라 어선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을 연장 받으려는 어선소유자는 별지 제69호서식의 어선검사증서 유효기간 연장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어선이 검사받을 장소에 있지 아니하여 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해당 어선의 현재의 위치를 나타내는 서류

2. 새로운 어선검사증서를 어선에 갖추어 둘 수 없는 경우: 현재 갖추고 있는 어선검사증서

③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서나 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제2항제1호의 경우: 별지 제70호서식의 어선검사증서 유효기간 연장승인서

2. 제2항제2호의 경우: 연장 승인된 유효기간이 적혀 있는 현재의 어선검사증서

[본조신설 2009.12.14]

제68조(검사증서등의 비치면제)법 제29조 단서에서 “농림수산물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이란 다음 각 호의 어선을 말한다.

1. 「내수면어업법」 제6조·제9조 또는 제11조에 따라 면허어업·허가어업 또는 신고어업에 사용하는 어선

제30조(재검사의 신청) ① 제14조·제21조·제22조·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총톤수 측정·개측, 검사·검정 및 확인(이하 이 조에서 “검사등”이라 한다)을 받은 자가 검사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사유를 갖추어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물부장관에게 재검사등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검사 등을 받으려는 자가 해당 어선설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수산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본조신설 2009.5.27]

제5장 어선협회 <삭 제>

제31조(어선협회) <삭 제><1997.12.17>

2. 「수산업법」 제27조에 따른 어장관리에 사용하는 총톤수 5톤 미만의 어선
[본조신설 2009.12.14]

제69조(재검사등)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재검사 등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71호서식의 재검사 등 신청서에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 농림수산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농림수산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거나 신청인이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관계 부분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에는 해당 신청을 기각한다.

③ 농림수산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검사 등을 직접 수행하게 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60일 이내에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12.14]

제5조(업무)<삭 제><1998.7.1>

제6조(임원)<삭 제><1998.7.1>

제7조(임원의 임기)<삭 제><1998.7.1>

제8조(임원의 직무)<삭 제><1998.7.1>

제9조(승인사항)<삭 제><1998.7.1>

제10조(예산과 결산)<삭 제><1998.7.1>

제6장 어선의 연구·개발

제32조(어선의 조사·연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어선의 안전조업과 성능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연구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

제33조(표준어선형의 개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어선의 개량과 어업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어업의 종류별로 표준어선형을 개발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

제7장 어선의 관리등 <삭 제>

제34조(외국인에 대한 어선의 양도등) <삭 제><1999.2.8>

제35조(방치어선의 관리) <삭 제><1999.2.8>

제36조(책임보험등의 가입) <삭 제><1999.2.8>

제8장 보칙

제37조(다른 법령의 준용) ① 어선의 항행 등록에 관하여 「선박법」 제2조, 제5조, 제9조제2항·제3항, 제10조(선박국적증서나 가선박국적증서를 갖추어 두지 아니하고는 대한민국국기를 게양할 수 없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11조(국기 게양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13조, 제26조(국기

제11조(임차어선에 대한 법 적용)<삭 제><1999.4.7>

제12조(양도등의 허가대상)<삭 제><1999.4.7>

제13조(양도등의 허가기준)<삭 제><1999.4.7>

제14조(양도등의 허가절차)<삭 제><1999.4.7>

제15조(방치어선의 관리·처분등)<삭 제><1999.4.7>

제16조(보험등의 가입등)<삭 제><1999.4.7>

제5장 보칙

제70조(어선의 결함신고) ①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선박안전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72호서식의 어선결함신고서에 결함내용을 적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전화등을 통하여 구두로 신고할 수 있다.

계양과 표시의 면제로 한정한다), 제28조 및 제 2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대한민국선박"은 "대한민국어선"으로, "한국선박"은 "한국어선"으로, "선박"은 "어선"으로, "선박취득지"는 "어선취득지"로, "선박관리인"은 "어선관리인"으로, "선박소유자"는 "어선소유자"로 본다.<개정 2008.3.28>

② 어선의 검사와 그 밖의 이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선박안전법」 제6조·제12조부터 제15조·제17조·제41조·제63조·제66조, 제69조 및 제73조부터 제7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국토해양부령”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선박용물건”은 “어선용품”으로, “선박”은 “어선”으로 본다.<신설 2009.5.27>

③ 어선의 총톤수 측정에 관하여 「선박법」 제3조와 법률 제3641호 선박법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한국선박"은 "한국어선"으로 본다.<개정 2008.3.28>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어선의 결함신고를 받으면 그 신고내용을 별지 제73호서식의 어선결함신고기록부에 적고 그 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어선의 결함신고를 한 자의 신원과 관련된 내용은 별지 제74호서식의 어선결함신고자명부에 적어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로 관리하여야 한다.

④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선박안전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출항정지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어선의 어선소유자에게 별지 제75호서식의 출항정지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12.14]

제71조(증서등의 재발급 등) ① 제5조제2항에 따른 어선건조(건조발주)허가서·어선개조(개조발주)허가서·어선건조(건조발주·개조·개조발주)허가사항변경허가서, 제14조제1항에 따른 어선총톤수측정증명서, 제17조제2항에 따른 국제톤수증서·국제톤수확인서, 제18조제2항에 따른 재화증량톤수증서, 제33조에 따른 선박국적증서·선적증서·등록필증, 제34조제2항에 따른 선박국적증서영역서, 제52조제5항에 따른 팽창식 구명설비 정비시설 등 확인서, 제53조제3항에 따른 별도건조검사증서, 제59조제3항에 따른 형식승인증서, 제59조의3제2항에 따른 형

식승인사항 변경승인서, 제59조의5제2항에 따른 우수사업장지정서,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어선검사증서,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어선특별검사증서, 제6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임시항행검사증서, 제63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건조검사증서, 제6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예비검사증서, 제63조제1항제6호에 따른 검정증서, 제63조제1항제7호에 따른 건조(제조·정비)확인증, 제67조제3항제1호에 따른 어선검사증서 유효기간 연장승인서, 제70조제4항에 따른 출항정지명령서(이하 이 조에서 “증서등”이라 한다)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6호 서식의 증서등 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해당 발급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잃어버렸으면 그 사유서
2. 헐어서 쓸 수 없게 되었으면 그 해당 증서등
② 제1항의 증서등 중 주소나 선명의 변경 등 경미한 변경사유가 있어 증서등을 다시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6호서식의 증서등 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해당 증서등 및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해당 발급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발급을 신청한 후에 증서 등 첨부서

제38조(청문)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0조에 따른 건조·개조허가의 취소
 2. 제19조제2항에 따른 어선등록의 말소
- [전문개정 2008.3.28]

제39조(수수료) ① 이 법에 따라 허가, 등록, 검사 및 어선총톤수 측정을 신청하거나 선박국적증서등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수산물식품부령 또는 특별자치도·시·군·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제41조제1항에 따라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의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대행기관"이라 한다)이 총톤수의 측정·개측 및 검사 업무를 대행한 경우에는 대행기관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그 대행기관에 내야 한다.<개정 2009.5.27>

② 대행기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수수료를 정하는 경우 그 기준을 정하여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

제17조(청문의 절차)<삭 제><1997.12.31>

류를 제출할 수 있다.

③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 또는 해당 발급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해당 증서등을 다시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재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12.14]

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대항기관이 수수료를 징수한 경우 그 수입은 그 대항기관의 수입으로 한다.[전문개정 2008.3.28]

제40조(권한의 위임) 농림수산물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

제41조(검사업무 등의 대행) ① 농림수산물부장관은 「선박안전법」 제45조에 따라 설립된 선박안전기술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이하 “선급법인”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선급법인의 경우 제5호의 업무는 제외한다.<개정 2009.5.27>

1. 제14조에 따른 어선의 총톤수 측정·개측
2. 제21조에 따른 어선의 검사
3. 제22조에 따른 어선의 건조검사, 어선용품의 예비검사 및 별도건조검사
4. 제24조제1항에 따른 어선 또는 어선용품의 검정
5. 제25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우수건조사업장·우수제조사업장 또는 우수정비사업장

제18조(권한의 위임) 농림수산물부장관은 법 제40조에 따라 법 제10조에 따른 어선의 건조·개조의 중지명령과 어선 또는 어선설비의 제거명령에 관한 권한을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개정 2002.6.3, 2008.2.29, 2008.6.25, 2009.11.2>[전문개정 1999.4.7]

제72조(등록업무 등의 실적보고)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이를 취합하여 농림수산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직접 농림수산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8.1.24, 1999.5.17, 2002.7.15, 2008.3.3, 2008.7.8>

1. 어선건조·개조 등의 허가실적
2. 불법 어선건조·개조의 지도단속 실적
3. 어선의 등록·등록말소 실적
4. 과태료의 처분실적
5. 삭제 <1999.5.17>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사항의 보고시기 및 보고

의 지정을 위한 조사 및 어선·어선용품의 확인

② (삭 제) <1999.2.8>

③ 공단이나 선급법인은 제1항에 따라 대행하는 업무의 범위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검사증서·검정증서·확인증 또는 어선총톤수측정증명서(국제톤수증서, 국제톤수확인서 및 재화중량톤수증서를 포함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개정 2008.3.28, 2009.5.27>

④ 공단이나 선급법인은 제1항에 따라 대행하는 업무에 대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3.28>

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공단이나 선급법인이 보고한 대행업무에 대하여 그 처리내용을 확인하고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8.3.28>

⑥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공단 또는 선급법인이 이 법에 따라 행한 업무에 대하여 지도·감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단 또는 선급법인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지시 또는 명령을 할 수 있다.<신설 2009.5.27>

⑦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공단 또는 선급법인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다.<신설 2009.5.27>

방법 등에 대하여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이를 따로 정한다. <개정 1998.1.24, 2008.3.3, 2008.7.8>

제73조(등록업무 등의 확인·점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어선등록업무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확인·점검하고, 그 처리사항을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4, 2008.3.3>

제74조(대행업무의 고시등)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공단 또는 선급법인에 업무를 대행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업무의 대상범위를 정하여 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4, 1998.9.5, 1999.5.17, 2001.12.31, 2007.11.23, 2008.3.3, 2008.7.8>

② 제1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공단 또는 선급법인에 업무를 대행하게 하거나 이를 취소한 때에는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4, 1998.9.5, 1999.5.17, 2001.12.31, 2007.11.23, 2008.3.3, 2008.7.8>

③ 제2항에 따라 공단 또는 선급법인이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선박안전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선박검사원으로 하여금 이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8.9.5, 2001.12.31, 2007.11.23, 2008.7.8>

④ 공단 또는 선급법인이 대행하는 업무의 처리방법등에 대하여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따로

제41조의2(공단에 대한 경비의 보조) 농림수산물부 장관은 공단에 대하여 어선 또는 어선설비에 관한 기술의 개발·보급, 대행업무 등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정한다. <개정 1998.1.24, 1998.9.5, 2001.12.31, 2007.11.23, 2008.3.3>

제75조(대행업무 등의 계획·실적보고 등) ① 공단 또는 선급법인이 업무를 대행하는 때에는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대행업무의 계획·실적등을 농림수산물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4, 1998.9.5, 1999.5.17, 2001.12.31, 2007.11.23, 2008.3.3, 2008.7.8>

② 삭제 <1999.5.17>

③ 제1항에 따른 공단 또는 선급법인의 보고사항·보고시기 및 보고방법 등에 관하여는 농림수산물부 장관이 이를 따로 정한다. <개정 1998.1.24, 1998.9.5, 1999.5.17, 2001.12.31, 2007.11.23, 2008.3.3, 2008.7.8>

제76조(대행업무의 지도·감독) 농림수산물부 장관은 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공단 또는 선급법인이 대행하는 업무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확인·점검 등 그 처리사항에 대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4, 1998.9.5, 1999.5.17, 2001.12.31, 2007.11.23, 2008.3.3, 2008.7.8>

있다. [본조신설 2009.5.27]

제42조(법정대리인의 의무) 제14조, 제16조제1항 및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서 어선의 소유자가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영업에 대하여 성년자와 동일한 능력을 가진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어선의 총톤수 측정·개측의 신청
 2. 어선 명칭등의 표시와 어선번호판의 부착
 3. 등록 사항의 변경 신청
 4. 선박국적증서등의 재발급 신청
 5. 등록의 말소 신청에 따르는 소유자의 의무
- [전문개정 2008.3.28]

제43조(벌칙)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조·개조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어선을 건조·개조하거나 어선의 건조·개조를 발주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전문개정 2008.3.28]

제4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09.5.27>

1. 제4조에 따른 만재흡수선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5조제1항에 따른 무선설비를 갖추지 아니

제77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은 어선에 대하여 건조·개조허가를 받지 아니하도록 한 제6조에 대하여 2012년 12월 31일까지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건조·개조허가 면제 대상의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12.14]

하고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에 사용한 자

3. 제16조에 따른 어선명칭 등의 표시 또는 어선번호판을 은폐·변경 또는 제거하고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에 사용한 자

4. 제21조에 따른 어선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에 사용한 자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4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 그 변경승인 또는 검정을 받은 자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5조 제1항에 따른 우수건조사업장·우수제조사업장 또는 우수정비사업장의 지정을 받은 자

7.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어선검사증서에 기재된 최대승선인원·제한기압·만재흡수선의 위치 등의 사항을 위반하여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에 사용한 자

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7조 제1항에 따른 어선검사증서·어선특별검사증서·임시항행검사증서·건조검사증서·예비검사증서·검정증서·건조확인증·제조확인증 또는 정비확인증을 발급받은 자

② 어선 승선원이 제1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선장에게도 같은 항의 벌금형을 과한다.[전문개정 2008.3.28]

제45조(벌칙) <삭 제><1997.12.17>

제4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에 따른 처분이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조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어선을 건조한 자 [전문개정 2009.5.27]

제47조(벌칙) 제42조를 위반하여 법정대리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48조(양벌규정) ①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3조, 제44조, 제46조 및 제47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3조, 제44조, 제46조 및 제47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8.3.28]

제49조(벌칙의 준용) 어선에 대하여 「선박법」

제32조, 제33조제1항(같은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선박국적증서나 가선박국적증서를 갖추어 두지 아니하고 대한민국국기를 게양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34조, 제35조제1항 및 제35조제2항제3호·제4호와 「선박안전법」 제83조제9호, 제85조제1호·제2호 및 제4호부터 제8호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한국선박"은 "한국어선"으로, "선박"은 "어선"으로, "선박원부"는 "어선원부"로, "선박소유자"는 "어선소유자"로, "선박관리인"은 "어선관리인"으로 본다. <개정 2009.5.27> [전문개정 2008.3.28]

제50조(벌칙의 적용) 이 법(제37조에 따라 준용되는 「선박법」 및 「선박안전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51조에서 같다)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어선소유자에게 적용할 벌칙(제49조에 따라 준용되는 「선박법」 및 「선박안전법」의 벌칙 규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51조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09.5.27>

1. 어선을 공유한 경우로서 어선관리인을 둔 때에는 어선관리인
2. 어선 임차의 경우 어선임차인
3. 선장에게 적용할 벌칙은 선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 [전문개정 2008.3.28]

제51조(벌칙 적용의 예외) 어선의 소유자가 국가,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자치구

인 경우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어선의 소유자에게 적용할 벌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52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4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업무를 대행하거나 어선총톤수측정증명서를 발급하는 공단 또는 선급법인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8.3.28]

제5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5.27>

1. 제15조 본문을 위반하여 선박국적증서등을 어선에 갖추어 두지 아니하고 어선을 항행하거나 조업에 사용한 자
2.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어선의 명칭 등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어선번호판을 붙이지 아니한 자
3. 제17조에 따른 변경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4. 제19조제1항에 따른 등록의 말소를 신청하지 아니한 자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19조제3항에 따른 어선번호판과 선박국적증서등을 반납하지 아니하거나 분실 등의 사유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6. 정당한 사유 없이 제21조제1항에 따른 어선

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3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08.6.25]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7. 제29조를 위반하여 어선검사증서·어선특별증서 또는 임시항행검사증서를 어선 안에 갖추지 아니하고 어선을 항행하거나 조업에 사용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③ <삭 제><2009.5.27>

④ <삭 제><2009.5.27>

⑤ <삭 제><2009.5.27> [전문개정 2008.3.28]

부칙 <제4559호, 1993. 6.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어선설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어선설비등에관한규칙(농림수산부령 제 939호 1985·7·4 개정)"은 제3조·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산청장의 고시일 전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3조(어선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어선에 해당하게 되는 선박(수산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신고·면허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에 한한다)으로서 당해 선박의 소유자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한 선박의 경우에는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4090호, 1993.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차어선의 등록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34조제2항 및 이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대상이 되는 어선에 대하여 이 영 시행후 6월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선박직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3]의 3. 통신부의 승무기준중 어선(무선전신시설을 설비한 선박에 한한다)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생략)

②전과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의2중 "선박안전법 제4조제1항"을 "어선법제5조제1항 및 선박안전법 제4조제1항"으로

부칙 <제1143호, 1994. 6.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배의 길이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하여 측정된 어선의 길이·깊이 및 너비는 이 규칙에 의하여 측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어선의 총톤수를 개측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어선번호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현존하는 어선의 선박국적증서등에 기재된 어선번호는 이 규칙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이 경과한 후(5톤미만의 무동력어선의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이 경과한 후를 말한다)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국적증서등의 검인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어선번호판의 부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것으로 보는 선박에 대하여 등록후 1월 이내에 등록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등록의 말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수산업에 위한 허가·신고·면허등의 효력이 상실된 어선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어선등록이 유효한 것으로 본다.

제5조(건조·개조중인 어선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수산업에 종사하게 하기 위하여 건조·개조중인 선박으로서 당해 선박의 소유자 또는 당해 선박을 건조·개조하는 자가 이 법 시행후 1월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한 선박의 경우에는 제9조제2항 및 제43조제2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어선의 총톤수측정에 대한 특례) 1982년 12월 31일 이전에 건조되었거나 개조에 착수된 어선의 소유자는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률 제3641호 선박법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총톤수의 개측을 신청할 수 있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사법경찰관사의직무를 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2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5. 어선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현장확인 공무원

제6조에 제2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한다.

[별표5]의 제3종국의 대상선박란중 "제2종 또는 제3종의 종업제한을 가진 어선"을 "어선"으로 한다.

[별표6]의 어선의 항행구역란중 "제2종 또는 제3종 종업제한이 있는 어선"을 삭제한다.

대통령령 제13673호, 전과법시행령중개정령 부칙 제4조의 표중 어선의 항행구역란중 "제2종 또는 제3종 종업제한을 가진 어선"을 삭제한다.

부칙 <제15135호, 1996. 8. 8>
(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45>생략

<46>어선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및 제14조중 "농림수산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제6조제2항, 제9조, 제10조제2항, 제13조제3호, 제14조, 제18조 및 제19조제1항중 "수산청장"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47>내지 <116>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5447호, 1997. 7.29>

칙 시행당시 현존하는 어선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어선의 정기검사를 받는 날(검사를 면제받는 어선의 경우에는 선박국적증서등의 검인을 받는 날)까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어선번호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제5조(선박국적증서등의 검인기일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새로이 선박국적증서등의 검인을 받아야 하는 총톤수 5톤미만의 무동력어선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이 경과한 후 처음 도래하는 당해어선의 등록일일에 해당하는 날까지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국적증서등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소형어선에 대한 정기검사 및 어선검사증서 유효기간등에 관한 경과조치등) ①이 규칙 시행

당시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형어선에 대한 정기검사 또는 중간검사는 이 규칙 시행후 그 검사중 먼저 도래하는 검사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형어선에 대한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어선검사증서의 유효기간에 관한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합격시 발급하는 어선검사증서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어선법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20. 제5조제25호에 계기한 자에 있어서는 그 소속관서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하는 어선법 제9조의 규정에 위반되는 범죄

②해양오염방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4항중 "어선법 제16조"를 "어선법 제21조"로 한다.
제32조제3호중 "어선법 제26조"를 "어선법 제34조"로 한다.

부칙 <제5131호, 1995.12.30> (수산업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어선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중 "수산제조업"을 "수산물가공업"으로 한다.

제12조 생략

부칙 <제5153호, 1996. 8. 8>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내에 제4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0> 생략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과태료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5598호, 1997.12.31>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관세법시행령등의개정령)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830호, 1998. 7. 1>
(선박안전법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어선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내지 제10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 (임차어선에 대한 법적용)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차한 어선에 대하여 법을 적용할 사항은 법 제11조, 법 제13조(등록부분에 한한다), 법 제14조, 법 제15조, 법 제18조 내지 제20조, 법 제35조, 법 제37조제1항·제3항, 법 제38조제2호, 법 제39조제2호 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같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조항을 인용한것으로 본다.

부칙 <제48호, 1998. 1.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0호, 1998. 9. 5>
(선박안전법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어선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및 제8호를 삭제한다.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12조제1항제1호중 "어선검사증서"를 각각 "선박검사증서"로 한다.

제13조제1항중 "제43조"를 "선박안전법시행규칙 제6조"로, "어선검사집행지"를 각각 "검사장소"로 한다.

제21조제1항제5호중 "법 제5조제1항"을 "선박안전법 제4조제1항 및 2항"으로 한다.

제28조제2항중 "등록사항에 착오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 또는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등록사항에 변경이 생기는 어선검사사항을 통보 받은 때"를 "등록사항에 착오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로 한다.

〈21〉 어선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본문·제12호, 제4조 본문, 제5조제1항 본문, 제7조, 제8조제1항 본문·제3항 내지 제5항, 제9조제1항·제3항, 제10조제1항 본문·제2항, 제11조제1항 본문, 제14조제1항·제2항, 제15조 단서, 제21조제1항 본문·제4호, 제22조제1항 본문, 동조제2항·제4항, 제23조, 제24조제1항·제2항, 제25조제1항 내지 제4항, 제26조, 제27조제1항 본문, 동조제2항, 제30조, 제31조제6항, 제32조, 제33조, 제34조제1항, 제37조제1항·제2항, 제38조 본문, 제40조제1항·제2항, 제41조제1항 본문·제2항 본문·제3항 내지 제5항, 제46조제3호, 제49조 후단, 제52조 및 제53조제2항 내지 제4항중 "수산청장"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제2항중 "해운항만청장"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단서, 제5조제1항 단서·제2항, 제8조제1항·제4항·제5항, 제13조제1항·제4항, 제14조제1항, 제15조 단서, 제16조제1항·제2항, 제17조제1항, 제18조, 제19조제1항 본문, 제20조제1항·제2항, 제21조제1항 본문·제3호, 제22조제1항·제4항·제6항, 제24조제3항, 제25조제1항·제5항, 제26조, 제28조제1항 단서·제2항·제3항, 제30조제1항, 제37조, 제39조 본문 및 제41조제4항중 "농림수산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5호, 법 제42조, 법 제47조제5호·제6호, 법 제48조 내지 제50조, 법 제53조제1항제1호·제2호·제4호 및 제6호, 법 제53조제2항 내지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으로 한다.

제18조제5호중 "법 제53조제1항제1호·제7호 및 제8호"를 "법 제53조제1항제1호"로 한다.

별표의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삭제하고, 동표의 비고중 "제7호"를 "제6호"로 한다.

⑨내지 ⑪생략

부칙 <제16226호, 1999. 4. 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623호, 2002. 6. 3>

- ①(시행일) 이 영은 2002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②(권한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 제18조 및 제19조의 개정으로 인하여 권한의 소관이 변경된 경우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한 어선의 직권등록말소 등 권한을 가진 자의 행위는 이 영의 개정규정에 의한 권한을 가진 자의 행위로 본다.

부칙 <제18312호, 2004. 3.17>
(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32조중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선의 검사임무등을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한국어선협회 또는 선급법인을 말한다)"를 "[선박안전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의 검사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한국선박안전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한다) 또는 선급법인을 말한다]"로 한다.

제37조제1항중 "법 제21조제1항제1호"를 "선박안전법 제5조제1항제1호"로,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선검사를 면제받는 어선"을 "선박안전법 제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안전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어선"으로, "3년"을 "5년"으로 한다.

제4장(제41조 내지 제65조)을 삭제한다.

제5장의 제목 "항행상의 조건 및 위험방지등"을 "국기계양의 의무등"으로 한다.

제66조 내지 제68조·제70조 및 제71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74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중 "한국어선협회를 각각 "기술원"으로 하고,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원 또는 선급법인이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선박검사원자격 등에관한규칙에 의한 검사원으로 하여금 이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제75조제1항중 "한국어선협회"를 "기술원"으로, "검사업무등을"을 "업무를"으로 하고, 동조제2

〈22〉 내지 〈69〉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5453호, 1997.12.13〉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
관한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
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제5454호, 1997.12.13〉

(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
한법률)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5470호, 1997.12.17〉 (선박안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
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어선검사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어선법 제21조제1항·제22조·제24조 및 제
25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어선의 검사, 제조
검사, 예비검사, 형식승인, 검정, 우수건조·제조·
정비사업장의 지정, 선박 또는 선박용물건의 확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677호, 2008. 2.29〉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8〉 까지 생략
〈39〉 어선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으로 한다.

〈40〉 부터 〈59〉 까지 생략

부칙 〈제20867호, 2008. 6.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3항중 "한국어선
협회"를 "기술원"으로 한다.

②기술원 또는 선급법인은 검인기간이 지난 후
에 선박국적증서등의 검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각각 그 내용
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76조중 "한국어선협회"를 "기술원"으로 한다.
별표 3의 제목중 "제25조제3항·제53조제3항 및
제55조제4항"을 "제25조제3항"으로 한다.

별표 5 내지 별표 9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의 뒷면의
유의사항란중 "한국어선협회"를 각각 "한국선박
안전기술원"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의 앞면의
구비서류란중 "어선검사증서"를 각각 "선박검사
증서"로 하고, 동서식의 뒷면의 유의사항란중 "
한국어선협회"를 각각 "한국선박안전기술원"으
로 한다.

별지 제19호서식의 앞면중 "동법시행규칙 제11
조제1항·제20조제1항·제40조제1항 또는 제64
조제1항"을 "동법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20조
제1항 또는 제40조제1항"으로 하고, 동서식의
뒷면의 제출하는 곳란중 "한국어선협회, 한국선
급"을 "한국선박안전기술원"으로 하며, 동면의
유의사항란중 "어선검사증서, 어선특별검사증서,
임시항행증, 제조검사증서, 예비검사증서"를 각
각 삭제한다.

인(이하 이 조에서 "어선검사등"이라 한다)은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② 및 ③생략

제7조(어선설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어선법 제3조 내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어선의 설비, 만재흡수선의 표시 및 무선설비에 관한 기준은 이 법에 의한 선박시설등에 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고시가 시행될 때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8조 생략

제9조(한국어선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어선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어선협회(이하 "어선협회"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한 기술원의 설립과 동시에 해산된 것으로 보며, 어선협회에 속하는 재산과 권리·의무는 이 법에 의한 기술원이 포괄승계한다.

②이 법에 의한 기술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포괄승계한 재산 및 물건에 관한 등기부 기타 공부에 표시된 어선협회의 명의로는 이 법에 의한 기술원의 설립과 동시에 기술원의 명의로 본다.

③제1항의 경우 이 법에 의한 기술원의 재산으로 보는 재산의 가액은 부칙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④제1항의 경우 이 법 시행 전에 어선협회가 행한 행위는 이 법에 의한 기술원이 행한 행위로 보며, 어선협회에 대하여 행한 행위는 이 법에

별지 제20호서식의 앞면의 구비서류란중 "어선검사증서"를 "선박검사증서"로 하고, 동서식의 뒷면의 제출하는 곳란 및 유의사항란중 "한국어선협회"를 각각 "한국선박안전기술원"으로 하며, 동면의 유의사항란중 "어선검사집행지"를 "검사장소"로 한다.

별지 제21호서식중 "한국어선협회장"을 "한국선박안전기술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22호서식의 뒷면의 제출하는 곳란중 "한국어선협회"를 "한국선박안전기술원"으로 하고, 동면의 유의사항란중 "어선검사집행지"를 "검사장소"로 한다.

별지 제23호서식, 별지 제24호서식 및 별지 제26호서식중 "한국어선협회장 CHIEF OF KOREAN FISHING VESSEL SOCIETY"를 각각 "한국선박안전기술원장 PRESIDENT OF KOREAN INSTITUTE OF SHIP SAFETY AND TECHNOLOGY"로 한다.

별지 제25호서식의 뒷면의 제출하는 곳란중 "한국어선협회"를 "한국선박안전기술원"으로 하고, 동면의 유의사항란중 "어선검사집행지"를 "검사장소"로 한다.

별지 제33호서식의 뒷면의 유의사항중 "한국어선협회"를 "한국선박안전기술원"으로 한다.

별지 제40호서식 및 별지 제41호서식의 뒷면의 제출하는 곳란 및 유의사항란중 "한국어선협회"를 각각 "한국선박안전기술원"으로 하고, 동면

의한 기술원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⑤제1항의 경우 이 법 시행당시의 어선협회의 임·직원은 이 법에 의한 기술원의 임·직원으로 선임 또는 임명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원의 임기는 어선협회의 임원으로 선임된 날부터 기산한다.

제10조 생략

제11조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어선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어선의 등록·검사 및 조사·연구"를 "어선의 등록 및 조사·연구"로, "어선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전성을 확보하고, 어선의 성능향상"을 "어선의 효율적인 관리와 성능향상"으로 한다.

제3조 내지 제6조, 제21조 내지 제31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34조제2항중 "어선의 등록·검사등"을 "어선의 등록등"으로 한다.

제37조제2항, 제39조제6호 내지 제13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41조의 제목중 "검사"를 "총톤수측정"으로 하고, 동조제1항 내지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4항 및 제5항중 "어선협회"를 각각 "기술원"으로 한다.

①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선박안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선박안전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다음의 업무를

의 유의사항란중 어선검사면제 대상어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선박의 범위

- 총톤수 5톤미만의 선박으로서 추진기관을 설치하지 아니한 선박
- 총톤수 5톤미만의 범선
- 총톤수 2톤미만의 선박
- 노와 상앗대만으로 운전하는 선박
- 내수면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최초의 정기 검사 실시)

별지 제42호서식 내지 별지 제53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②내지 ④생략

제9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17호, 1999. 5.17>

-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국기계양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어선의 용선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어선으로 등록한 선박의 대한민국 국기계양에 관하여는 제69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어선의 총톤수측정·개측
2.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국적증서등의 검인

②시·도지사는 선박안전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급법인으로 하여금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국적증서등의 검인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기술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하는 업무의 범위안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어선총톤수측정증명서(국제톤수증서·국제톤수확인서 및 재화중량톤수증서를 포함한다)를 교부할 수 있다.

제4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어선명칭등의 표시 또는 어선번호판을 은폐·변경 또는 제거하고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에 사용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5조를 삭제한다.

제4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6조(벌칙)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 또는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7조제4호를 삭제한다.

제48조중 "제43조 내지 제47조"를 "제43조·제44조·제46조 및 제47조"로 한다.

제4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어선의등록등에관한수수료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10항 및 제11항 후단을 각각 삭제한다.

②법 제39조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변경등록 및 선박국적증서등의 재교부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2와같다.

별표 2의 제목중 "재교부 및 검인"을 "재교부"로 하고, 동표중 선박국적증서·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의 검인란을 삭제한다.

별표 10을 삭제한다.

부칙 <제156호, 2000. 1. 6> (선박법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등) ①어선법시행규칙중 다음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제3호중 "선박법시행령 제4조제2항"을 "선박법 제26조의2"로 한다.

②및 ③생략

부칙 <제212호, 2001.12.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어선의 건조허가면제어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건조중에 있거나 건조를 완료

제49조 (벌칙의 준용) 선박법 제32조·제33조제1항(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박국적증서 또는 가선박국적증서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국기를 게양한 경우에 한한다)·제34조·제35조·제36조제2호(동법 제13조제1항·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국제톤수증서를 비치·반환 또는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의 규정은 어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한국선박"은 "한국어선"으로, "선박"은 "어선"으로, "선박원부"는 "어선원부"로, "선박소유자"는 "어선소유자"로, "선박관리인"은 "어선관리인"으로 본다. 제50조중 "선박법 및 선박안전법"을 "선박법"으로 한다.

제51조중 "서울특별시·직할시·도·시·군·구"를 "특별시·광역시·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로 한다.

제52조중 "검사증서등을 교부하는 어선협회"를 "어선총톤수측정증명서를 교부하는 기술원"으로 한다.

제53조제1항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삭제한다.

②내지 ⑤생략

부칙 <제5921호, 1999. 2. 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방치어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

한 어선으로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조허가를 면제받은 어선이 이 규칙 시행후 6월 이내에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231호, 2002. 7.15>

이 규칙은 2002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7호, 2004. 8. 7>

(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개항질서법시행규칙등중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6호, 2007.10.18>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공유수면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90호, 2007.11.23>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2조까지 생략

제2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어선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행하지 아니한 자가 소유하는 방치된 어선의 관리 또는 제거에 필요한 조치에 관하여는 제35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다른 법률의 개정)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5호 및 제6조제20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5971호, 1999. 4.15> (선박안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어선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중 "한국선박안전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을 "선박검사기술협회(이하 "검사협회"라 한다)"로 하고, 동조제3항중 "기술원"을 "검사협회"로 하며, 동조제4항 및 제5항중 "기술원"을 각각 "검사협회"로 한다.

제52조중 "기술원"을 "검사협회"로 한다.

부칙 <제5972호, 1999. 4.15> (선박법)

제13조제1항 본문 중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장소"를 "검사장소"로 한다.

제32조제2호 단서 중 "선박안전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선박안전법」 제6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로, "선박검사기술협회(이하 "검사협회"라 한다)"를 "선박안전기술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7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중 "검사협회"를 각각 "공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선박검사원자격등에관한규칙에 의한 검사원"을 "「선박안전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선박검사원"으로 한다.

제75조제1항·제3항 및 제76조 중 "검사협회"를 각각 "공단"으로 한다.

⑧ 부터 ⑭ 까지 생략

제24조 생략

부칙 <제408호, 2008. 2. 4>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어선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가목 중 "수산업법 제41조제1항제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2의 개정규정(동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 등록의 대상이 되는 선박의 등록신청 및 이에 따른 선박국적증서교부의 경우에 한한다), 제2조제3호, 제26조의2의 개정규정(동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선적증서교부의 대상이 되는 선박의 선적증서교부신청 및 이에 따른 선적증서교부의 경우에 한한다) 및 부칙 제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어선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 전단중 "제14조·제21조, 제23조 내지 제25조, 제26조"를 "제26조"로 하고, 동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대한민국선박"은 "대한민국어선"으로, "한국선박"은 "한국어선"으로, "선박"은 "어선"으로, "선박취득지"는 "어선취득지"로, "선박관리인"은 "어선관리인"으로, "선박소유자"는 "어선소유자"로 본다.

제37조제3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한국선박"은 "한국어선"으로 본다.

제49조중 "제35조·제36조제2호(동법 제13조제1항·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국제통수증서를 비치·반환 또는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

호"를 "「원양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로 한다.

⑤ 부터 ⑦ 까지 생략

부칙 <제413호, 2008. 2.27> (해운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어선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다목 중 "해운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해운법」 제24조제2항에 따라"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제1호, 2008. 3. 3>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6> 까지 생략 <37> 어선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나목·라목,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7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5조

다)"를 "제35조제1항·제3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로 한다.

부칙 <제6609호, 2002. 1.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어선 건조·개조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8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가 행한 어선 건조·개조허가 및 허가취소는 제8조 및 제10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어선의 등록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어선의 등록을 한 것은 제13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가 등록말소 신청에 관하여 행한 최고는 제1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어선번호판 등의 반납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어선의 등록이 말소된 어선의 소유자중 어선번호판 및 선박국적증서 등을 시·도지사에게 반납하지 아니하거나 반납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6조제1항·제2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호·제2항·제4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24조제1항제1호 단서·제2항, 제32조제2호,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73조, 제74조제1항·제2항·제4항, 제75조제1항·제3항, 제76조,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2호서식 뒤쪽, 별지 제3호서식 뒤쪽,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2호서식 앞면, 별지 제23호서식 앞면, 별지 제24호서식 앞면 및 별지 제26호서식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3조의2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2호서식 뒤쪽, 별지 제3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19호서식 뒤쪽 중 "해양수산부"를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로 하고, "안전정책담당관실"을 삭제한다.

별지 제23호서식 앞면, 별지 제24호서식 앞면, 별지 제26호서식 중 "MINISTER OF MINISTRY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를 각각 "MINISTER FOR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로 한다.

부칙 <제8221호, 2007. 1. 3> (선박안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0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어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중 "선박안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검사기술협회(이하 "검사협회"라 한다)"를 "「선박안전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 "동법 제8조제2항"을 "동법 제60조제2항"으로 하고, 동조제3항 내지 제5항중 "검사협회"를 각각 "공단"으로 한다.

⑥내지 ⑧생략

부칙 <제8852호, 2008. 2.29>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66> 까지 생략 <667> 어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8> 부터 <63> 까지 생략

부칙 <제19호, 2008. 7. 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어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 사용할 수 있으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난은 수정하여 사용하고 삭제된 난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제8조제1항 본문 및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4조제1항 및 제2항, 제32조, 제33조, 제3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제2항 전단, 제40조제1항, 제41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52조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본문·단서 및 제4항·제5항, 제13조제1항 전단 및 제4항, 제14조제1항, 제15조 단서, 제16조제1항 및 제2항, 제17조제1항, 제18조,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1조제4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39조제1항 본문 중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40조제1항 중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668>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9007호, 2008. 3.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2와 제13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선박법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6호 중 "제2조제1항 각 호"를 "제2조제1호 각 목"으로 한다.

② 소형선박저당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제2조제1항 각 호"를 "제2조제1호 각 목"으로 한다.

③ 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제2조제1항제4호"를 "제2조제1호라목"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어선용품의 형식승인 및 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선박안전법」 제20조에 따른 우수제조사업장 또는 우수정비사업장의 인정을 받은 자가 제조·정비한 어선용품의 확인업무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어선검사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선박안전법」 제7조제1항·제8조제1항·제9조제1항·제10조제1항·제11조제1항·제12조제1항·제18조제1항 및 제20조제1항에 따른 어선을 대상으로 행한 건조검사, 선박검사, 예비검사, 형식승인, 검정, 우수건조·제조·정비사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2010년 4월 22일까지는 제4조제1호나목, 제68조제2호 및 별표 16 제3호카목 1)부터 3)까지의 개정규정 중 「수산업법」 제45조는 「수산업법」 제44조로, 「수산업법」 제27조는 「수산업법」 제29조로, 「수산업법」 제41조제3항제1호는 「수산업법」 제43조제3항으로 각각 본다.

제3조(총톤수 2톤 미만 어선의 정기검사에 관한 특례) ① 제43조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총톤수 2톤 미만 어선(2008년 10월 1일 전에 건조되었거나 건조에 착수된 어선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날까지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업장의 지정, 선박 또는 선박용 물건의 확인(이하 이 조에서 “어선검사등”이라 한다)은 이 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선박검사증서가 발급된 어선의 검사에 관하여는 그 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신청된 어선에 대한 선박의 검사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어선설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선박안전법」 제26조·제27조 및 제29조에 따른 어선에 대한 선박시설, 만재흡수선의 표시 및 무선설비에 관한 기준은 이 법에 따른 어선설비기준 등에 관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고시가 시행될 때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5조(선급법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선박안전법」 제73조에 따라 지정받은 선급법인은 이 법에 따라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배의 길이 7미터 이상: 2010년 3월 31일까지
2. 배의 길이 6미터 이상 7미터 미만: 2011년 3월 31일까지

3. 배의 길이 6미터 미만: 2012년 3월 31일까지
② 제1항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총톤수 2톤 미만 어선에 대해서는 정기검사를 신청할 때에 제43조제1항제2호의 승인도면 첨부를 면제한다.

제4조(별도건조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제5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 12 제2호의 별도건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도입 전 해당 외국정부(대행 검사기관을 포함한다) 등이 실시한 검사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기관

2. 제작 또는 거치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기관

제5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에 따라 행정기관이 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각종 신청이나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규칙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어선법 시행령 별표

[별표]

위반행위별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9조 관련)

위 반 행 위	해당 법조문	과태료 금액
1. 법 제15조 본문을 위반하여 선박국적증서등을 어선에 갖추어 두지 아니하고 어선을 항행하거나 조업에 사용한 자	법 제53조제1항제1호	10만원
2. 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어선의 명칭등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어선번호판을 붙이지 아니한 자	법 제53조제1항제2호	30만원
3. 법 제17조에 따른 변경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가. 10일 이내의 기간이 경과한 때 나. 1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1일 초과시마다	법 제53조제1항제3호	5만원 1만원
4.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등록의 말소를 신청하지 아니한 자 가. 10일 이내의 기간이 경과한 때 나. 1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1일 초과시마다	법 제53조제1항제4호	5만원 1만원
5. 정당한 사유없이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어선번호판과 선박국적증서등을 반납하지 아니하거나 분실 등의 사유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가. 10일 이내의 기간이 경과한 때 나. 1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1일 초과시마다	법 제53조제1항제5호	5만원 1만원
6.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어선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가. 10일 이내의 기간이 경과한 때	법 제53조제1항제6호	5만원

나. 1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1일 초과시마다		1만원
7. 법 제29조를 위반하여 어선검사증서·어선특별 검사증서 또는 임시항행검사증서를 어선 안에 갖추지 아니하고 어선을 항행하거나 조업에 사 용한 자	법 제53조제1항제7호	30만원

비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정하되,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의 최고한도금액은 각각 30만원으로 한다.

어선법 시행규칙 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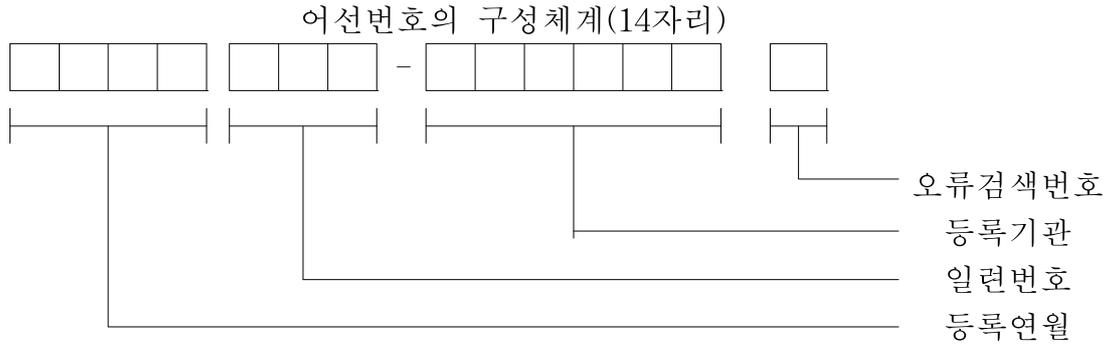
시행규칙 별표 목차

별표 번호	별표 제목	쪽	별표 번호	별표 제목	쪽
1	어선번호의 부여방법(제21조제3항 관련)	99	11	건조검사 준비사항(제55조제1항제6호 관련)	127
2	건조검사 시 수행하는 선체 압력시험방법(제50조제2항 관련)	101	12	별도건조검사 준비사항(제55조제1항제7호 관련)	128
3	예비검사를 받을 수 있는 어선용품(제52조제1항 관련)	103	13	예비검사 준비사항(제55조제1항제8호 관련)	129
4	팽창식 구명설비의 수리 또는 정비에 따른 시설 등의 기준(제52조제4항 관련)	108	14	선체두께 측정범위 및 측정방법 등(제55조제2항 관련)	131
5	별도건조검사 시 수행하는 선체 압력시험방법(제53조제2항 관련)	111	15	수중검사준비와 그 검사방법 등(제56조제5항 관련)	133
6	검사종류별 관련 도면(제54조제1항 관련)	113	16	검사준비 및 서류제출의 완화 등(제56조제6항 관련)	135
7	도면승인 표시 및 건조검사, 예비검사, 검정, 건조(제조·정비) 확인의 합격표시(제54조제2항 및 제65조 관련)	119	17	우수사업장의 지정기준 등(제59조의4 관련)	143
8	정기검사 준비사항(제55조제1항제1호 관련)	120	18	자체검사 합격표시(제59조의7제4항 관련)	160
9	중간검사 준비사항(제55조제1항제2호 관련)	124	19	하역설비에 대한 제한하중등을 확인하기 위한 기준(제60조제2항 관련)	161
10	임시항행검사 준비사항(제55조제1항제5호 관련)	126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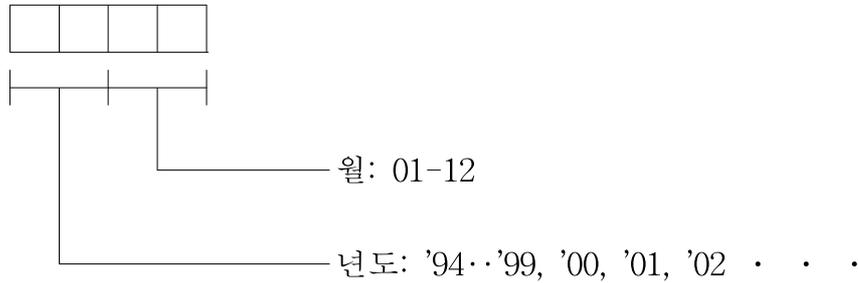
[별표 1]

어선번호의 부여방법(제21조제3항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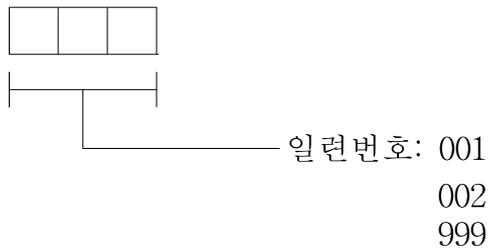
1. 어선에 대한 등록번호는 등록연월 4자리수, 일련번호 3자리수, 등록기관별 분류번호 6자리수 및 오류검색번호 1자리수를 차례로 연결하여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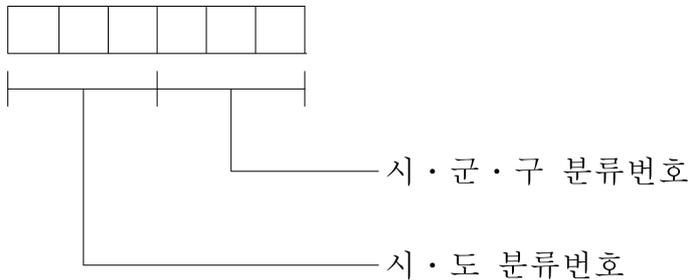
2. 등록연월은 연도 끝 2자리수와 월 2자리수를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3. 일련번호는 어선원부에 기재하는 매월별 순서번호에 의하여 매월마다 새로운 순서에 의하되 그 순서번호가 3자리수가 아닌 경우에는 3자리수가 될 때까지 앞에 0을 붙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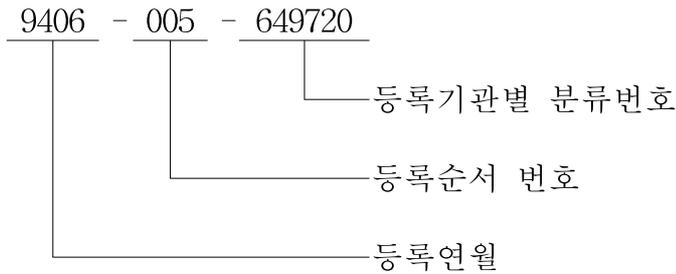
4. 등록기관별 분류번호는 행정업무용 표준코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5. 오류검색번호는 다음의 산출방식에 따라 산출한다.

가. 등록연월, 등록순서 번호, 등록기관별 분류번호를 차례로 연결한 13자리의 숫자로 만든다.

[예시]



나. 각 숫자에 차례로 1과 2를 곱한 값(곱한 값이 10을 넘을 경우 그 곱한 값에서 10을 뺀 나머지의 값)을 모두 더하여 합을 구한다.

[예시]

$$\begin{array}{r} 9406005649720 \\ \times) 12121212121 \\ \hline 9802005248740 \\ 9+8+0+2+0+0+5+2+4+8+7+4+0=49 \end{array}$$

다. 합을 10으로 나누어 몫과 나머지를 구한다.

[예시] $49 \div 10 = 4$ 나머지 9

라. 10에서 나머지를 뺀 값을 오류검색번호로 한다. 다만, 10에서 나머지를 뺀 값이 10인 때에는 0을 오류검색번호로 한다.

[예시] $10 - 9 = 1$ 오류검색번호

[별표 2]

건조검사 시 수행하는 선체 압력시험방법(제50조제2항 관련)

1. 입거(入渠)되거나 상가(上架)된 상태에서 압력시험을 실시한다.
2. 압력시험은 수압시험이나 기밀시험의 방법으로 하고, 다음에 따라 확인한다.
 - 가. 압력시험의 범위는 강력갑판 아래의 선체, 선루 또는 상갑판 위의 첫째 갑판실로 하며 반드시 선박검사원이 입회하여야 한다.
 - 나. 수고(水高)나 압력을 확인하고, 물이나 공기가 새지 아니하는지 확인한다.
 - 다. 압력이 걸린 상태에서 부재(部材)가 변형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변형이 있는 경우에는 수정 후 보장한다.
 - 라. 선체 각 부에 대한 수압시험은 다음의 방법으로 한다.

항 목	수압시험의 기준	
이중저	정판부터 공기관 상단까지의 수고압력과 정판부터 격벽갑판까지의 수고압력 중 큰 것에 상당하는 압력	
노출된 상갑판 및 선루갑판	호스내 압력이 2 bar [2 kgf/cm ²] 이상인 사수에 따른 압력	
단격벽에 제2급 폐쇄장치를 갖춘 선루 내의 상갑판		
수밀격벽 및 그 계단부		
외판	호스 내 압력이 2 bar [2 kgf/cm ²] 이상인 사수에 따른 압력 또는 수고압력. 다만, 이중저·선수창 등을 구성하는 부분의 외판은 해당 부분의 수압시험의 방법에 따른다.	
선수격벽 후방에 있는 묘쇄고	정판까지의 수고압력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어선의 선수창(물탱크나 유탱크로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	만재흘수선까지의 수고압력과 선수격벽의 높이의 3분의 2까지의 수고압력 중 큰 것에 상당하는 압력. 다만, 그 수선 이상의 부분은 호스 내의 압력이 2 bar [2 kgf/cm ²] 이상인 사수에 따른 압력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어선의 수밀격벽의 수밀문	취부 전	그 수밀격벽이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수고압력에 상당하는 압력
	취부 후	호스 내의 압력이 2 bar [2 kgf/cm ²] 이상인 사수에 따른 압력
선미창(물탱크나 유탱크로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 및 선미관구획실	만재흘수선까지의 수고압력에 상당하는 압력. 다만, 만재흘수선 이상의 부분은 호스 내의 압력이 2 bar [2 kgf/cm ²] 이상인 사수에 따른 압력	
물탱크나 유탱크로 사용하는	정판부터 다음 위치까지의 수고압력 중 가장 큰	

선수창 또는 선미창	것에 상당하는 압력 1) 넘침관의 상단 2) 만재흡수선 3) 정판 위 2.4미터의 높이 4) 배의 깊이의 상부기점으로 부터 정판까지의 수직거리의 3분의 2를 정판부터 상방으로 수직으로 측정된 높이
디프탱크	
제1급 폐쇄장치의 개구를 설치한 선루 및 저선미루단의 격벽	호스 내의 압력이 2 bar [2 kgf/cm ²] 이상인 사수에 따른 압력
축로	
그 밖의 수밀통로	
제1급 폐쇄장치를 설치한 선루단격벽의 출입구	
수밀폐쇄장치를 갖춘 갑판구(창구를 포함한다)	
현문, 재화문 및 현창	
펌프실과 겸용하지 아니하는 코퍼댐	정판부터 창구 정부까지의 수고압력에 상당하는 압력
펌프실과 겸용하는 코퍼댐	호스 내의 압력이 2 bar [2 kgf/cm ²] 이상인 사수에 따른 압력
활어창	정판까지의 장수에 따른 압력
복판타	1.5D 또는 2d 중 작은 값의 수고압력에 상당하는 압력. 이 경우 D는 배의 깊이, d는 지정된 흡수로 한다.

마. 라목에 따른 수압시험 대신에 다음의 기밀시험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어선마다 기밀시험을 희망하는 부위, 시험압력, 시험방법, 사용할 압력계의 종류, 검사예정 일자 등을 기재한 기밀시험 방안을 받아 사전 검토 후 실시하고, 현장 입회시 누설개소가 많거나 사전조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라목에 따른 수압시험을 실시한다.

- 1) 기밀시험의 압력은 0.2bar[0.2kgf/cm²]로 한다.
- 2) 시험압력은 U자형 게이지나 2개의 원형지시압력계로 확인한다.
- 3) 누설개소의 압력은 검지액(檢知液)을 발라 확인한다.
- 4) 현장 입회 전에 조선소로 하여금 사전확인을 충분히 하게 하고 누설개소가 발견되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게 한다.

[별표 3]

예비검사를 받을 수 있는 어선용품(제52조제1항 관련)

1. 예비검사 대상 어선용품은 다음과 같다.

가. 선체에 관한 것

- 1) 선체구조용 재료(강재, 강재외의 금속재료, 플라스틱수지, 유리섬유, 고무포 등)
- 2) 어선의 선체(측정 길이 24미터 미만으로 한정한다)
- 3) 선미골재
- 4) 타
- 5) 타두재
- 6) 타심재
- 7) 수밀폐쇄장치

나. 기관에 관한 것

- 1) 내연기관 또는 그 기관의 중요부분(사용하는 재료에 대하여 재료시험을 받아야 하는 부품으로 한정한다)
- 2) 선내외기(船内外機)
- 3) 선외기(船外機)
- 4) 보일러 또는 그 기관의 중요부분(사용하는 재료에 대하여 재료시험을 받아야 하는 부품으로 한정한다)
- 5) 배기터빈과급기 또는 그 기관의 중요부분(사용하는 재료에 대하여 재료시험을 받아야 하는 부품으로 한정한다)
- 6) 압력용기
- 7) 열교환기
- 8) 공기압축기(수동식 제외)
- 9) 중간축, 역전기축, 스러스트축, 직경 50밀리미터 이상의 프로펠러축, 기타 동력 전달축
- 10) 축계의 클러치, 역전기, 유체커플링, 탄성커플링 또는 감속장치
- 11) 프로펠러축에 사용되는 선미관, 선미관실 장치
- 12) 프로펠러 또는 그 날개
- 13) 아웃드라이버장치
- 14) 러더프로펠러장치
- 15) 워터젯추진장치
- 16) 액량계측장치
- 17) 유량계
- 18) 유가열기
- 19) 원격제어장치
- 20) 1류관용 관류(플렉시블 호스를 포함한다)

- 21) 펌프류
- 22) 밸브류
- 23) 탄성체의 고무엘리먼트

다. 배수설비에 관한 것

- 1) 발지펌프
- 2) 선외펌프

라. 조타·계선 및 양묘설비에 관한 것

- 1) 유압조타장치
- 2) 닛
- 3) 쇠사슬
- 4) 로프
- 5) 유압펌프
- 6) 유압모터
- 7) 양묘장치
- 8) 계선장치
- 9) 비상예인장치

마. 구명설비에 관한 것

- 1) 구명정
- 2) 구조정
- 3) 구명뗏목지원정
- 4) 구명정, 구조정, 구명뗏목지원정의 추진기관
- 5) 공기자급식구명정의 공기자급장치
- 6) 구명뗏목
- 7) 진수장치
- 8) 탑승장치
- 9) 보트대밧
- 10) 보트윈치
- 11) 구명부기
- 12) 구명부환(구명줄을 포함한다)
- 13) 구명조끼
- 14) 구명줄발사기(발사체 및 구명줄을 포함한다)
- 15) 방수복
- 16) 보온구
- 17) 로켓낙하산신호, 신호홍염, 발연부신호, 자기발연신호
- 18) 자기점화등
- 19) 탐조등
- 20) 구명조끼 표시등

- 21) 캐노피등
- 22) 수밀전기등
- 23) 구난식량·식수
- 24) 해수탈염장치
- 25) 고압가스용기의 밸브
- 26) 수압이탈장치
- 27) 위크링크
- 28) 레이더반사기
- 29) 역반사재
- 30) 노출보호복

바. 소방설비에 관한 것

- 1) 소화펌프
- 2) 소화기(휴대식포말방사기를 포함한다)
- 3) 소화장치의 부품(압력용기, 스프링클러헤드, 매니폴드, 모니터, 혼합기, 밸브류, 관류)
- 4) 소화제
- 5) 소화호스, 노즐
- 6) 소방원장구(개인장구, 호흡구)
- 7) 물분무방사기
- 8) 국제육상시설연결구
- 9) 화재탐지장치(탐지기, 제어반, 표시반, 경보장치 및 구성부품)
- 10) 수동화재경보장치(발신기, 표시반 및 제어반)
- 11) 가연성가스검정기
- 12) 방화용재료
- 13) 방화문
- 14) 자동폐쇄형방화담퍼
- 15) 고속배기장치
- 16) 플레임어레스트

사. 거주설비에 관한 것

- 1) 기계식통풍장치
- 2) 현창
- 3) 비상표시등, 탈출유도등
- 4) 비상조명장치
- 5) 공기식 매트리스

아. 항해용구에 관한 것

- 1) 선등 또는 그 부품(전구, 유리)
- 2) 음향신호장치(기적, 호중, 동라 등)

- 3) 자기컴퍼스
- 4) 자이로컴퍼스
- 5) 음향측심기
- 6) 선속거리계
- 7) 회두각속도계
- 8) 도선사용사다리
- 9) 엔진텔레그라프
- 10) 재화문개폐표시장치
- 11) 누수검지장치
- 12) 홀수계측장치
- 13) 위성항법장치(GPS) 및 보정위성항법장치(DGPS)

자. 어로 및 하역 기타 작업설비에 관한 것

- 1) 크레인
- 2) 하역장치의 부품[데릭붐, 윈치, 와이어로프, 블록, 구즈넥(Goose Neck)브래킷]
- 3) 어로용 윈치 또는 그 부품

차. 전기설비에 관한 것

- 1) 정격출력 5킬로와트 또는 5킬로볼트암페어 이상의 발전기
- 2) 정격출력 1킬로와트 이상의 전동기
- 3) 정격출력 5킬로볼트 암페어 이상의 변압기
- 4) 정격출력 5킬로와트 또는 5킬로볼트 암페어 이상의 발전기에 사용되는 배전반
- 5) 정격출력 1킬로와트 이상의 전동기에 사용되는 제어기
- 6) 방폭형전기기기 및 기구
- 7) 주파수변환장치
- 8) 선박용전선

카. 기타

- 1) 승강설비 또는 그 중요부품
- 2) 냉동설비의 냉매압축기, 압력용기, 열교환기, 안전밸브

타.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 또는 기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법 제3조에 따른 어선설비에 관한 기준으로 정하는 설비나 그 부품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선용품은 예비검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가. 다음에서 정하는 어선용품

- 1) 원동기: 22kW(30PS) 미만의 것
- 2) 공기압축기: 수동식의 것
- 3) 중간축: 직경 60밀리미터 미만의 것
- 4) 프로펠러축: 직경 50밀리미터 미만의 것

- 5) 선미관: 직경 50밀리미터 미만의 프로펠러축에 사용되는 것
 - 6) 프로펠러: 직경 700밀리미터 미만의 것
 - 7) 관류(플렉시브호스 포함): 1류관용 외의 것
 - 8) 펌프류: 수동식의 것
 - 9) 밸브류: 안전밸브, 선체불이밸브 및 1류관용 외의 것
 - 10) 쇠사슬: 계선 또는 계류장치에 사용되는 지름 14밀리미터 미만의 것
 - 11) 로프: 계선 또는 계류장치에 사용되는 다음의 로프
 - 가) 지름 14밀리미터 미만의 와이어로프
 - 나) 지름 24밀리미터 미만의 와이어로프 외의 로프
 - 12) 현창: KS V ISO 1751 C급 제외
 - 13) 발전기: 정격출력 5킬로와트 또는 5킬로볼트암페어 미만의 것
 - 14) 배전반: 정격출력 5킬로와트 또는 5킬로볼트암페어 이상의 발전기에 사용되는 것 외의 것
 - 15) 변압기: 정격출력 5킬로볼트암페어 미만의 것
 - 16) 전동기: 정격출력 1킬로와트 미만의 것
 - 17) 제어기: 정격출력 1킬로와트 이상의 전동기에 사용되는 것 외의 것
 - 18) 하역장치: 1톤 미만의 화물의 하역에 사용되는 것
 - 19) 냉동설비(냉매압축기, 압력용기, 열교환기, 안전밸브): 사용동력이 7.5kW (10PS) 이하로서 1차냉매를 R12, R22, R404a 또는 R502로 하는 냉동설비일 것
-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선용품으로서 협약 당사국 정부 또는 농림수산 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선급법인의 검사를 받은 어선용품
- 1) 외국에서 건조나 수리한 어선에 비치된 어선용품
 - 2) 외국으로부터 도입하거나 차용한 어선에 비치된 어선용품
 - 3) 국내에서 생산되지 아니하는 어선용품
- 다. 다른 어선 또는 선박에 설치되어 검사를 받아오던 어선용품 및 선박용물건(다만, 별표 16 제3호카목에 따른 기관은 제외한다)
- 라. 총톤수 2톤 미만 어선에 설치하는 기관

[별표 4]

팽창식 구멍설비의 수리 또는 정비에 따른 시설 등의 기준
(제52조제4항 관련)

1. 시설

가. 작업장

- 1) 천장의 높이는 4.5미터 이상, 면적은 60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정비하려는 구멍뚫목을 펼쳤을 때의 바닥면적보다 클 것
- 2) 구멍뚫목을 들어 올려 고정하거나 이동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는 것
- 3) 직사광선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어야 하며, 충분한 조명장치를 갖추는 것
- 4) 실내온도 및 상대습도 조절장치를 갖추는 것
- 5) 환기장치를 설치할 것

나. 수세장

면적은 25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수세시설을 갖추는 것

다. 누설 시험장

- 1) 면적은 25제곱미터 이상일 것
- 2) 바닥은 뚫목의 고무포를 손상시키지 아니하도록 덮개를 깔 것
- 3) 직사광선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어야 하며, 충분한 조명장치를 갖추는 것
- 4) 실내온도 및 상대습도 조절장치를 갖추는 것
- 5) 환기장치를 설치할 것

라. 정비한 구멍뚫목을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이중으로 겹쳐서 저장하는 것을 금한다)

마. 부품 진열장

- 1) 공구, 비품류 등이 흐트러지지 아니하게 정비하여 놓을 수 있도록 선반식으로 되어 있을 것
- 2) 면적은 10제곱미터 이상일 것

바. 사무실

면적은 15제곱미터 이상일 것

사. 위험물저장소

관계 법령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는 것

2. 인원

가. 정비기술자

팽창식 구멍설비의 제작회사 또는 정비사업장에서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팽창식 구멍설비에 관한 정비기술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자 2명 이상을 확보할 것

나. 작업원

정비기술자의 지도를 받아 정비작업에 종사하는 작업원 2명 이상을 확보할 것

3. 기구 및 비품류

가. 점검을 위한 기구류

- 1) 솔 등 뗏목 수세용구
- 2) 용기 분해용공구
- 3) 가스 주입장치 분해용공구
- 4) 손전지 또는 회중전등
- 5) 바닥이음부 시험을 위한 뗏목 지지대 등

나. 정비 및 보수용기구

1) 접착가공용구

보관용기(고무풀, 촉진제 및 용제를 포함한다), 솔, 접시저울(칭량 1킬로그램 정도), 빠른 건조를 위한 적외선램프 또는 드라이어, 가위, 롤, 라분대 등

2) 끈 및 로프 가공용구

실감개, 바늘류, 절단기

3) 봉제 가공용구

공업용재봉틀

4) 납땀 가공용구

납땀 인두

5) 구멍쇠 및 눌림단추 가공용구

각종 치수의 펀치 및 타구

6) 도장 및 솔 가공용구

7) 젖은 뗏목을 건조시키는 데에 충분한 온풍기

8) 진공펌프

다. 검사를 위한 기구

1) 누설시험을 위한 기구

압력계(혈압계 수은주 300밀리미터 또는 수압계), 온도계, 기압계(아네로이드형), 공기압축기 및 전동 송·배풍기

2) 가스용기검사를 위한 기구류

저울(칭량 20킬로그램), 온수시험용 물탱크(용기 1개 이상의 수용이 가능한 것일 것) 및 용기내압 시험설비

3) 자동이탈장치 시험용구(팽창식 구멍뗏목 또는 팽창식 구멍부기의 경우로 한정한다)[하중 5킬로그램 및 하중 200킬로그램에서 시험할 수 있는 것일 것]

4) 그 밖의 습도계, 10미터 줄자 등

라. 그 밖의 기구류

1) 컨테이너 개방용공구

스패너, 지렛대 등

2) 그 밖에 특히 지정된 공구류

마. 보수용 비품 및 소모품

보수용 각종 고무포, 심, 끈, 밧줄류, 접착제, 용제, 도료, 인쇄잉크, 교환용부품 등

4. 자체정비기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팽창식 구멍설비의 정비 기준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확인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별표 5]

별도건조검사 시 수행하는 선체 압력시험방법(제53조제2항 관련)

1. 입거(入渠)되거나 상가(上架)된 상태에서 압력시험을 실시한다.
2. 압력시험은 수압시험이나 기밀시험의 방법으로 하고, 다음에 따라 확인한다.
 - 가. 압력시험의 범위는 강력갑판 아래의 선체, 선루 또는 상갑판 위의 첫째 갑판실로 하며 반드시 선박검사원이 입회하여야 한다.
 - 나. 수고(水高)나 압력을 확인하고, 물이나 공기가 새지 아니하는지 확인한다.
 - 다. 압력이 걸린 상태에서 부재(部材)가 변형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변형이 있는 경우에는 수정 후 보강한다.
 - 라. 선체 각 부에 대한 수압시험은 다음의 방법으로 한다.

항 목	수압시험의 기준
이중저	정판부터 공기관 상단까지 수고압력과 정판부터 격벽갑판까지의 수고압력 중에 큰 것에 상당하는 압력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어선의 선수창(물탱크나 유탱크로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	만재흡수선까지의 수고압력과 선수 격벽의 높이의 3분의 2까지의 수고압력 중 큰 것에 상당하는 압력. 다만, 그 수선 이상의 부분은 호스 내의 압력이 2bar [2 kgf/cm ²] 이상인 사수에 따른 압력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어선의 수밀 격벽의 수밀문	호스 내의 압력이 2 bar [2 kgf/cm ²] 이상인 사수에 따른 압력
선미창(물탱크나 유탱크로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 및 선미관구확실	만재흡수선까지의 수고압력에 상당하는 압력. 다만, 만재흡수선 이상의 부분은 호스 내의 압력이 2 bar [2 kgf/cm ²] 이상인 사수에 따른 압력
물탱크나 유탱크로 사용하는 선수창 또는 선미창	정판부터 다음 위치까지의 수고압력 중 가장 큰 것에 상당하는 압력 가) 넘침관의 상단 나) 만재흡수선
디프탱크	다) 배의 깊이의 상부기점으로부터 정판까지의 수직 거리의 3분의 2를 정판부터 상방으로 수직으로 측정된 높이
축로	
그 밖의 수밀통로	
제1급 폐쇄장치를 설치한 선루단격벽의 출입구	호스 내의 압력이 2 bar [2 kgf/cm ²] 이상인 사수에 따른 압력
수밀폐쇄장치를 갖춘 갑판구(창구를 포함한다)	
현문, 재화문 및 현창	
펌프실과 겸용하지 아니하는 코퍼댐	정판부터 창구 정부까지의 수고압력에 상당하는 압력
펌프실과 겸용하는 코퍼댐	호스 내 압력 2 bar [2 kgf/cm ²] 이상의 사수압력

마. 라목에 따른 수압시험 대신에 다음의 기밀시험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어선마다 기밀시험을 희망하는 부위, 시험압력, 시험방법, 사용할 압력계의 종류, 검사예정일자 등을 기재한 기밀시험방안서를 받아 사전 검토 후 실시하고, 현장 입회시 누설개소가 많거나 사전조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라목에 따른 수압시험을 실시한다.

- 1) 기밀시험의 압력은 0.2bar[0.2kgf/cm²]로 한다.
- 2) 시험압력은 U자형 게이지나 2개의 원형지시압력계로 확인한다.
- 3) 누설개소의 압력은 검지액(檢知液)을 발라 확인한다.
- 4) 현장 입회 전에 조선소로 하여금 사전확인을 충분히 하게 하고 누설개소가 발견되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게 한다.

[별표 6]

검사종류별 관련 도면(제54조제1항 관련)

1. 건조(별도건조)검사 관련 도면

가. 배의 길이 24미터 미만인 경우

1) 총톤수 10톤 미만 어선

가) 일반배치도 또는 배의 길이, 너비, 깊이, 최대 승선인원, 격벽위치, 기관의 종류 및 출력 등이 기재된 제작사의 카달로그

나) 강재배치도 또는 재료배치도

다) 중앙횡단면도

라) 강도계산서(강화플라스틱 재질은 선체관두께측정 등에 의한 강도계산서를 말하고, 나) 및 다)의 도면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

마) 가)부터 라)까지에도 불구하고 총톤수 2톤 미만 어선의 경우 가)의 도면

2) 총톤수 10톤 이상 어선

가) 1)의 가)부터 다)까지의 도면

나) 기관실전체장치도

다) 전기계통도(동시에 사용하는 발전기 합계용량 50kVA 이상으로 한정한다)

나. 배의 길이 24미터 이상인 경우

1) 건조사양서(별도건조검사 대상은 제외한다)

2) 일반배치도

3) 선체선도

4) 중앙횡단면도

5) 강재배치도 또는 재료배치도

6) 외관전개도(강선과 알루미늄선으로 한정한다)

7) 배수량등곡선도

8) 기관실전체장치도

9) 흡수표배치도

10) 제개구폐쇄장치도

11) 전기계통도(동시에 사용하는 발전기 합계용량이 50kVA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2) 구조 및 배치를 나타내는 설계도면(별도건조검사 대상은 제외한다)

가) 상갑판하 선체구조도

나) 선미재 및 스트러트 구조도

다) 선루 및 갑판실 구조도

라) 램프게이트 구조도(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마) 타(舵)구조도
- 바) 축계장치도
- 사) 제관장치도(갑판배관장치를 포함한다)
- 아) 냉동기기배치도, 열부하계산서 및 이에 따른 배관도(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자) 비틀림진동계산서(중간축구조도, 프로펠러축구조도, 프로펠러구조도 및 계산 관련 자료를 포함하며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차) 하역장치 배치 및 강도계산서(총톤수 300톤 이상인 어선에 설치되어 1톤 이상의 화물의 하역에 사용되는 하역장치로 한정한다)
- 카) 전기설비(동시에 사용하는 발전기 합계용량이 50kVA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1) 전력조사표
 - (2) 전기기기 배치도

2. 정기검사와 중간검사 관련 도면

가. 제1호의 도면

나. 승강설비에 관한 검사를 받는 경우 다음의 서류

- 1) 승강설비 장력계산서
- 2) 승강설비 배치도와 승강설비 구조도
- 3) 승강설비의 사용재료를 나타내는 서류
- 4) 승강설비의 사용방법을 나타내는 서류

3. 임시검사 관련 도면

가. 제47조제1항에 따른 개조 또는 수리를 하려는 경우 제2호의 도면 중 해당 도면

나. 만재흡수선 위치를 변경하려는 경우 다음의 도면

- 1) 선체선도
- 2) 중앙횡단면도
- 3) 배수량등곡선도
- 4) 갑판평면도

4. 예비검사 관련 도면

가. 어선의 선체

- 1) 일반배치도
- 2) 중앙횡단면도
- 3) 재료배치도

나. 내연기관

- 1) 조립횡단면도 및 조립종단면도

- 2) 실린더헤드, 실린더라이너, 피스톤쿨링재킷구조도
- 3) 크랭크축(평형추 및 볼트, 커플링볼트를 포함한다) 구조도
- 4) 피스톤, 크로스헤드, 피스톤로드 및 연결봉 조립도(볼트를 포함한다)
- 5) 연료분사관 및 피복장치도
- 6) 제관장치도(연료유, 윤활유, 냉각유, 냉각수, 공기 및 유압의 각 계통을 포함하여 관의 재질, 치수, 사용압력 등을 기입한 것을 말한다)
- 7) 베드 및 스러스터블록과 기관대와의 거치상세도(주기관으로 한정한다)
- 8) 크랭크실 도출밸브의 구조 및 배치도(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9) 소기용송풍기 또는 배기터빈과급기의 조립단면도
- 10) 기관 주요 요목(종류, 형식, 연속최대출력, 연속최대회전수, 착화순서, 실린더내최대압력, 도시평균유효압력, 정미평균유효압력, 각 실린더의 왕복운동부의 질량, 플라이휠의 중량 및 지름, 평형추의 질량, 회전반지름 및 부착위치, 배기터빈과급기의 사양 등)을 적은 것
- 11) 주요 부품의 재료 및 강도계산서
- 12) 기관진동에 관한 자료(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13) 수입신품 및 조립완성품의 내연기관(선내외기와 선외기는 제외한다)은 1), 7), 10), 12) 및 정비지침서로 한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주요 부품의 재료 및 강도계산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 선내외기(船内外機) 및 선외기(船外機)

- 1) 기관 주요 요목
- 2) 외형도(기관의 출력 등이 기재된 제작사의 카달로그를 포함한다)
- 3) 거치도
- 4) 정비지침서 또는 정비표준서

라. 보일러

- 1) 기기배치도 및 전체조립도
- 2) 동체, 노통 및 헤더 등의 상세도 및 노즐상세도
- 3) 배관의 배열 및 상세도(밸브의 배치, 관의 재질, 치수 및 사용압력 등을 기입한 것을 말한다)
- 4) 공기에열기, 보일러 부착품 장치도 또는 장치선도
- 5) 안전밸브의 조립도
- 6) 자동제어 및 원격제어계통도
- 7) 보일러의 주요 요목, 주요 재료 및 강도계산에 관한 자료

마. 압력용기

- 1) 전체조립도
- 2) 동체 및 헤더 등의 상세도

- 3) 안전밸브의 조립도
- 4) 자동제어 및 원격제어 계통도
- 5) 압력용기의 주요 요목, 주요부품의 재료 및 강도계산에 관한 자료
- 6) 제3종 압력용기는 1) 및 5)로 한정한다.

바. 공기압축기(수동식이 아닌 것으로 한정한다)

- 1) 조립단면도 및 크랭크축 상세도
- 2) 제어 및 안전장치계통도
- 3) 제관장치도(윤활유, 냉각수 및 압축공기의 각 계통을 포함하여 관의 재질, 치수 및 사용압력 등을 기입한 것을 말한다)
- 4) 공기압축기의 주요 요목, 주요 부품의 재료 및 강도계산에 관한 자료

사. 축계장치

- 1) 전체조립도 또는 축계장치도
- 2) 추력축, 중간축, 프로펠러축 및 동력전달축의 구조도
- 3) 커플링 및 커플링볼트 구조도
- 4) 선미관, 선미관베어링, 스트럿베어링 및 선미관실장치구조도
- 5) 프로펠러 구조 및 상세도
- 6) 주요 부품의 재료, 주요부품의 강도계산에 관한 자료
- 7) 비틀림진동계산서(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아. 축계의 클러치, 역전기, 유체 커플링 또는 탄성 커플링

- 1) 조립단면도
- 2) 주요 부분의 구조도
- 3) 각 장치의 주요 요목, 주요 부품의 재료 및 강도계산에 관한 자료

자. 감속장치

- 1) 조립단면도
- 2) 각 기어, 기어축, 플렉시블 커플링, 플렉시블 축 등 주요 부분의 구조도
- 3) 감속기어장치의 주요 요목, 주요 부품의 재료 및 강도계산에 관한 자료

차. 아웃드라이버 및 리더프로펠러장치

- 1) 조립단면도
- 2) 주요 요목, 주요 부품의 재료, 주요 부품의 강도계산에 관한 자료

카. 워터제트추진장치

- 1) 조립단면도
- 2) 임펠러, 주축, 물흡입관로부, 노즐, 디플렉터, 리버서의 구조도
- 3) 주요 요목, 주요 부품의 재료, 주요 부품의 강도계산에 관한 자료
- 4) 비틀림진동계산서(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타. 펌프류

- 1) 조립단면도
 - 2) 주요 요목, 주요 부품의 재료, 주요 부품의 강도계산에 관한 자료
- 과. 액량측정장치, 유량계, 유가열기
- 1) 조립단면도
 - 2) 주요 요목, 주요 부품의 재료에 관한 자료
- 하. 관 및 밸브류
- 1) 구조를 나타내는 도면
 - 2) 주요 요목, 주요 부품의 재료, 사용유체 · 압력 · 온도에 대한 강도계산에 관한 자료
- 거. 원격제어장치
- 1) 원격제어 및 안전장치계통도
 - 2) 제어반의 조립단면도 및 결선도
- 너. 유압조타장치
- 1) 기기배치도 및 전체조립도
 - 2) 조정 및 안전장치계통도
 - 3) 제관장치목록표
 - 4) 조타장치의 주요 요목, 취급설명서, 주요 부품의 재료 및 강도계산에 관한 자료
- 더. 구멍정 · 구조정 · 구멍뗏목의 데빃
- 1) 전체구조도(주요재료 내용을 포함한다)
 - 2) 하중에 대한 강력계산서
- 러. 원치
- 1) 기기배치도 및 전체조립도
 - 2) 조정 및 안전장치계통도
 - 3) 제관장치도(관의 재질, 치수 및 사용압력 등을 적어 넣은 것을 말한다)
 - 4) 하중에 대한 강력계산서
 - 5) 원치의 주요 요목, 취급설명 및 주요 부품의 재료의 사양
- 머. 구멍정 또는 구조정
- 1) 선체선도
 - 2) 재료배치도
- 버. 발전기 또는 전동기
- 1) 전체조립도
 - 2) 내부접속도
 - 3) 회전축상세도
 - 4) 발전기 또는 전동기의 주요 요목, 특성 및 축재료의 사양

서. 변압기

- 1) 전체조립도
- 2) 내부접속도
- 3) 변압기의 주요 요목 및 특성자료

어. 배전반 또는 제어기

- 1) 전체조립도
- 2) 내부접속도
- 3) 배전반 또는 제어기의 주요 요목 및 특성자료

저. 냉동장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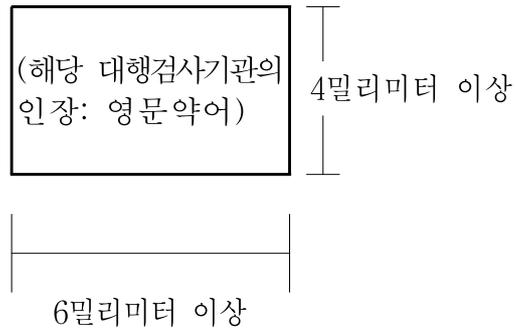
- 1) 제어 및 안전장치계통도
- 2) 냉매압축기의 조립단면도 및 크랭크축 상세도
- 3) 냉동기의 주요 요목, 주요 부품의 재료 및 강도계산에 관한 자료

처. 그 밖의 설비

- 1) 설비의 구조를 나타내는 도면
- 2) 설비의 주요 요목, 재료 및 강도가 요구되는 것은 강도계산에 관한 자료

[별표 7]

도면승인 표시 및 건조검사, 예비검사, 검정, 건조(제조·정비) 확인의
합격표시(제54조제2항 및 제65조 관련)



[별표 8]

정기검사 준비사항(제55조제1항제1호 관련)

1. 선체에 관한 준비

가. 입거(入渠) 또는 상가(上架)를 할 것.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배의 길이 24미터 미만의 비금속재(목재 및 강화플라스틱) 어선 및 알루미늄선과 배의 길이 12미터 미만인 강선을 거선한 경우
- 2) 입거 또는 상가의 시설이 없는 호수·하천·항내에서만 조업하는 배의 길이 24미터 미만인 어선의 선저를 검사할 수 있도록 수면 밖으로 끌어올린 경우

나. 타를 들어 올리거나 빼낼 것

다. 선체에 붙어있는 해초·조개류 등을 깨끗이 떼어낼 것

라. 목선의 선체 외관에 덧붙인 선체보호용 포판의 일부를 떼어낼 것

마. 선체 내부에 있는 화물 및 고행밸러스트를 떼어낼 것

바. 선체 내부의 선체에 고착되지 아니하는 물품을 정리할 것

사. 탱크의 맨홀을 열어 놓고 내용물 및 위험성가스를 배출할 것

아. 화물구획의 내장판의 일부를 떼어낼 것

자. 갑판피복 및 선저 시멘트의 일부를 떼어낼 것

차. 강제선체 주요부의 녹을 떨어내고 두께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할 것

카. 선체 내외부의 적당한 장소에 안전한 발판을 설치할 것

타. 재료시험의 준비를 할 것(처음으로 검사를 받는 경우로 한정한다)

파. 비파괴검사의 준비를 할 것(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배의 길이 24미터 미만의 어선에 대하여는 생략할 수 있다. 이하 제2호아목의 비파괴검사의 준비에 관하여 같다)

하. 압력시험 및 하중시험의 준비를 할 것

거. 수밀문·방화문 등 폐쇄장치 효력시험의 준비를 할 것

2. 기관에 관한 준비

가. 주기관

1) 내연기관

가) 실린더커버를 떼어내고 피스톤 및 실린더라이너를 들어낼 것

나) 실린더커버·피스톤 및 실린더의 냉각부를 검사할 수 있도록 분해할 것

다) 크랭크암의 개폐량을 잴 수 있도록 할 것. 다만, 고속기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크랭크축의 베어링의 상반(上盤)과 크로스헤드핀 및 크랭크핀의 베어링을

떼어낸 후 크랭크축을 회전할 수 있도록 하고, 크랭크축과 크랭크암과의 접합부를 검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크랭크축을 들어올려 놓을 것

마) 배기터빈과급기 및 소기장치의 내부를 검사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작동 부분을 들어낼 것

바) 작동에 직접 관계있는 중요한 밸브를 분해할 것

나. 프로펠러축계

1) 프로펠러를 빼내고 프로펠러축을 뽑아낼 것

2) 각 베어링의 상반 또는 커버 및 스러스트패드를 빼내고 각 축을 회전할 수 있도록 할 것

3) 선미관 후단의 경우 축과 지면재의 틈을 짚 수 있도록 할 것

4) 가변 피치프로펠러의 프로펠러 내부의 변절기구 또는 회전 부분을 검사할 수 있도록 분해하고 각 날개를 떼어낼 것

5) 가변 피치프로펠러에 부착된 조정밸브 및 변절유뿔프를 검사할 수 있도록 분해할 것

6) 동력전달장치를 분해할 것

다. 보일러 및 압력용기

1) 보일러의 내부 및 화염이 닿는 부분과 압력용기의 내부를 청소한 후 맨홀, 청소구멍 및 검사구멍의 커버를 떼어내고, 부착된 중요한 밸브 및 콕을 분해할 것

2) 보일러의 스모크박스도어를 열어 놓을 것

3) 보온재 등 보일러의 바깥 부분을 떼어내고 판 및 관의 두께를 짚 수 있도록 할 것

라. 보조기관

1) 발전기 또는 어선의 추진에 관계있는 보기(補機)를 구동하는 보조기관은 가목의 준비를 할 것

2) 1) 외의 보조기관으로서 어선의 항해에 관계있는 보기를 구동하는 보조기관은 실린더커버, 크랭크축베어링의 상반, 크랭크핀베어링, 그 밖의 주요한 베어링을 떼어낼 것

마. 보기 및 관장치

1) 보기의 내부를 검사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작동 부분을 빼낼 것

2) 연료유탱크, 여과기, 밸브, 콕, 그 밖의 관장치의 내부를 검사할 수 있도록 개방할 것

바. 비품은 적당한 장소에 진열할 것

사. 재료시험, 용접시공시험, 평형시험, 축기시험 및 육상 시운전의 준비를 할 것(처음으로 검사를 받는 경우로 한정한다)

- 아. 비파괴검사의 준비를 할 것
- 자. 압력시험, 효력시험 및 도기시험의 준비를 할 것
- 3. 배수설비에 관한 준비
 - 가. 펌프의 플런저, 피스톤, 임펠러, 그 밖의 작동 부분을 빼내고, 밸브케이싱을 분해할 것
 - 나. 최고 항해흘수선 이하에서 선외로 통하는 밸브 및 콕을 분해할 것
 - 다. 로즈박스 및 머드박스를 분해할 것
 - 라. 압력시험의 준비를 할 것(처음으로 검사를 받는 경우로 한정한다)
 - 마. 효력시험의 준비를 할 것
- 4. 조타, 계선 및 양묘설비에 관한 준비
 - 가. 닻, 닻쇠사슬 또는 로프와 계선용 로프를 적당한 장소에 진열할 것
 - 나. 재료시험 및 압력시험의 준비를 할 것(처음으로 검사를 받는 경우로 한정한다)
 - 다. 효력시험의 준비를 할 것
- 5. 전기설비에 관한 준비
 - 가. 재료시험, 방수시험, 방폭시험 및 완성시험의 준비를 할 것(처음으로 검사를 받는 경우로 한정한다)
 - 나. 절연저항시험 및 효력시험의 준비를 할 것
- 6. 어로·하역이나 그 밖의 작업설비에 관한 준비
 - 가. 윈치 내부의 주요 부분을 검사할 수 있도록 분해할 것
 - 나. 하역장치의 하중시험의 준비를 할 것(처음으로 검사를 받는 경우로 한정한다)
 - 다. 재료시험 및 압력시험의 준비를 할 것(처음으로 검사를 받는 경우로 한정한다)
 - 라. 효력시험의 준비를 할 것
- 7. 구멍 및 소방설비에 관한 준비
 - 가. 떼어내어 검사하여야 하는 것은 떼어내어 적당한 장소에 진열할 것
 - 나. 재료시험 및 압력시험의 준비를 할 것(처음으로 검사를 받는 경우로 한정한다)
 - 다. 효력시험 또는 현상검사의 준비를 할 것
- 8. 거주 및 위생설비에 관한 준비
 - 효력시험 또는 현상검사의 준비를 할 것
- 9. 승강설비에 관한 준비
 - 가. 호이스트(卷上機) 내부의 주요 부분을 검사할 수 있도록 분해할 것
 - 나. 재료시험 및 하중시험의 준비를 할 것(처음으로 검사를 받는 경우로 한정한다)
 - 다. 효력시험의 준비를 할 것
- 10. 냉동·냉장 및 수산물처리가공설비에 관한 준비
 - 효력시험 또는 현상검사의 준비를 할 것
- 11. 항해설비에 관한 준비

- 가. 떼어내어 검사하여야 하는 것은 떼어내어 적당한 장소에 진열할 것
- 나. 효력시험의 준비를 할 것
- 12. 만재흡수선에 관한 준비
현상검사의 준비를 할 것
- 13. 해상 시운전의 준비
- 14. 총톤수 2톤 미만 어선에 대하여는 제2호자목(효력시험에 해당한다), 제3호마
목, 제4호다목, 제7호다목 및 제11호나목 외의 검사준비를 면제한다.

[별표 9]

중간검사 준비사항(제55조제1항제2호 관련)

1. 제1종 중간검사

가. 선체에 관한 준비

별표 8 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 카목(선체 외부로 한정한다), 거목의 준비를 할 것

나. 기관에 관한 준비

1) 주기관

가) 내연기관

(1) 실린더커버를 떼어낼 것

(2) 크랭크암의 개폐량을 쥘 수 있도록 할 것. 다만, 고속기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크랭크축의 베어링의 상반 및 크랭크핀베어링을 떼어낸 후 크랭크축을 회전할 수 있도록 하고, 크랭크축과 크랭크암과의 접합부를 검사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크랭크축을 들어올려 놓을 것

(4) 배기터빈 과급기 및 소기장치의 내부를 검사할 수 있도록 개방할 것

2) 프로펠러축계

가) 프로펠러를 빼내고 프로펠러축을 뽑아낼 것

나) 각 축 베어링의 상반 또는 커버 및 스러스트베어링을 떼어내고 각 축을 회전할 수 있도록 할 것

다) 선미관 후단에 있어서 축과 지면재와의 틈을 쥘 수 있도록 할 것

라) 가변 피치프로펠러의 프로펠러 내부의 변절기구 또는 회전 부분을 검사할 수 있도록 분해하고, 날개를 한 장 떼어낼 것

마) 동력전달장치를 분해할 것

3) 보일러

가) 보일러의 내부 및 화염이 닿는 부분과 압력용기의 내부를 청소한 후 맨홀, 청소구멍 및 검사구멍의 커버를 떼어내고, 부속된 중요한 밸브 및 콕을 분해할 것

나) 보일러의 스모크박스도어를 열어 놓을 것

다) 보온재 등 보일러 바깥 부분의 일부를 떼어내고, 판과 판의 두께를 쥘 수 있도록 할 것

4) 발전기 또는 어선의 추진에 관계있는 보기를 구동하는 보조기관은 1)의 준비를 할 것

5) 보기 및 관장치

- 가) 보기의 내부를 검사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작동 부분을 빼낼 것
- 나) 연료유탱크, 여과기, 밸브, 콕, 그 밖의 관장치의 내부를 검사할 수 있도록 개방할 것

- 6) 비품은 적당한 장소에 진열할 것
- 7) 효력시험 및 도기시험의 준비를 할 것

다. 배수설비에 관한 준비

별표 8 제3호의 준비를 할 것

라. 조타, 계선 및 양묘설비에 관한 준비

닻, 닻 쇠사슬 또는 로프와 계선용 로프를 적당한 장소에 진열할 것

마. 전기설비에 관한 준비

절연저항시험 및 효력시험의 준비를 할 것

바. 구멍 및 소방설비에 관한 준비

- 1) 떼어내어 검사하여야 하는 것은 떼어내어 적당한 장소에 진열할 것
- 2) 효력시험 또는 현상검사의 준비를 할 것

사. 거주 및 위생설비에 관한 준비

효력시험 또는 현상검사의 준비를 할 것

아. 냉동, 냉장 및 수산물처리가공설비에 관한 준비

효력시험 또는 현상검사의 준비를 할 것

자. 항해설비에 관한 준비

떼어내어 검사하여야 하는 것은 떼어내어 적당한 장소에 진열할 것

차. 만재흡수선에 관한 준비

현상검사의 준비를 할 것

2. 제2종 중간검사

가. 수밀문·방화문 등 폐쇄장치에 대한 효력시험의 준비를 할 것

- 나. 기관, 배수설비, 조타설비, 구멍 및 소방설비, 거주 및 위생설비, 항해설비는 효력시험 또는 현상검사의 준비를 할 것

[별표 10]

임시항행검사 준비사항(제55조제1항제5호 관련)

1. 선체에 관한 준비
 - 가. 만재흡수선의 표시를 검사할 수 있도록 안전한 발판을 설치할 것(해당 어선에 한정한다)
 - 나. 수밀문·방화문 등 폐쇄장치에 대한 효력시험의 준비를 할 것
2. 기관에 관한 준비
효력시험 또는 현상검사의 준비를 할 것
3. 구멍 및 소방설비에 관한 준비
효력시험 또는 현상검사의 준비를 할 것
4. 거주 및 위생설비에 관한 준비
효력시험 또는 현상검사의 준비를 할 것
5. 항해설비에 관한 준비
효력시험의 준비를 할 것
6. 해상 시운전의 준비
7. 총톤수 2톤 미만 어선에 대하여는 제2호(효력시험만 해당한다), 제3호 및 제5호 외의 검사준비를 면제한다.

[별표 11]

건조검사 준비사항(제55조제1항제6호 관련)

1. 선체에 관한 준비

가. 선체 내외부의 적당한 장소에 안전한 발판을 설치할 것

나. 재료시험, 비파괴검사(비금속재 어선과 배의 길이 24미터 미만의 강선을 제외한다), 압력시험 및 하중시험의 준비를 할 것

2. 기관에 관한 준비

재료시험, 비파괴검사(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배의 길이 24미터 미만의 어선에 대하여는 생략할 수 있다), 용접시공시험, 평형시험, 압력시험, 효력시험, 축기시험, 도기시험 및 육상 시운전의 준비를 할 것

3. 배수설비에 관한 준비

재료시험, 압력시험 및 효력시험의 준비를 할 것

4. 조타·계선 및 양묘설비에 관한 준비

재료시험, 압력시험 및 효력시험의 준비를 할 것

5. 전기설비에 관한 준비

재료시험, 방수시험, 방폭시험, 완성시험, 절연저항시험 및 효력시험의 준비를 할 것

6. 만재흡수선의 검사에 관한 준비

가. 만재흡수선의 표시를 검사할 수 있도록 안전한 발판을 설치할 것

나. 수밀문·방화문 등의 폐쇄장치의 효력시험의 준비

7. 총톤수 2톤 미만 어선에 대하여는 제1호나목(재료시험 중 재료확인만 해당한다), 제3호(효력시험만 해당한다) 및 제4호(효력시험만 해당한다) 외의 검사준비를 면제한다.

[별표 12]

별도건조검사 준비사항(제55조제1항제7호 관련)

1. 선체에 관한 준비

가. 선체 내외부의 적당한 장소에 안전한 발판을 설치할 것

나. 비파괴검사(비금속재 어선과 배의 길이 24미터 미만의 강선을 제외한다), 압력시험 및 하중시험의 준비를 할 것

2. 기관에 관한 준비

비파괴검사(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배의 길이 24미터 미만의 어선에 대하여는 생략할 수 있다), 평형시험, 압력시험, 효력시험, 축기시험, 도기시험 및 육상 시운전의 준비를 할 것

3. 배수설비에 관한 준비

압력시험 및 효력시험의 준비를 할 것

4. 조타·계선 및 양묘설비에 관한 준비

압력시험 및 효력시험의 준비를 할 것

5. 전기설비에 관한 준비

완성시험, 절연저항시험 및 효력시험의 준비를 할 것

6. 만재흡수선의 검사에 관한 준비

가. 만재흡수선의 표시를 검사할 수 있도록 안전한 발판을 설치할 것

나. 수밀문·방화문 등의 폐쇄장치의 효력시험의 준비

7. 총톤수 2톤 미만 어선에 대하여는 제1호나목, 제3호(효력시험만 해당한다) 및 제4호(효력시험만 해당한다) 외의 검사준비를 면제한다.

[별표 13]

예비검사 준비사항(제55조제1항제8호 관련)

1. 선체에 설치할 어선용품에 관한 준비
재료시험, 압력시험, 비파괴검사 및 하중시험의 준비를 할 것.
2. 기관에 설치할 어선용품에 관한 준비
재료시험, 비파괴검사, 용접시공시험, 평형시험, 압력시험, 효력시험, 축기시험, 도기시험 및 육상 시운전의 준비를 할 것.
3. 배수설비, 조타·계선·양묘설비에 설치할 어선용품에 관한 준비
재료시험, 압력시험 및 효력시험의 준비를 할 것.
4. 전기설비에 설치할 어선용품에 관한 준비
재료시험, 방수시험, 방폭시험, 완성시험, 절연저항시험 및 효력시험의 준비를 할 것.
5. 어로·하역 그 밖의 작업설비에 설치할 어선용품에 관한 준비
재료시험, 비파괴검사, 하중시험, 압력시험 및 효력시험의 준비를 할 것.
6. 구멍·소방설비 및 거주설비에 설치할 어선용품에 관한 준비
재료시험, 압력시험 및 효력시험의 준비를 할 것.
7. 승강설비에 설치할 어선용품에 관한 준비
재료시험, 하중시험 및 효력시험의 준비를 할 것.
8. 냉동·냉장 및 수산물처리가공설비에 설치할 어선용품에 관한 준비
재료시험, 방수시험, 압력시험, 기밀시험, 진공시험 및 효력시험의 준비를 할 것.
9. 항해설비에 설치할 어선용품에 관한 준비
효력시험의 준비를 할 것.
10. 개조, 수리 또는 정비에 따른 예비검사를 받으려는 어선용품에 관한 준비
별표 8 정기검사 준비사항 중 해당 어선용품에 관한 검사준비를 할 것.
11. 예비검사 준비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은 다음에 따른다.
 - 가. 제52조제3항의 적용기준은 법 제3조에 따른 어선설비에 관한 기준을 적용한다.
 -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국산업규격(KS), 국제표준규격(ISO) 또는 협약을 적용할 수 있다.
 - 1) 법 제3조에 따른 어선설비로서 어선설비에 관한 기준 및 형식승인시험기준에 규정되지 아니한 경우
 - 2) 협약이 채택되어 시행될 예정인 경우
 - 3) 협약이 시행되었으나 국내기준에 수용되지 아니한 경우
 - 다. 예비검사 시 시험을 하는 항목에 대하여는 담당 검사원이 입회하여 실시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1)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기관·검사기관에서 시험하는 경우
- 2)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받은 시험·검사기관에서 시험하는 경우

[별표 14]

선체두께 측정범위 및 측정방법 등(제55조제2항 관련)

1. 두께측정의 범위

가. 선령 10년 이상 20년 미만의 어선

선수부, 기관구역 및 선체중양부 0.4L 간의 각각의 1단면에 대하여 선체 주요 부재의 판두께를 측정한다(“L”은 배의 길이를 말한다. 이하 같다).

나. 선령 20년 이상 30년 미만의 어선

선수부 및 기관구역의 1단면과 선체중양부 0.4L 간의 3단면에 대하여 선체 주요부재의 판두께를 측정한다.

다. 선령 30년 이상의 어선

위의 나목의 측정범위에 선미부 1단면을 추가하여 측정한다.

2. 두께측정방법

가. 두께측정 실시 전에 선박검사원, 어선소유자 및 두께측정업체가 참석한 회의를 개최하여 두께측정 준비사항, 두께측정의 범위, 두께측정 요원의 자격, 장비의 검교정 및 그 밖의 세부사항 등을 결정하여 다음 사항이 포함된 두께측정 회의록을 작성한다. 다만, 선박검사원이 두께를 측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1) 회의일정 및 참석자
- 2) 측정일정, 조건 및 범위
- 3) 쇄모한도
- 4) 선박검사원, 두께측정 요원 및 어선소유자와의 연락 체계
- 5) 두께측정업체가 제공하여야 할 서류
- 6) 특기사항 등

나. 두께측정은 각 단면당 10포인트 이상을 측정하여야 하며, 측정점의 수는 어선의 규모에 따라 적절히 증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선체중양부 0.4L 간의 측정범위에 기관구역 길이의 100분의 50 이상이 중첩될 경우 기관구역은 선체중양부 0.4L 간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다. 두께측정업체가 실시하는 경우 선박검사원은 두께측정의 전 과정에 대하여 통제 및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전 측정과정의 100분의 50 이상을 입회하여야 하며, 입회하지 않는 나머지 측정부위에 대하여는 최소한 100분의 30을 무작위로 확인하여 100분의 10 이상이 기록치와 다를 경우 전체 측정치에 대하여 확인한다.

3. 쇄모한도

선체 주요부재의 쇄모한도는 다음에 따른다. 다만, 쇄모한도를 초과한 경우로서

측정두께가 규정두께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재명칭	최모한도
가. 외판, 강력갑판, 강력갑판 및 현측 후판상의 중 통부재, 디프탱크의 격벽판, 내저판	원래 두께의 20퍼센트 + 1 밀리미터 이내
나. 이중저능판, 거더, 큰 골재의 웨브 및 면재	원래 두께의 25퍼센트 이내
다. 작은 골재의 웨브면재 및 브래킷, 수밀격벽판, 유호갑판, 창구덮개, 창구보	원래 두께의 30퍼센트 이내
라. 창내능골의 웨브 및 브래킷	원래 두께의 25퍼센트 또는 2.5밀리미터 중 큰 값 이내
비고 가. 작은 골재란 다른 보강재를 지지하지 아니하는 골재부재를 말한다. 나. 원래두께는 도면상의 두께를 말하며, 도면상의 두께와 본선의 두께가 다를 경우 본선의 두께를 말한다.	

4. 두께측정 결과의 조치 및 기록 등

- 가. 두께측정 결과가 제3호에 따른 선체 주요부재의 최모한도를 초과하거나 과도한 부식이 발견된 부분에 대하여는 신환 등 수리하여 최모한도 이내가 되도록 조치한다. 이 경우 “과도한 부식”이란 과도한 부식이 있다고 의심되는 부위의 측정치와 의심되는 부위가 아닌 구역의 가장 큰 측정치를 비교하여 그 차이가 제3호에 따른 최모한도를 초과한 경우를 말한다.
- 나. 두께측정 업체가 측정 한 결과는 측정자 및 담당 선박검사원이 서명한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별표 15]

수중검사준비와 그 검사방법 등(제56조제5항 관련)

1. 수중검사준비

가. 어선은 가능한 한 경하(輕荷)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나. 검사장소는 조류가 약하고 파고가 낮으며 수면 밑의 시계가 양호한 장소로서 잠수부가 수중검사를 원활하게 수행하기에 충분한 수심을 유지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다. 선박검사원은 다음의 도면을 준비하여 어선소유자와 수중검사에 대한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1) 일반배치도

2) 외관전개도(강선 및 알루미늄선으로 한정한다)

2. 수중검사방법

가. 수중검사는 다음 부위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1) 만재흡수선하의 선체외판

2) 시체스트, 개구, 선미재 및 빌지킬

3) 프로펠러축 스트럿, 타 및 부착품

4) 프로펠러 및 로프가드

5) 스러스터

6) 선미관 베어링 틈새(해수유회) 및 타의 베어링 틈새

나. 선박검사원은 수중검사 전에 검사준비 사항, 사용장비의 작동상태, 각종 측정장비의 검정·교정 상태 및 잠수부의 자격 적합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 선박검사원은 본선에 대한 상황을 사전에 청취하고 잠수부가 잠수하기 전에 확인하여야 할 사항 및 측정사항 등 필요한 검사사항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라. 잠수부는 선박검사원 입회하에 수중검사를 하여야 하며, 어선소유자는 해당 수중검사에 참여하여야 한다.

마. 잠수부는 수중검사 시 선박검사원과 서로 통신을 할 수 있는 통신수단을 갖추어야 한다.

바. 선박검사원은 수중사진 촬영, 수중비디오 촬영 또는 모니터 등에 따라 검사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사. 잠수부는 수중검사가 끝나면 다음 사항이 포함된 수중검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어선소유자와 선박검사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선박검사원은 검사결과를 어선소유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1) 일반사항

- 가) 어선 요목
 - 나) 검사 일정
 - 2) 어선 상태
 - 3) 해상 상태
 - 4) 수중검사업체 및 수중검사자
 - 5) 수중검사장비 명칭
 - 6) 검사 내용
 - 7) 검사 결과
3. 수중검사를 수행하는 요원의 자격은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잠수기능사자격을 받은 자로써 수중검사를 수행하는 보조원으로 1년 이상의 경력(최소 10회 이상의 수중검사를 수행한 것을 말한다)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별표 16]

검사준비 및 서류제출의 완화 등(제56조제6항 관련)

1. 검사준비사항 중 프로펠러축계의 발출검사준비의 조정은 다음에 따른다.
 - 가. 제1종 축: 전회의 발출검사 완료일부터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전회의 탐상시험방법이 자분탐상시험 또는 초음파탐상시험에 따른 방법으로 집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회의 발출검사 완료일부터 3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 나. 제2종 축: 전회의 발출검사 완료일부터 36개월(총톤수 10톤 미만 어선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탐상시험방법은 자분탐상시험 또는 초음파탐상시험에 따른 방법에 따른다.
 - 다. 직경 100밀리미터 미만의 제2종 프로펠러축계와 스테인리스강 또는 이와 동등한 비자성체재료의 프로펠러축계에 대하여는 제1호와 제2호에도 불구하고 액체탐상시험으로 할 수 있다.
 - 라. 총톤수 5톤 미만 어선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8 정기검사준비사항 중 제1호나목 및 제2호나목의 검사준비를 생략할 수 있다.
 - 1) 타는 타베어링부의 각 베어링에 대한 마모한도 이내의 경우 생략할 수 있으며, 각 베어링 마모한도는 다음과 같다. 이 경우 “D”는 타두재 지름을 말한다.
 - 가) 핀틀지름 50밀리미터 이하: 3밀리미터 이내
 - 나) 핀틀지름 50밀리미터 초과 100밀리미터 미만: 5밀리미터 이내
 - 다) 핀틀지름 100밀리미터 이상: $0.01D+4$ 밀리미터 이내
 - 라) 넥베어링: $0.01D+2$ 밀리미터 이내
 - 2) 프로펠러축계는 선미관 후부 또는 스트럿베어링 내면 상부와 축과의 틈새가 베어링 틈새 한도 이내의 경우 생략할 수 있으며, 각 베어링 틈새한도는 다음과 같다.
 - 가) 프로펠러축의 지름 230밀리미터 이하: 6밀리미터 이내
 - 나) 프로펠러축의 지름 230밀리미터 초과 305밀리미터 이하: 8밀리미터 이내
 - 다) 프로펠러축의 지름 305밀리미터 초과: 9.5밀리미터 초과 이내
2. 검사준비사항 중 기관개방검사와 관련한 별표 8 정기검사준비사항에 대하여 연차적으로 검사하여 5년 주기 내에 완료되도록 하는 검사(이하 “기관계속검사”라 한다)의 방법을 어선소유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표 8 정기검사준비사항 및 별표 9 중간검사준비사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기관계속검사 방법으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 가. 기관계속검사(CMS: Continuous Machinery Survey) 방법
 - 1) 일반사항

기관계속검사 방법은 어선에 설치된 기관에 대하여 적용하며, 반드시 정기적검사 시에 시행할 필요는 없고 어선소유자가 검사준비한 때에 수시로 임시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검사시기를 초과한 항목에 대한 검사는 차기 정기적검사 시기를 초과할 수 없다.

가) 검사의 신청

기관계속검사 방법을 적용받으려는 어선소유자는 기관계속검사 수검계획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기관계속검사 수검목록

기관계속검사를 처음으로 시행하는 경우 선박검사원은 어선소유자가 제출한 기관계속검사 수검계획서를 참조하여 기관계속검사 수검목록을 작성하고, 이후 기관계속검사를 시행한 경우 해당 항목란을 수정하여 어선소유자에게 송부한다. 어선소유자는 최근의 기관계속검사 수검목록을 본선에 보관하고 선박검사원이 요구하는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 수검계획서

(1) 어선소유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 수검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가) 원칙적으로 기관계속검사 대상 전 항목이 포함되어야 함

(나) 검사의 개시 시기는 최초 정기검사 또는 정기검사의 다음 검사로 하고 다음 회의 정기검사 시기에 완료되도록 함

(다) 매년 검사하는 항목 수는 거의 균등하게 할 것

(2) 위 (1)에 정한 수검계획서는 본선의 기관보수정비계획서를 이용할 수 있다. 또 이 수검계획서는 시행과정에서 보수정비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할 수 있다.

2) 기관계속검사 적용대상 기관 및 검사요령

가) 기관계속검사 적용대상 기관은 다음 표와 같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관계속검사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며, 해당 정기적검사 시에 수행하여야 한다.

- (1) 주기관의 크랭크 개폐량의 측정 및 거치볼트의 점검
- (2) 증기관장치
- (3) 각종 안전장치의 효력 및 성능시험
- (4) 예비품
- (5) 기관구역무인화선의 효력시험

검사 항목	세부 사항
(가) 주기 디젤기관	실린더커버, 실린더라이너, 피스톤(피스톤핀 및 피스톤로드를

	포함한다), 크로스헤드 (핀, 베어링 및 가이드를 포함한다), 연접봉, 크랭크 축 및 베어링, 캠축 및 구동장치, 과급기, 소기 펌프 또는 블로어, 공기냉각기, 부속 중요 펌프(윤활유, 연료유, 냉각수)
(나) 주기 증기터빈	터빈 로터, 블레이드, 베어링, 케이싱, 노즐, 노즐밸브, 조종밸브
(다) 보조기관	발전기(비상용은 제외한다) 및 중요보기(어선의 추진, 인명 과 어선의 안전 및 어선의 용도에 관계가 있는 보기)를 구동하는 보조기관을 주기에 준하여 검사

나) 기관계속검사 적용대상 기관의 검사방법

- (1) 중요 보기가 2대 이상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같은 간격으로 교대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특히 발전기 구동 내연기관 및 밀지펌프 등은 가능한 한 정기 및 중간검사 시에 시행하도록 한다.
- (2) 각 기관별 검사간격은 5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 (3) 검사한 개소에 결함이 발견되었을 때는 상세한 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다) 기관장이 점검한 기관에 대한 확인검사

기관의 보수 및 유지상태가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어선의 경우 선내 보수 작업으로 항해 중에 개방하여 기관장이 점검한 기관에 대하여는 다음 조건에 만족하는 경우 기관계속검사를 위한 개방검사로 대신할 수 있다. 또한, 입항 중에 개방한 기관에 대하여도 그 항구에서 선박검사원에 의한 검사가 대단히 곤란한 경우에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취급할 수 있다.

(1) 기관장의 자격

기관장은 등록국 또는 선적국의 최상급 면허를 소지하고 있거나 기관장으로서 3년 이상 승선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같은 형태의 추진기관(주 내연기관 또는 주 터빈을 말한다)을 갖는 어선에 적어도 1년 이상 승선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2) 확인검사

기관장에 의하여 점검된 기관은 원칙적으로 점검일부터 5개월 이내에 선박검사원에 의하여 다음의 방법으로 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

(가) 작동상태에서 기관을 검사한다.

(나) 기관 Log book의 관련 기재사항 또는 정비기록(인정 가능한 전산 기록 등을 말한다)을 조사하고 점검을 시행한 기관장의 의견을 청취한다.

(다) 기관장은 점검시기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포함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선박검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기관장의 서명 및 면허장번호

② 점검 연월일 및 장소

③ 점검 항목 및 결과

(라) 선박검사원이 기관장보고서 및 기관의 현상을 조사한 결과 개방하여 검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대하여 개방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3) 기관장 점검의 대상기관

기관장 점검의 대상기관 및 대상제외 기관은 다음 표에 따른다. 다만, 기관장 점검 대상기관 중 주 내연기관의 각 부품 및 주 발전기 구동용 내연기관에 대하여는 기관계속검사 2순회 중 적어도 1순회 이상은 선박검사원에 따른 개방검사가 수행되어야 한다.

기관장 점검 대상기관	기관장 점검 대상 제외 기관
(1) 주 내연기관(다만, 우측란 1항 항목은 제외한다)	(1) 주 내연기관의 크랭크축 및 베어링, 크랭크핀 볼트 및 캠축 구동장치
(2) 보조 내연기관(다만, 비고란에 제시하는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2) 증기터빈(주, 보조)
<p>※ 비고: 보조 내연기관의 기관장 점검은 다음에 따른다.</p> <p>(1) 기관을 개방하고 모든 실린더, 실린더라이너, 실린더커버, 부속밸브, 피스톤, 피스톤링, 연접봉과 상하베어링, 피스톤핀, 캠축 구동장치, 과급기, 공기냉각기, 크랭크케이스와 도어, 기관거치 볼트, 크랭크케이스 과압 방지장치에 대하여 검사되어 있을 것</p> <p>(2) 모든 메인베어링의 상반부를 개방하고 하반부 메탈은 1, 2개를 들어내어 검사되어 있을 것</p> <p>(3) 크랭크 핀 및 저널의 균열 유무가 검사되어 있을 것. 특히 필릿부와 유공, 오일 그루브의 부근을 주의하고 필요하면 액체침투탐상법에 따른 점검을 시행할 것</p> <p>(4) 크랭크 암의 개폐량을 측정하고 기록되어 있을 것</p> <p>(5) 실린더라이너는 마모량을 측정하고 기록되어 있을 것</p> <p>(6) 부속의 윤활유 냉각기, 기관부착의 윤활유 펌프나 냉각수 펌프 등이 개방 점검되어 있을 것</p> <p>(7) 안전장치의 작동이 양호하다고 확인되어 있을 것</p> <p>(8) 크랭크 핀볼트의 사용시간이 기록되어 있을 것</p>	

라) 기관계속검사 방법의 취소

어선소유자가 기관계속검사 방법의 취소를 요청한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취급하며, 기관계속검사가 이 방법대로 시행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기관계속검사 방법의 적용을 취소할 수 있다.

(1) 다음 정기검사 이전에 그 검사 간격이 5년을 초과하는 기관계속검사

대상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지난번 검사일부터 5년째의 시점 또는 그 이전에 그 기관들의 검사를 시행한다.

(2) 다음 정기검사를 할 때에는 정기검사에서 요구되는 모든 항목의 검사를 시행한다.

3) 기관계속검사 시 기관의 일련번호 부여방법

동일 기관이 2대 이상 비치된 경우의 일련번호 부여방법은 다음에 따른다.

가) 현존선의 경우 원칙적으로 각 기관의 명패(Name Plate) 번호 또는 본선에서 사용하는 번호와 통일시킨다.

나) 본선의 기관번호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신조선에서 아직도 기관의 번호배열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아래와 같은 순서로 배열하도록 어선소유자 또는 조선소에 권유하여 이 부여 방법과 일치하도록 한다.

(1) 우현에서 좌현으로

(2) 선수에서 선미로

(3) 위에서 아래로

나. 최초의 정기검사 시의 기관계속검사 방법 적용

1) 기관계속검사는 원칙적으로 최초 정기검사 완료 후 다음 검사 시부터 시작하여 다음 회의 정기검사에서 완료하도록 되어있으나 어선소유자의 요청이 있고 또한 선박검사원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최초 정기검사 시부터 기관계속검사를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정부 등에서 실시한 검사사항을 고려하여 다음 검사 시에 문제가 생기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 시행하고 검사보고서에는 기관계속검사 적용어선임을 반드시 명기한다. 만일 다음 검사 시에 반드시 검사를 시행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면 지적사항란에 기입한다.

2) 현존선으로서 새로 기관계속검사 방법을 적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령에 따른다.

가) 정기검사 후 첫번째의 중간검사 또는 그 이전의 임시검사 시기부터 기관계속검사로 전환하는 경우는 즉시 정규순환으로 바꿀 수 있다.

나) 정기검사 후 첫 번째의 중간검사와 두 번째 중간검사 사이에 전환하는 경우는 위 가)와 같이 취급한다.

다) 정기검사 후 두 번째의 중간검사 시기부터 제1종 중간검사 시기로 전환하는 경우는 다음 회의 정기검사까지에 모두 마친 후에 즉시 전환할 수 있다. 다만, 정기검사 후 제1종 중간검사 또는 그 이후에는 전환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검사 준비사항 중 그 일부를 면제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가. 최초의 정기검사를 할 때에 차용·도입·검사기관 변경·등록기관 변경한

어선과 재등록 어선에 대하여는 별표 8 정기검사 준비사항 중 제1호타목·제2호사목·제4호나목·제5호나목·제7호다목·제8호·제9호나목 및 제10호의 검사준비를 생략한다.

나. 제43조제2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할 때에 제50조의 건조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어선에 대하여는 별표 8 정기검사준비사항 중 제1호과목과 하목의 압력시험의 검사준비를 면제한다.

다. 제43조제2항에 따른 정기검사에 있어서 총톤수 5톤 미만의 어선에 대하여는 어선소유자부터 입거, 상가 또는 거선시기의 연기신청이 있고 선체 내부상태 및 주기관·축계·보조기관 등의 작동상태를 검사한 결과 양호한 경우 별표 8 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 자목부터 카목(선체외부로 한정한다)까지, 제2호나목, 제3호나목 및 다목의 검사준비를 6개월까지 유예할 수 있다.

라. 총톤수 5톤 미만의 어선에 대하여는 선체 내부상태 및 주기관·축계·보조기관 등의 작동상태를 검사한 결과 양호한 경우 별표 9 중간검사준비사항 중 제1호가목(별표 8 제1호거목은 제외한다), 나목 1) 및 2), 다목(별표 8 제3호라목 및 마목은 제외한다) 및 라목의 검사준비를 생략할 수 있다.

마. 전회의 개방검사 시 크랭크축 등을 자분탐상시험 또는 초음파탐상시험에 따른 방법으로 비파괴검사를 실시한 주기관(동력전달 장치를 포함한다) 또는 보조기관은 정비 및 작동상태를 검사한 결과 양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별표 8 정기검사 준비사항 중 제2호가목 또는 별표 9 제1종 중간검사 준비사항 중 제1호나목1)의 개방검사의 준비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에 대한 개방검사 준비의 면제는 개방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36개월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바. 기관을 들어내어 전부 개방하지 아니하고는 크랭크축 등의 검사를 시행하기 곤란한 특수한 구조(고속기관 등)의 주기관(동력전달 장치를 포함한다) 또는 보조기관에 대하여는 정비 및 작동상태의 검사와 운전시간 등을 고려한 결과 양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기관에 대한 개방검사 준비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에 대한 개방검사 준비의 면제는 별표 8 정기검사준비사항에 따라 개방검사를 받은 날부터 다음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총톤수 10톤 미만 어선: 10년

2) 총톤수 10톤 이상 어선: 8년

사. 검사에 불합격 처리된 어선을 6개월 이내에 재검사 신청한 경우 지난 번 검사(불합격 처리된 검사를 말한다) 시 합격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검사준비를 면제할 수 있다.

아. 예비검사를 받으려는 어선용품이 형식승인 대상품목으로서 검사신청 이전 최근 2년 동안 매년 2회 이상 형식승인시험기관의 환경시험에 합격한 경우에

는 해당 어선용품에 대한 환경시험의 준비를 면제한다.

자. 어선용품(법 제3조제8호·제9호 및 제11호를 제외한다) 예비검사를 할 때에 외국정부의 검사 등을 받은 것 또는 ISO9000시리즈의 인증을 받은 제조업체에서 생산된 부품은 재료시험 및 그 부품에 대한 검사 준비를 면제할 수 있다.

차. 개조, 수리 또는 정비에 따른 예비검사를 할 때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선용품 및 선박용물건에 대하여는 개방검사, 비파괴검사 및 효력시험 외의 검사준비를 면제한다.

1) 다른 어선 또는 선박에 사용되었던 어선용품 및 선박용물건

2) 어선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던 것을 어선용으로 구조변경하여 어선에 설치하려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선용품

가) 주기관을 제외한 것으로서 출력 220킬로와트(300PS) 미만인 내연기관

나) 연근해 어선에 설치하려는 것

카. 별표 8 정기검사 준비사항중 제2호가목, 별표 9 제1종 중간검사 준비사항중 제1호나목1) 및 차목에도 불구하고 총톤수 5톤 미만인 연안어선(「낚시어선업법」에 따라 낚시어선업을 겸용하는 어선은 제외한다)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선의 기관에 대하여는 연안(도서를 포함한다)으로부터 5마일 이내에서 어장관리 또는 구획어업에 종사하는 조건으로 효력시험 외의 검사준비를 면제할 수 있다.

1) 「수산업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어장관리선으로 지정받은 어선

2) 「수산업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어장관리선으로 승인받은 어선

3) 「수산업법」 제41조제3항제1호에 따른 구획어업에 사용하는 어선

타. 선내외기(신품으로 한정한다) 및 선외기의 예비검사를 할 때에 동력전달장치 및 축계장치는 해당 기관의 단일조립 완성품으로 간주하며, 외국정부의 검사를 받은 것 또는 ISO 9000시리즈의 인증 받은 제조업체에서 생산된 것에 대하여는 효력시험외의 검사준비를 면제할 수 있다.

4. 제출서류의 일부를 조정 또는 면제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가. 어선검사신청 시 제출하는 어선검사증서는 어선이 항행 중이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제출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검사 착수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나. 이미 승인받은 도면(건조 당시의 시설기준에 변경이 없는 것으로 한정한다)에 따라 동일업체에서 동일한 내용으로 어선용품(그 부품을 포함한다)을 제조하려는 경우 또는 한국산업규격(이하 “KS규격”이라 한다)에 따라 어선용품을 제조하려는 경우에는 제조사양서 및 별표 6 제4호 서류제출을 면제한다. 이 경우 예비검사신청서 비고란에 승인받은 도면의 내역 또는 KS규격번호를 기재토록 한다.

다. 어선용품의 수리(기존 설비 중 그 부품을 신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정비에 따른 예비검사를 받으려는 어선용품에 대하여는 제조사양서 및 별표 6 제4호 서류제출을 면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카탈로그 등 참고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별표 17]

우수사업장의 지정기준 등(제59조의4 관련)

1. 우수사업장 지정대상물건

가. 우수건조사업장의 경우

- 1) 소형 강화플라스틱제 어선의 선체(측정 길이가 24미터 미만인 어선의 선체에 한정한다)
- 2) 소형 알루미늄합금제 어선의 선체(측정 길이가 24미터 미만인 어선의 선체에 한정한다)

나. 우수제조사업장의 경우

- 1) 창구복포(覆布)
- 2) 내연기관(연속최대출력 600마력 미만인 것에 한정한다)
- 3) 팽창식 구멍뚫목
- 4) 구멍부환
- 5) 구멍조끼
- 6) 구멍출발사기(발사체 및 구멍줄을 포함한다)
- 7) 로켓낙하산신호
- 8) 신호홍염
- 9) 발연부신호
- 10) 자기발연신호
- 11) 자기점화등
- 12) 고압가스용기의 밸브
- 13) 소화펌프
- 14) 소화기
- 15) 소화제
- 16) 소화호스, 노즐 및 국제육상시설연결구
- 17) 탄산가스용기
- 18) 매니폴드
- 19) 제어밸브
- 20) 선등 또는 그 부품(전구·유리)
- 21) 음향신호장치(기적·호종 및 동라 등)
- 22) 국제협약 또는 기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법 제3조에 따라 어선의 설비 기준으로 정하는 설비나 그 부품

다. 우수정비사업장의 경우

- 1) 내연기관(연속최대출력 600마력 미만인 것에 한정한다)

- 2) 팽창식 구멍뚫목
- 3) 팽창식 구멍부기
- 4) 강하식 탑승장치
- 5) 소화기

라. 국제협약 또는 기타 농림수산물부 장관이 법 제3조에 따라 어선의 설비기준으로 정하는 설비나 그 부품

2. 우수건조사업장의 지정기준

가. 다음의 시설을 갖추는 것

- 1) 어선의 건조 또는 자체검사에 필요한 작업장
- 2) 건조에 필요한 재료, 부품의 보관시설 및 건조된 어선을 보관하기 위한 건조 전후의 일시보관 장소

나. 다음의 건조설비를 갖추는 것

1) 소형어선의 선체

가) 강화플라스틱제 선체

- (1) 현도(賢圖) 작업 설비
- (2) 형틀(Mould) 건조설비
- (3) 수지를 배합하기 위한 다음의 설비
 - (가) 조합대(調合臺)
 - (나) 교반기(攪拌機)
 - (다) 계량(計量)기구
 - (라) 냉장설비 등
- (4) 유리섬유를 재단하기 위한 설비
- (5) 적층(積層) 작업에 필요한 설비
- (6) 강화플라스틱제의 가공에 필요한 다음의 설비
 - (가) 절단기
 - (나) 절삭기
 - (다) 샌딩기 등
- (7) 그 밖에 강화플라스틱제 선체의 건조 설비

나) 알루미늄합금제 선체

- (1) 현도작업 설비
- (2) 알루미늄합금의 판재 및 관의 가공에 필요한 다음의 설비
 - (가) 표면처리에 필요한 설비
 - (나) 기계톱 그 밖에 절단기계
 - (다) 곡면 가공 기계

- (라) 선반 그 밖에 공작기계
- (마) 조립 및 진수설비
 - 용접기
 - 용접용 재료의 건조(乾燥)설비
 - 리벳이음 설비
 - 치구(治具) 그 밖에 조립에 필요한 보조기계 등
 - 진수대 그 밖에 진수작업에 필요한 설비
- (3) 그 밖에 알루미늄합금제 선체 건조설비

다. 다음의 시험 및 자체검사설비를 갖추는 것

1) 소형어선의 선체

가) 강화플라스틱제 선체

- (1) 재료시험에 필요한 다음의 설비
 - (가) 만능시험기, 충격시험기 및 경도계 그 밖에 기계적 시험에 필요한 설비
 - (나) 유리함유율 등의 측정에 필요한 설비
- (2) 비파괴검사에 필요한 설비
- (3) 선체강도시험에 필요한 다음의 설비
 - (가) 낙하시험에 필요한 설비
 - (나) 변형측정장치
- (4) 그 밖에 강화플라스틱제선체의 시험 및 검사에 필요한 설비

나) 알루미늄합금제 선체

- (1) 재료시험에 필요한 다음의 설비
 - (가) 만능시험기, 충격시험기 및 경도계 그 밖에 기계적 시험에 필요한 설비
 - (나) 금속조직의 검사에 필요한 설비
 - (다) 정량분석장치
- (2) 비파괴검사에 필요한 설비
- (3) 용접검사에 필요한 다음의 설비
 - (가) 표면 온도계
 - (나) 용접용 전류계
 - (다) 수분 측정장치
- (4) 그 밖에 알루미늄합금제 선체의 시험 및 검사에 필요한 설비

라. 다음의 인원을 갖추는 것

- 1) 자체검사자 1명 이상
- 2) 자체검사 업무의 감독을 위한 관리책임자로서 다음의 자격이 있는 자 1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의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나) 「선박직원법」 제4조에 따른 3급 이상의 해기사면허를 받고 해당 분야의 제조경력 또는 승선경력이 3년 이상인 자

다) 해당 분야의 건조경력 또는 자체검사경력이 5년 이상(신청일을 기준으로 하여 최근 5년 이내의 경력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인 자로서 자체검사의 책임자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라) 「선박안전법」 제76조에 따른 선박검사관 또는 같은 법 제77조에 따른 선박검사원으로서의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3) 건조에 종사하는 인력

마. 건조 작업을 담당하는 조직으로부터 독립된 자체검사 조직을 갖출 것

바. 자체검사설비의 교정검사에 관한 기준을 정한 규정이 있을 것

사. 다음의 법령 및 기록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규정이 있을 것

1) 어선의 건조 및 자체검사에 필요한 도면 및 관련 법령(국제협약을 포함한다)

2) 건조작업 및 자체검사에 관한 기록

3) 건조설비의 관리에 관한 기록(일상점검, 정기점검, 보수·유지의 방법, 계량관리 및 관리조직을 포함한다)

4) 배상청구 처리 및 제품의 품질보증

아. 어선의 설계 및 건조공정, 재료 및 부품, 자체검사 및 외주 등에 관한 관리 기준이 있을 것

자. 우수건조사업장으로 인정받으려는 어선에 대하여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아 계속하여 1년 이상 검정을 받은 실적이 있을 것. 다만, 같은 품목으로서 형식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우수제조사업장의 지정기준

가. 다음의 시설을 갖출 것

1) 어선용품의 제조 또는 자체검사에 필요한 작업장

2) 제조에 필요한 재료·부품의 보관시설 및 제조된 어선용품을 보관하기 위한 가공 전후의 일시보관 장소

나. 다음의 제조설비를 갖출 것

1) 창구복포

가) 제작준비에 필요한 설비

(1) 합사기(合絲機)

(2) 연사기(撚絲機)

(3) 정경기(整經機) 등

- 나) 직기(織機) 그 밖에 제직(製織) 설비
- 다) 그 밖에 창구복포의 제조에 필요한 설비
- 2) 내연기관(연속최대출력 600마력 미만인 것에 한정한다)
 - 가) 주조작업에 필요한 다음의 설비
 - (1) 목재의 건조설비
 - (2) 목공기계
 - (3) 주물모래 처리장치
 - (4) 조형(造型) 기계
 - (5) 주형(鑄型) 건조로
 - (6) 용선로(鎔銑爐) 그 밖에 용해로 등
 - 나) 가열작업에 필요한 다음의 설비
 - (1) 단조용 가열로
 - (2) 열처리로
 - (3) 침탄로(浸炭爐) 또는 질화로(窒化爐)
 - (4) 열박음에 필요한 설비 등
 - 다) 소성가공에 필요한 다음의 설비
 - (1) 단조기계
 - (2) 프레스머신
 - (3) 벤딩머신 등
 - 라) 절삭작업 및 용접작업에 필요한 다음의 설비
 - (1) 자동가스절단기
 - (2) 자동용접기 및 수동아크용접기
 - 마) 절삭가공에 필요한 다음의 설비
 - (1) 평삭반(平削盤) 및 밀링머신
 - (2) 형삭반(形削盤)
 - (3) 선반(旋盤)
 - (4) 드릴링머신
 - (5) 브로칭머신(Broaching machine)
 - (6) 호빙머신(Hobbing machine)
 - (7) 연삭반(研削盤) 등
 - 바) 세정작업 설비
 - 사) 그 밖에 내연기관의 제조에 필요한 설비
- 3) 팽창식 구멍뚫목
 - 가) 고무 콤파운드(compound)를 제조하는데 필요한 다음의 설비
 - (1) 고무절단기

- (2) 고무혼합설비
- (3) 예열용오븐
- (4) 스트레이너(Strainer) 등
- 나) 고무풀 제조 설비
- 다) 포지에 고무를 입히는데 필요한 다음의 설비
 - (1) 고무풀을 바르는 장치
 - (2) 캘린더롤러(Calendar roller)
- 라) 가황(加黃) 작업에 필요한 설비
- 마) 특수부분을 제조하는데 필요한 다음의 설비
 - (1) 금속부품 연마장치
 - (2) 금속부품 세정장치
 - (3) 금속부품 건조장치
 - (4) 접착제를 바르는 장치
 - (5) 고온 프레스
- 바) 별표 4 제1호의 시설
- 사) 그 밖에 팽창식 구멍뿔목의 제조에 필요한 설비
- 4) 구멍부환 및 구멍조끼
 - 가) 재봉설비
 - 나) 부력재 가공설비
 - 다) 팽창식 구멍조끼의 제조에 필요한 설비(팽창식 구멍뿔목의 제조에 필요한 설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5) 구멍출발사기, 로켓낙하산신호, 신호홍염, 발연부신호, 자기발연신호 및 자기점화 등
 - 가) 화약의 배합작업에 필요한 설비
 - 나) 화약의 성형(成型) 작업 또는 충전(充填) 작업에 필요한 설비
 - 다) 그 밖에 구멍출발사기, 로켓낙하산신호, 신호홍염, 발연부신호, 자기발연신호 또는 자기점화 등의 제조에 필요한 설비
- 6) 고압가스용기의 밸브
 - 가) 부품을 가공하는데 필요한 다음의 설비
 - (1) 초음파세척기
 - (2) 선반
 - (3) 드릴링머신
 - (4) 연마기(研磨機)
 - (5) 컴프레서
 - 나) 그 밖에 고압가스용기의 밸브의 제조에 필요한 설비

7) 소화펌프

가) 주조작업에 필요한 다음의 설비

- (1) 목공기계
- (2) 주물모래 처리장치
- (3) 주형(鑄型) 건조로
- (4) 용선로(鎔銑爐) 그 밖에 용해로

나) 절삭가공에 필요한 다음의 설비

- (1) 평삭반(平削盤)
- (2) 형삭반(形削盤)
- (3) 선반
- (4) 밀링머신
- (5) 드릴링머신
- (6) 연삭반
- (7) 호빙머신

다) 세정작업에 필요한 설비

라) 그 밖에 소화펌프의 제조에 필요한 설비

8) 소화기

가) 소화기의 몸체를 조립하는데 필요한 다음의 설비

- (1) 롤러머신
- (2) 자동용접기 및 수동아크용접기

나) 소화기의 부품을 가공하는데 필요한 다음의 설비

- (1) 평삭반
- (2) 형삭반
- (3) 밀링머신
- (4) 드릴링머신
- (5) 호빙머신
- (6) 쇠틀기계
- (7) 프레스머신
- (8) 호스프레스머신
- (9) 공기압축기

다) 그 밖에 소화기의 제조에 필요한 설비

9) 소화제

가) 표준(標準)채

나) 파쇄기

다) 믹싱설비

- 라) 제조설비
- 마) 그 밖에 소화제의 제조에 필요한 설비
- 10) 소화호스, 노즐 및 국제육상시설연결구
 - 가) 부품을 가공하는데 필요한 다음의 설비
 - (1) 선반
 - (2) 드릴링머신
 - (3) 소화호스와 연결구의 압착설비 등
 - 나) 그 밖에 소화호스, 노즐 및 국제육상시설연결구의 제조에 필요한 설비
- 11) 탄산가스용기
 - 가) 성형에 필요한 다음의 설비
 - (1) 쇠뚫기계
 - (2) 고주파가열로
 - (3) 저부 및 두부성형기
 - (4) 네크절단기
 - (5) 저부압착용 프레스
 - 나) 열처리에 필요한 다음의 설비
 - (1) 노멀라이징 설비
 - (2) 퀘칭 설비
 - (3) 템퍼링설비
 - 다) 나사를 가공하는데 필요한 다음의 설비
 - (1) 선반
 - (2) 드릴링머신
 - (3) 리밍머신
 - (4) 탭핑머신
 - 마) 표면처리에 필요한 다음의 설비
 - (1) 자동각인기계 및 레이저각인기계
 - (2) 내부쇼트머신
 - (3) 외부쇼트머신
 - (4) 분체도장설비
 - 바) 그 밖에 탄산가스용기의 제조에 필요한 설비
- 12) 매니폴드
 - 가) 절단작업에 필요한 다음의 설비
 - (1) 산소절단기
 - (2) 절단기
 - (3) 선반

- (4) 드릴링머신
- 나) 용접작업에 필요한 다음의 설비
 - (1) 수동아크용접기
 - (2) 탄산가스용접기
 - (3) 티그(TIG)용접기
 - (4) 용접용롤러
- 다) 조립작업에 필요한 다음의 설비
 - (1) 체크밸브 조립기계
 - (2) 탭핑머신
- 라) 그 밖에 매니폴드의 제조에 필요한 설비
- 13) 제어밸브
 - 가) 가공에 필요한 다음의 설비
 - (1) 선반
 - (2) 드릴링머신
 - (3) 밀링머신
 - (4) 그라인더
 - 나) 그 밖에 제어밸브의 제조에 필요한 설비
- 14) 선등 또는 그 부품(전구, 유리)
 - 가) 소성가공에 필요한 설비
 - 나) 절단작업에 필요한 설비
 - 다) 그 밖에 선등 또는 그 부품(전구, 유리)의 제조에 필요한 설비
- 15) 음향신호장치(기적, 호종, 동라 등)
 - 가) 주조작업에 필요한 다음의 설비
 - (1) 주형건조로
 - (2) 용해로
 - (3) 주물모래처리장치
 - 나) 절삭가공에 필요한 다음의 설비
 - (1) 선반
 - (2) 드릴링머신
 - 다) 세정작업에 필요한 설비
 - 라) 그 밖에 음향신호장치의 제조에 필요한 설비
- 16) 자장식 호흡구, 비상탈출용 호흡구
 - 가) 세척설비
 - (1) 진공건조기
 - (2) 초음파세척기

나) 절삭 및 가공에 필요한 다음의 설비

- (1) 선반
- (2) 탭핑머신
- (3) 밀링머신
- (4) 그라인더
- (5) 드릴링머신
- (6) 공기압축기
- (7) UV코팅기
- (8) 봉재틀
- (9) 에어프레스
- (10) 스웨이징(Swaging) 머신
- (11) 인쇄기

다) 그 밖에 자장식 호흡구 및 비상탈출용 호흡구의 제조에 필요한 설비
다. 다음의 시험 및 자체검사설비를 갖출 것

1) 창구복포

가) 연사의 연수검사에 필요한 설비

나) 포지의 외관검사에 필요한 설비

다) 포지의 물성검사에 필요한 다음의 설비

- (1) 인장시험기
- (2) 질량측정기
- (3) 항온항습조

라) 그 밖에 창구복포의 시험 및 검사에 필요한 설비

2) 내연기관(연속최대출력 600마력 미만인 것에 한정한다)

가) 재료시험에 필요한 다음의 설비

- (1) 만능시험기, 충격시험기 그 밖에 기계적 시험에 필요한 설비
- (2) 금속조직의 검사에 필요한 설비
- (3) 정량분석장치
- (4) 주물모래의 시험에 필요한 설비

나) 비파괴검사에 필요한 다음의 설비

- (1) X-선 검사설비
- (2) 자기탐상장치
- (3) 초음파탐상장치
- (4) 침투탐상장치

가) 압력시험에 필요한 다음의 설비

- (1) 수압시험에 필요한 설비

- (2) 유압시험에 필요한 설비
 - 다) 육상시운전을 위한 동력계, 진동계 그 밖에 측정에 필요한 설비
 - 라) 그 밖에 내연기관의 시험 및 검사에 필요한 설비
- 3) 팽창식 구멍뗃목
 - 가) 재료시험에 필요한 다음의 설비
 - (1) 점도계, 고무경도계, 인장시험기, 내한성시험기 및 열노화시험기 그 밖에 고무콤파운드의 검사에 필요한 설비
 - (2) 포지의 검사에 필요한 설비
 - (3) 박리시험기 그 밖에 고무폴의 검사에 필요한 설비
 - 나) 고무포의 검사에 필요한 다음의 설비
 - (1) 기밀시험기
 - (2) 내유시험기
 - (3) 수압시험기
 - (4) 열노화시험기
 - (5) 내후성시험기
 - (6) 내한성시험기
 - 다) 부품 및 부속품류의 검사에 필요한 다음의 설비
 - (1) 인장시험기
 - (2) 소금물 분무시험기
 - (3) 실린더 봉판의 기밀시험장치
 - 라) 누출시험에 필요한 다음의 설비
 - (1) 충전장치
 - (2) 압력계
 - (3) 기압계 및 온도계
 - 마) 높이 18미터 이상의 투하팽창시험설비
 - 바) 그 밖에 팽창식 구멍뗃목의 검사에 필요한 설비
- 4) 구멍부환 및 구멍조끼
 - 가) 재료시험에 필요한 다음의 설비
 - (1) 인장시험기
 - (2) 수조
 - 나) 성능시험에 필요한 다음의 설비
 - (1) 내화시험기
 - (2) 낙하시험수조
 - (3) 부력시험수조
 - 다) 저울

- 라) 그 밖에 구멍부환 또는 구멍조끼의 시험 및 검사 설비
- 5) 구멍출발사기, 로켓낙하산신포, 신포홍염, 발연부신포, 자기발연신포 및 자기점화등
 - 가) 재료시험에 필요한 다음의 설비
 - (1) 정량분석장치
 - (2) 정성분석장치
 - 나) 효력시험 설비
 - 다) 내식시험 설비
 - 마) 그 밖에 구멍출발사기, 로켓낙하산신포, 신포홍염, 발연부신포, 자기발연신포 또는 자기점화등의 시험 및 검사 설비
- 6) 고압가스용기의 밸브
 - 가) 내압시험 설비
 - 나) 기밀시험 설비
 - 다) 안전장치(동판 등)의 작동시험 설비
 - 라) 그 밖에 고압가스용기의 밸브 검사설비
- 7) 소화기
 - 가) 수압시험 설비
 - 나) 효력시험 설비
 - 다) 그 밖에 소화기의 검사설비
- 8) 소화제
 - 가) 질량측정설비
 - 나) 항온수조
 - 다) 온도계, 습도계
 - 라) 내압시험기, 비중계
 - 마) 그 밖에 소화제의 검사 설비
- 9) 소화호스, 노즐 및 국제육상시설연결구
 - 가) 내압시험 설비
 - 나) 그 밖에 소화호스, 노즐, 국제육상시설연결구의 시험 및 검사에 필요한 설비
- 10) 탄산가스용기
 - 가) 재료시험에 필요한 다음의 설비
 - (1) 만능시험기, 충격시험기 및 경도계 그 밖에 기계적 시험 설비
 - (2) 두께측정 설비
 - 나) 내압시험 설비
 - 다) 효력시험 설비

- 라) 그 밖에 탄산가스용기의 시험 및 검사 설비
- 11) 매니폴드
 - 가) 내압시험 설비
 - 나) 효력시험 설비
 - 다) 그 밖에 매니폴드의 시험 및 검사 설비
- 12) 제어밸브
 - 가) 내압시험 설비
 - 나) 기밀시험 설비
 - 다) 효력시험 설비
 - 라) 그 밖에 제어밸브의 시험 및 검사 설비
- 13) 소화펌프
 - 가) 재료시험에 필요한 다음의 설비
 - (1) 금속조직의 검사 설비
 - (2) 정량분석장치
 - (3) 주물모래 시험 설비
 - 나) 수압시험 설비
 - 다) 성능시험 설비
 - 라) 그 밖에 소화펌프의 시험 및 검사 설비
- 14) 선등 또는 그 부품(전구, 유리)
 - 가) 재료시험 설비
 - 나) 내식시험 설비
 - 다) 완성시험에 필요한 다음의 설비
 - (1) 광도측정장치
 - (2) 배광측정장치
 - (3) 방수시험장치
 - (4) 진동시험장치
 - (5) 절연저항시험장치
 - 라) 그 밖에 선등 또는 그 부품의 시험 및 검사 설비
- 15) 음향신호장치(기적, 호종, 동라 등)
 - 가) 재료시험에 필요한 다음의 설비
 - (1) 만능시험기 그 밖에 기계적 시험 설비
 - (2) 주물모래 시험 설비
 - 나) 성능시험에 필요한 다음의 설비
 - (1) 무향실
 - (2) 음압레벨측정계

(3) 3분의 1 옥타브 휠터

(4) 튜너 밴드패스 휠터

(5) 음압레벨기록기

(6) 보정계

다) 그 밖에 음향신호장치의 시험 및 검사 설비

16) 자장식 호흡구, 비상탈출용 호흡구

가) 재료시험에 필요한 다음의 설비

(1) 인장시험기

(2) 안면부 충격시험기(자장식 호흡구에 한정함)

나) 수압시험기

다) 성능시험에 필요한 다음의 설비

(1) 공기압시험기

(2) 가용합금 파열온도 측정기

(3) 안면부 기밀시험기

(4) 배기밸브 기밀시험기

(5) 배기밸브 저항시험기(자장식 호흡구에 한정함)

(6) 소음측정기(자장식 호흡구에 한정함)

(7) 나사링게이지

(8) 나사플러그게이지

(9) 유량측정기

(10) 내열시험기

(11) 내한시험기

(12) 투영기(자장식 호흡구에 한정함)

(13) 경보(휘슬) 측정기(자장식 호흡구에 한정함)

(14) By-pass 측정기(자장식 호흡구에 한정함)

라) 그 밖에 시험 및 검사 설비

라. 다음의 인원을 갖추는 것

1) 어선용품의 자체검사자 1명 이상

2) 자체검사 업무의 감독을 위한 관리책임자로서 다음의 자격이 있는 자 1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의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나) 「선박직원법」 제4조에 따른 3급 이상의 해기사면허를 받고 해당 분야의 제조경력 또는 승선경력이 3년 이상인 자

다) 해당 분야의 제조경력 또는 자체검사경력이 5년 이상(신청일을 기준으로 하여 최근 5년 이내의 경력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인 자로서 자체검

사의 책임자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라) 「선박안전법」 제76조에 따른 선박검사관 또는 같은 법 제77조에 따른 선박검사원으로서의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3) 제조에 종사하는 인력

마. 제조작업을 담당하는 조직으로부터 독립된 자체검사 조직을 갖출 것

바. 자체검사설비의 교정검사에 관한 기준을 정한 규정이 있을 것

사. 다음의 법령 및 기록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규정이 있을 것

1) 어선용품의 제조 및 자체검사에 필요한 도면 및 관련 법령(국제협약을 포함한다)

2) 제조작업 및 자체검사에 관한 기록

3) 제조설비의 관리에 관한 기록(일상점검, 정기점검, 보수·유지의 방법, 계량관리 및 관리조직을 포함한다)

4) 배상청구 처리 및 제품의 품질보증

아. 어선용품의 설계 및 제조공정, 재료 및 부품, 자체검사 및 외주 등에 관한 관리기준이 있을 것

자. 다음의 사항을 갖출 것(팽창식 구명설비를 제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제조에 필요한 적정수준의 재료 및 교환부품의 확보

2) 사용설명서 및 정비방법과 그 변경사항에 관한 기준의 비치

3) 정비기술자에 대한 교육·훈련 제도의 설정

차. 우수제조사업장으로 인정받으려는 해당 품목에 대하여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아 계속하여 1년 이상 검정을 받은 실적이 있을 것. 다만, 같은 품목으로서 형식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우수정비사업장의 지정기준

가. 다음의 시설을 갖출 것. 다만, 구명뗏목의 경우에는 별표 4 제1호의 시설로 한다.

1) 어선용품의 정비 또는 자체검사에 필요한 작업장

2) 정비에 필요한 재료·부품 및 정비된 어선용품을 보관하기 위한 장소

나. 다음의 정비설비를 갖출 것

1) 내연기관(연속최대출력 600마력 미만인 것에 한정한다)

가) 절삭가공에 필요한 다음의 설비

(1) 선반

(2) 드릴링머신

(3) 밸브 및 밸브시트의 가공기구

나) 열 박음 작업에 필요한 설비

- 다) 세정작업에 필요한 설비
 - 라) 그 밖에 내연기관의 정비에 필요한 설비
 - 2) 팽창식 구멍뚫목
 - 가) 별표 4 제3호의 기구 및 비품류
 - 나) 그 밖에 팽창식 구멍뚫목의 정비에 필요한 설비
 - 3) 팽창식 구멍부기, 강하식 탑승장치
 - 가) 점검에 필요한 다음의 설비
 - (1) 솔 그 밖에 세정기구
 - (2) 실린더 분리용 공구
 - (3) 충기장치 분해용 공구
 - (4) 휴대용등 또는 회중전등
 - 나) 보수 또는 수리에 필요한 다음의 설비
 - (1) 접시저울, 롤러 그 밖에 접착가공에 필요한 공구
 - (2) 공업용 재봉틀 그 밖에 봉제용구
 - (3) 로프 가공용구 및 납땀가공용구
 - 다) 그 밖에 팽창식 구멍부기 또는 강하식 탑승장치의 정비에 필요한 설비
 - 4) 소화기
 - 가) 소화기실린더 세정 설비
 - 나) 소화기실린더 압력시험 설비
 - 다) 각종 소화약제를 저장하는 설비
 - 라) 봉판 그 밖에 소화기정비에 필요한 부품저장 및 소화시험설비
 - 마) 그 밖에 소화기의 정비에 필요한 설비
- 다. 다음의 시험 및 자체검사설비를 갖출 것
- 1) 내연기관(연속최대출력 600마력 미만인 것에 한정한다)
 - 가) 비파괴검사에 필요한 다음의 설비
 - (1) 자기탐상설비
 - (2) 초음파탐상설비
 - (3) 침투탐상설비
 - 나) 압력시험에 필요한 다음의 설비
 - (1) 수압시험 설비
 - (2) 유압시험 설비
 - 다) 육상시운전 설비
 - 라) 그 밖에 내연기관의 정비사항을 시험 및 검사 설비
 - 2) 팽창식 구멍뚫목, 팽창식 구멍부기 및 강하식 탑승장치
 - 가) 별표 4 제3호다목의 검사를 위한 기구

나) 그 밖에 팽창식 구멍뿔목·팽창식 구멍부기 또는 강하식 탑승장치의 정비사항을 시험 및 검사 설비

3) 소화기

가) 충전 또는 잔량 측정 설비

나) 포소화제(기계포에 한정한다) 농도 측정 설비

다) 그 밖에 소화기의 정비 시험 및 검사 설비

라. 다음의 인원을 갖출 것

1) 어선용품의 자체검사자 1명 이상

2) 자체검사 업무의 감독을 위한 관리책임자로서 다음의 자격이 있는 자 1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의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나) 「선박직원법」 제4조에 따른 3급 이상의 해기사면허를 받고 해당 분야의 제조·정비 또는 승선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다) 해당 분야의 제조·정비 또는 자체검사 경력이 5년 이상(신청일을 기준으로 하여 최근 5년 이내의 경력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인 자로서 자체검사의 책임자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라) 「선박안전법」 제76조에 따른 선박검사관 또는 같은 법 제77조에 따른 선박검사원으로서의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3) 다음 요건에 적합한 정비 인력(팽창식 구멍설비를 정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팽창식 구멍설비의 제조사업장 또는 정비사업장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제조자가 시행하는 팽창식 구멍설비의 정비에 관한 교육, 훈련을 받은 자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비기술이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정비기술자 2명 이상

나) 정비기술자의 지도를 받아 정비작업에 종사하는 작업원 2명 이상

마. 정비작업을 담당하는 조직으로부터 독립된 자체검사 조직을 갖출 것

바. 자체검사 설비의 교정검사에 관한 기준을 정한 규정이 있을 것

사. 다음의 법령 및 기록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규정이 있을 것

1) 어선용품의 정비 및 자체검사에 필요한 도면 및 관련 법령(국제협약을 포함한다)

2) 정비작업 및 자체검사에 관한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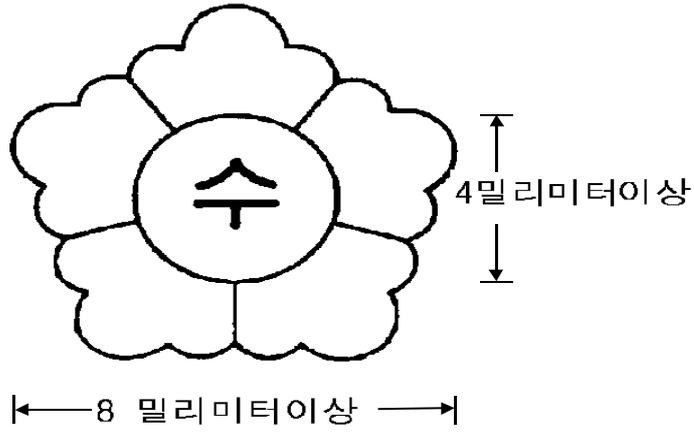
3) 정비설비의 관리에 관한 기록(일상점검, 정기점검, 보수, 유지의 방법, 계량 관리 및 관리조직을 포함한다)

4) 배상청구 처리에 관한 기준

아. 어선용품의 설계 및 정비공정, 재료 및 부품, 자체검사 및 외주 등에 관한 관리기준이 있을 것

[별표 18]

자체검사 합격표시(제59조의7제4항 관련)



[별표 19]

하역설비에 대한 제한하중등을 확인하기 위한 기준(제60조제2항 관련)

1. 하역장치의 구조 및 강도 계산

가. 제한각도 및 제한반경 등

- 1) 하역장치 중 데릭장치(데릭포스트, 스테이, 붐, 링플레이트, 아이플레이트, 클리트 등의 부착품과 윈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하중시험을 하는 때의 데릭붐의 수평면에 대한 각도를 제한각도로 하고, 지브크레인 하중시험을 한 때의 최대선회반경을 제한반경으로 하며, 그 밖의 하역장치는 통상의 사용 상태에서 제한하중에 상당하는 하중을 부하하는 경우 그 중요 부분의 파괴강도에 대한 안전계수가 다음 표에 따른 값 이상이어야 한다.

구 분		안전계수
금속구조부	제한하중이 10톤 이하인 것	5
	제한하중이 10톤 초과인 것	4
목 구조부		8
와 이 어 로 프		5

나. 하역장치의 구조 및 강도계산

- 1) 이 규정은 강제데릭장치로서 하역방법, 구조 및 배치가 통상적인 것에 대하여 적용한다.
- 2) 마스트 및 데릭포스트(이하 “포스트”라 한다)의 최상층 지지갑판 부분(이하 “기부”라 한다)의 바깥지름(d)은 다음 산식에 따른 값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포스트의 단면이 원형이 아닌 경우에는 최소바깥지름 또는 변을 d로 본다.

$$d = 5h \text{ (센티미터)}$$

이 식에서

h는 기부부터 토핑브래킷까지의 포스트의 높이(미터)

3) 포스트기부의 단면계수

가) 스테이가 없는 포스트

- (1) 단면계수(Z)는 다음 산식에 따른 값 이상일 것

$$Z = C_1 \cdot C_2 \cdot W \cdot O \text{ (세제곱센티미터)}$$

이 식에서

C₁, C₂는 다음 표에 따른 값. 이 경우 W가 같은 표에 따른 값의 중간에 있는 경우에는 보간법에 따른다.

W(톤)	2 이하	3	4	5	6	7	8	9	10	15 이상
C ₁	1.35	1.25	1.20	1.17	1.15	1.14	1.13	1.12	1.10	1.10
C ₂	125	120	117	115	114	113	112	111	110	89

W는 제한하중 (톤)

O는 데릭붐의 수평면에 대한 각도를 제한각도로 하는 경우의 선회반지름(미터)

(2) 포스트의 선수측 및 선미측에 데릭붐을 설치하는 경우 배의 길이방향의 축에 관한 단면계수(Z)는 (1)에 따른 값 또는 다음 산식에 따른 값 중 큰 값 이상일 것

$$Z = (\sum C_2 \cdot W) \cdot O' \text{ (세제곱센티미터)}$$

이 식에서

$\sum C_2 \cdot W$ 는 포스트의 선수측 및 선미측 각각의 데릭붐에 대한 $C_2 \cdot W$ 값의 합
 O' 는 포스트의 중심으로부터 선측까지의 거리에 아우트리치를 더한 길이(미터)

C_2 및 W 는 각각 (1)에 따른 C_2 및 W 와 같다.

(3) 데릭붐이 포스트외의 다른 독립된 구조물에 부착되어 있는 경우 데릭붐의 단면계수는 (1) 또는 (2)에 따른 값에 다음 산식에 따른 값(α)을 곱한 것 이상일 것. 이 경우 (1)에 따른 계수 C_1 을 1.0으로 할 것

$$\alpha = \frac{h}{h-h'}$$

이 식에서

h' 는 기부부터 구스넥브래킷의 중심까지의 수직거리 (미터)

h 는 제2호에 따른 h 와 같다.

나) 스테이가 있는 포스트

9)를 만족하는 스테이(이하 “스테이”라 한다)가 설치된 포스트기부의 단면계수는 가목에 따른 것에 다음 산식에 따른 값(β)을 곱할 수 있다.

$$\beta = 10 \frac{h^3}{d_m} \cdot \sum R \text{ (세제곱센티미터)}$$

이 식에서

d_m 는 포스트기부의 바깥지름 또는 변 (센티미터)

h 는 2)에 따른 h 와 같다.

$\sum R$ 은 각 스테이에 대하여 다음 산식에 따른 값을 합한 것

$$\sum R = (ds^2 \cdot a^2) / (\ell_0 \cdot \ell_s^2)$$

이 식에서

ds 는 스테이로 사용되는 와이어로프의 지름 (밀리미터)

ℓ_s 는 스테이의 상하 양단사이의 길이(미터)

ℓ_0 는 ℓ_s 에서 다음 산식에 따른 값(γ)을 감한 길이(미터)

$$\gamma = 0.045ds + 0.26 \text{ (미터)}$$

a는 스테이의 상하 양단간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향으로 측정
한 수평투영거리(미터)

(1) 가) (1)에 따른 것에서 감하는 값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데릭뿔의 가동
범위의 모든 방향으로 측정한 것 중 $\sum R$ 의 값을 최소로 하는 방향

(2) 가) (2)에 따른 것에서 감하는 값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배의 횡방향

다) 킹포스트

균일한 단면의 포틀을 가진 킹포스트로서 데릭뿔이 포스트에 따라 지지되
는 경우 기부의 단면계수는 다음에 따를 것

(1) 배의 횡방향의 축에 관한 단면계수는 가) (1)에 따르는 것에 다음 계수를
곱한 것까지 감할 수 있다.

r이 0.6 이상인 경우 0.7

r이 0.6 미만인 경우 $1 - 0.5 r$

이 식에서

r은 포틀단면의 너비와 포스트기부의 배의 길이 방향의 지름과의 비율

(2) 배의 길이 방향의 축에 관한 단면계수는 가) (1) 또는 (2)에 따른 것 중
큰 값에 다음의 계수를 곱한 값까지 감할 수 있다.

r'가 0.3 이상인 경우 0.35

r'가 0.3 미만인 경우 $0.5 - 5/3 \cdot r'^2$

이 식에서

r'는 포틀단면의 깊이와 포스트기부의 배의 횡방향의 지름과의 비율

(3) 좌우의 포스트 간격이 포스트 높이의 3분의 2 이상인 경우에는 1) 및
2)에 따른 계수를 적당히 증가시킬 것

라) 사이드포스트

데릭뿔을 지지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짧은 데릭포스트의 기부의 단면계수는
다음에 따를 것

(1) 단면계수 (Z)는 다음 산식에 따른 값 이상일 것

$$Z = 85 \frac{h'}{h-h'} W \cdot O \quad (\text{세제곱센티미터})$$

이 식에서

W 및 O 는 각각 (가) 1)에 따른 W 및 O와 같다.

h'는 3)가)(3)에 따른 h'와 같다.

h는 2)에 따른 h와 같다.

(2) 포스트의 선수측 및 선미측에 데릭뿔을 설치하는 경우 배의 길이 방향의
축에 관한 단면계수는 (1)에 따른 W 및 O 대신에 선수측 및 선미측의 데
릭뿔에 대한 W의 합계와 가) (2)에 따른 O'를 사용하여 계산한 값 이상일 것

4) 기부를 제외한 부분의 치수

가) 포스트기부의 하방으로부터 구스넥브래킷의 상방 적절한 높이까지의 치수는 가능한한 기부와 동등한 것일 것

나) 가)의 부분으로부터 상방으로는 점차 포스트의 지름 및 두께를 감할 수 있으나 판두께(t)는 어떠한 경우에도 다음 산식에 따른 값 이상일 것. 또한, 아우트리거 또는 토핑브래킷을 붙이는 부분의 바깥지름은 기부의 바깥지름의 85퍼센트를 표준으로 한다.

$$t = 0.1d_m + 2.5(\text{밀리미터})$$

이 식에서

d_m 은 포스트의 해당 부분에 있어서의 최소 바깥지름 또는 변(센티미터)

5) 아우트리거

아우트리거는 적절한 구조로 하고 충분한 강도를 가지는 것일 것

6) 포틀

가) 3)(다)에 따른 킹포스트의 균일한 단면의 포틀의 단면계수는 다음에 따른 것

(1) 단면의 수직축에 관한 단면계수는 3)가) (1)에 따른 것에 다음 산식에 따른 계수를 곱한 것 이상일 것. 다만, 계수가 0.2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0.2로 한다.

$$0.235 r/C + 0.1$$

이 식에서

r은 3)다)(1)에 따른 r과 같다.

C는 포스트 기부단면의 배의 횡방향 축에 대한 실제의 단면계수와 3)가) (1)에 따른 단면계수와의 비율

(2) (1)에 불구하고 포스트의 선수축이나 선미축의 한쪽에만 데릭뿔을 설치하는 경우 단면의 수직축에 대한 단면계수는 (1)에 따른 것의 2분의 1로 할 수 있다.

(3) 단면의 수평축에 대한 단면계수는 3)가) (1)에 따른 것에 다음 산식에 따른 계수를 곱한 것 이상일 것. 다만, 계수가 0.2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0.2로 한다.

$$0.25 r'/C'$$

이 식에서

r'는 3)다) (2)에 따른 r'와 같다.

C'는 포스트 기부단면의 배의 길이 방향의 축에 대한 실제의 단면계수와 3)가) (2)에 따른 단면계수와의 비율

나) 포틀은 굽힘에 대하여 단면의 변형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적절히 보강되어 있는 것일 것

7) 포스트의 지지

포스트의 하부는 제한하중에 대하여 선체구조와 유효하게 이를 고착할 것

8) 국부 보강

포스트의 아우트리거 및 포틀 등에 토핑브래킷, 구스넥브래킷 및 기타 쇠붙이를 취부하는 부분은 이중판 또는 적절한 방법으로 이를 보강할 것

9) 스테이

가) 스테이에 사용되는 와이어 로프는 한국산업규격 KS V 3443 “선박용 와이어 로프의 사용기준” 1) 또는 3)에 따른 와이어 로프일 것

나) 스테이에 사용되는 와이어로프는 다음 산식에 따른 값이 그 와이어로프에 대한 한국산업규격 KS D 3514 “와이어로프” 부표 1 또는 부표 3에 따른 과단하중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일 것

$$18 \frac{d_s^2 a}{l_o l_s} \delta \cdot g \text{ (KN)}$$

이 식에서

d_s , a , l_o 및 l_s 는 각각 3)나)에 따른 d_s , a , l_o 및 l_s 와 같다. 다만, a 는 δ 의 값을 계산하는 경우와 동일방향으로 측정되는 것으로 한다.

δ 는 다음 산식에 따른 값

$$\delta = C_s \frac{h}{h-h'} \cdot \frac{W \cdot O}{\frac{I}{h^2} + 7.32h\Sigma R}$$

이 식에서

I 는 포스트기부의 단면2차모멘트(네제공센티미터)

h 는 2)에 따른 h 와 같다.

W , O 및 ΣR 는 각각 3)에 따른 W , O 및 ΣR 와 같다. 다만, ΣR 값의 계산에 있어서 a 는 데릭붐의 가동 범위의 모든 방향으로 측정되는 것으로 한다.

C_s 는 다음 표에 따른 값. 이 경우 w 가 같은 표에 따른 값의 중간에 있는 경우에는 보간법에 따른다.

W(톤)	2이하	3	4	5	6	7	8	9	10	15이상
C_s	2.64	2.52	2.46	2.41	2.38	2.35	2.33	2.31	2.29	2.22

다) 스테이용 쇠붙이는 양질의 것으로서 적절한 치수를 가지는 것일 것

라) 리깅나사와 그 핀 및 체인플레이트 아이는 스테이용 와이어로프에 대하여 적절한 것일 것

10) 데릭붐

가) 데릭뿔의 지지부는 데릭뿔이 지지부부터 이탈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일 것

나) 데릭뿔 및 그 쇠붙이는 한국산업규격 KS V 2211 “강판제 데릭뿔”의 규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그 치수 등은 다음에 따를 것

(1) 데릭뿔의 중앙부의 적절한 길이 부분에 대한 단면2차 모멘트(I)는 다음 산식에 따른 값 이상일 것

$$I = C_B P \ell^2 (\text{네제곱센티미터})$$

이 식에서

C_B 는 제한하중이 10톤 이하인 경우에는 2.75, 15톤 이상 50톤 이하인 경우에는 2.20. 이 경우 제한하중이 중간 값인 경우에는 보간법에 따른다.

ℓ 은 데릭뿔의 유효길이(미터)

P 는 다음 산식에 따른 값

$$P = \left(a_1 \frac{\ell}{h-h'} + f \right) \cdot W \quad (\text{톤})$$

이 식에서

h 는 2)에 따른 h 와 같다.

W 및 h' 는 각각 3)에 따른 W 및 h' 와 같다.

a_1 은 다음 표에 따른 값. 다만, W 가 동표에 따른 값의 중간에 있는 경우에는 보간법에 따른다.

W(톤)	2 이하	3	4	5	6	7	8	9	10	15이상 50이하
a_1	1.28	1.23	1.20	1.18	1.16	1.15	1.14	1.13	1.13	1.10

f 는 다음 표에 따른 값. 다만, 하역줄이 데릭뿔의 상단부에 고정된 시브를 통하여 포스트의 정부로 유도되는 배치로 되어 있는 것은 0으로 한다.

하역줄용 활차의 시브수의 합계	1	2	3	4	5	6	7	8
f	1.102	0.570	0.392	0.304	0.251	0.216	0.192	0.172

(2) (1)에 불구하고 단면 2차모멘트(I)는 다음 산식에 따른 값으로 할 수 있다.

$$I = (\pi/8) \cdot (d_o - t)^3 \cdot t (\text{네제곱센티미터})$$

이 식에서

d_o 는 중앙의 바깥지름(센티미터)

t 는 판두께(센티미터)

(3) 데릭뿔의 양단부 지름은 중앙부 지름의 60퍼센트 이상일 것

(4) 데릭몸 본체에 사용하는 강관의 두께(t)는 다음에 따른 값 또는 중앙부의 바깥지름의 50분의 1 중 큰 값 이상일 것

P가 7.7 미만인 경우 $t=6$ (밀리미터)

P가 7.7 이상인 경우 $t=0.13P + 5$ (밀리미터)

이 식에서

P는 1)에 따른 P와 같다.

(5) 데릭몸의 상단부쇠붙이가 붙는 부분은 적절한 두께의 이중판 또는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보강할 것

(6) 제한하중이 50톤을 초과하는 장치에 사용되는 데릭몸의 치수에 대하여는 다음에 따른 것

(가) 다음 조건식을 만족하는 것일 것

$$P_{or} / P \geq 4$$

이 식에서

P_{or} 는 붐좌굴하중(톤)

P는 1)에 따른 P와 같다

(나) 최대응력(σ)은 재료의 인장강도의 4분의 1 이하일 것

11) 쇠붙이

가) 데릭몸의 상단부쇠붙이, 하단부아이, 토핑브래킷 및 구스넥브래킷은 각각 한국산업규격 KS V 2211 “강판제 데릭몸”, KS V 2212 “하역토팅 브래킷” 및 KS V 2213 “데릭 구스넥 베어링”의 규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그 치수는 다음에 따른 것. 다만, 제한하중이 50톤을 초과하는 장치용의 것에 대하여는 각각의 경우에 대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 또한 이 기준에 따른 치수는 한국산업규격 KS D 3710 “탄소강 단강품”중 SF440A 또는 한국산업규격 KS D 4101 “탄소강 주강품” 중 SC410의 규격에 적합한 재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강도를 가지는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의 것을 표시한다.

(1) 데릭몸의 하단부아이 및 구스넥브래킷과 핀의 치수는 다음 조건식을 만족하는 것일 것

$$b \geq e_1 \sqrt{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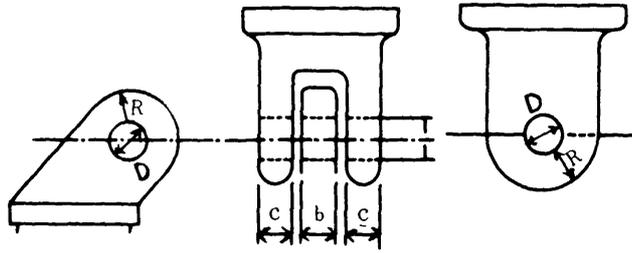
$$d \geq e_1 \sqrt{P}$$

$$c \geq 0.55 e_1 \sqrt{P}$$

$$2 \geq D-d \geq 1$$

$$R \approx D$$

이 식에서 b, c, d, D, R는 다음 그림 1에 따른 치수(밀리미터)



(그림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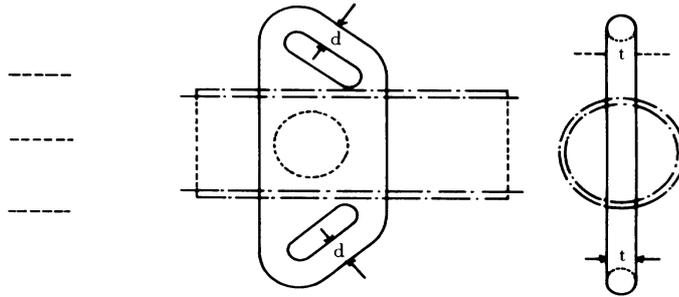
e_1 은 제한하중이 10톤 이하인 경우에는 15.6, 15톤 이상 50톤 미만인 경우에는 14.0. 이 경우 제한하중이 중간 값인 경우에는 보간법에 따른다.
 P 는 10)나) 1)에 따른 P 와 같다.

(2) 데릭뿔의 상단부쇠붙이의 치수는 그 형상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건식을 만족하는 것일 것

(가) $d \geq e_2 \sqrt{T}$
 $t \geq e_2 \sqrt{T}$

이 식에서

d, t 는 그림 2에 따른 치수



(그림 2)

e_2 는 제한하중이 10톤 이하인 경우에는 12.5, 15톤 이상 50톤 이하인 경우에는 11.2. 다만, 제한하중이 중간 값인 경우에는 보간법에 따른다.

T 는 다음에 따른 값

$T = a_1 \cdot a_2 \cdot W$ (토펙리프트용 활차쇠붙이의 경우)

$T = \lambda \cdot W$ (하역줄용 활차쇠붙이의 경우)

이 식에서

a_1 는 10)나)(1)에 따른 a_1 과 같다.

W 는 제한하중(톤)

a_2 는 다음 표에 따른 값. 다만, 동표에 따른 값의 중간에 있는 경우

에는 보간법에 따른다.

	$\ell / (h-h')$	2.0	1.9	1.8	1.7	1.6	1.5	1.4	1.3	1.2
a ₂	W가 10톤 이하인 경우	1.99	1.90	1.81	1.73	1.65	1.57	1.49	1.42	1.35
	W가 15톤 이상 50톤 이하인 경우	1.82	1.73	1.65	1.57	1.49	1.41	1.33	1.26	1.19

비고

1. ℓ 은 데릭뿔의 유효길이(미터)
2. h' 는 3)가)(3)에 따른 h' 와 같다.
3. h 는 2)에 따른 h 와 같다.

λ 는 다음 표에 따른 값. 다만, 하역줄이 데릭뿔의 상단부에 고정된 시브를 통하여 포스트의 정부로 유도되는 배치로 되어 있는 것은 1.0으로 한다.

하역줄용 활차의 시브수의 합계	1	2	3	4	5	6	7	8
λ	2.10	1.58	1.40	1.31	1.26	1.23	1.20	1.18

(나) $R \geq 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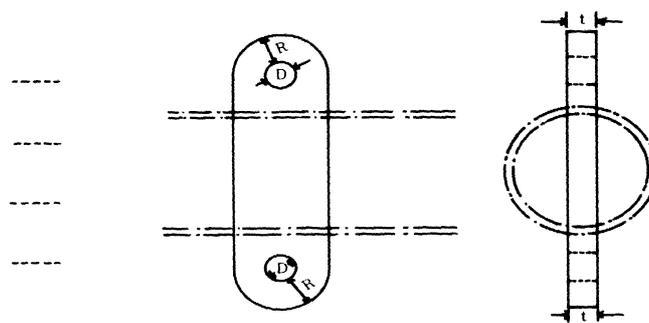
$$t \geq e_1 \sqrt{T}$$

다만, R가 특히 큰 경우에는 다음 조건식을 만족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t \cdot (R-D/2) \geq e_2 \cdot T$$

이 식에서

R, D, t는 그림 3에 따른 치수(밀리미터)



(그림 3)

e_2 는 제한하중이 10톤 이하인 경우에는 122, 15톤 이상 50톤 이하인 경우에는 98. 이 경우 제한하중이 중간 값인 경우에는 보간법에 따른다.

e_1 은 (1)에 따른 e_1 과 같다.

T는 (가)에 따른 T와 같다.

(3) (1) 또는 (2)에 따르지 아니하는 부분의 치수는 해당 부분에 가하여지는 힘에 대하여 적당한 것일 것

나) 데릭뿔, 마스트 및 선체구조에 영구적으로 장치되는 부착물은 양질의 것 이어야 하며, 적당한 치수의 것일 것

2. 제한하중 등의 확인을 위한 기준

가. 하역장치는 다음 표에 따른 하중시험을 수행하여 이상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제한하중	시험하중
20톤 미만	제한하중의 1.25배의 하중
20톤 이상 50톤 미만	제한하중에 5톤을 가한 하중
50톤 이상 100톤 미만	제한하중의 1.1배의 하중
100톤 이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하중

나. 가목에 따른 하중시험은 시험하중에 상당하는 중량물을 달아올린 후 사용하는 최대의 아웃리치까지의 사이 및 주행예정거리에서 선회 또는 이동시키는 방법에 따라 한다. 다만, 수리 또는 변경이 가하여진 하역장치에 대하여는 스프링저울 또는 하이드로릭바란스를 사용하여 선회 또는 이동의 양단에서 5분간 연속하여 시험하중에 상당하는 하중을 부하하는 방법에 따를 수 있다.

다. 데릭장치에 대한 나목의 하중시험은 데릭뿔의 수평면에 대한 각도를 제한하중이 10톤 이하는 15도, 제한하중이 10톤 이상인 것은 25도로 하여 수행한다. 다만, 제한하중에 상당하는 하중을 부하하여 사용하는 범위에 있어서의 최소의 각도가 이들 각도를 넘는 경우에는 그 최소의 각도로 할 수 있다.

라. 지브크레인에 대한 나목의 하중시험은 그 선회반경을 사용되는 범위 중 최소치와 최대치로 하여 수행한다.

마. 하중시험 시에는 윈치의 제동장치에 대한 효력시험을 하여야 한다. 다만, 윈치 단독의 하중시험을 시행하여 제동장치의 효력시험이 확인된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하역장치의 안전성 확보 등

가. 데릭뿔과 데릭포스트의 접합부는 데릭뿔이 지지부부터 이탈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주행크레인은 차축 또는 차가 파손된 경우에 전복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의 것이어야 한다.

다. 동력장치의 기어 그 밖의 전도장치, 축계, 대전부 및 증기관에는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덮개, 둘러싸개 등의 보호장치를 하여야 한다.

4. 하역원치의 설비요건 등

가. 윈치(토펙리프트윈치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제한하중에 상당하는 중량물을 올리고 내리는 동안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제동장치(전동원치에 있어서는 전

자브레이크를 말한다)를 설비한 것으로서 로프가드가 부착되어야 하며(데릭장치에 사용되는 윈치로 한정한다) 윈치드럼의 양단에 있어서의 귀의 높이는 권상용 와이어로프를 빠짐없이 또한 여유를 남기지 아니하고 감는 경우 그 로프 지름의 2배 이상의 여유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

나. 증기 윈치의 배기관의 개구단은 배기가 취급자의 시야를 방해하는 일이 없도록 배치된 것이어야 한다.

다. 유압 윈치에는 과압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 전동 윈치는 다음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제어기에 근접한 위치에 전로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을 것. 이 경우 모터의 주회로 전원으로부터 분리하는 스위치를 근접한 위치에 설치할 수 있다.

2) 과부하방지를 위한 안전장치를 설비하거나 이에 준하는 안전장치가 강구되어 있을 것. 다만, 교류전동원치 중 극수변환방식의 것에는 과부하계전기를 설비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하역장구의 제한하중

하역장구(하역장치에 사용되는 체인, 링, 훅, 섹클, 스위블, 리깅스크류, 활차 및 로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제한하중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파괴강도에 대하여는 안전계수가 다음 표에 따른 값 이상일 것. 다만, 와이어로프의 파괴강도는 절단시험을 하여 확인된 것이어야 한다.

구 분		안전계수
체 인		4.5
와이어로프		5
와이어로프 외의 로프		7
그 밖의 하역장구	제한하중이 10톤 이하인 것	5
	제한하중이 10톤 초과인 것	4

나. 로프 외의 하역장구는 다음 표의 시험하중에 따른 하중시험을 하여 이상이 없는 것일 것

구 분		시 험 하 중
단활차		제한하중의 4배의 하중
단활차 외의 활차	제한하중 20톤 이하	제한하중의 2배의 하중
	제한하중 20톤 초과 40톤 이하	제한하중에 20톤을 가한 하중
	제한하중 40톤 초과	제한하중의 1.5배의 하중
그 밖의 하역장구		제한하중의 2배의 하중

6. 크레인 권위의 설비요건

크레인의 권위에 대한 설비요건에 대하여는 제4호에 따른 하역원치의 기준을 준용한다.

어선법 시행규칙 별지

시행규칙 별지 목차

번호	별지 제목	쪽	번호	별지 제목	쪽
1	어선 건조(건조발주) 허가신청서	174	47	별도건조검사증서	226
2	어선 개조(개조발주) 허가신청서	176	48	도면승인(변경) 신청서	227
3	어선 건조(건조발주·개조·개조발주) 허가사항변경허가신청서	178	49	형식승인신청서	229
4	어선건조(건조발주)허가서	180	50	형식승인증서	231
5	어선개조(개조발주)허가서	181	51	검정신청서	232
6	어선건조(건조발주·개조·개조발주)허가사항변경허가서	182	52	형식승인사항 변경승인신청서	234
20	어선총톤수 측정(개측) 신청서	183	53	형식승인사항 변경승인서	236
21	어선총톤수측정증명서	185	54	우수사업장지정(변경)신청서	237
22	국제톤수 증서(확인서) 발급신청서	186	55	우수사업장지정서	239
23	국제톤수증서	188	56	확인신청서	240
24	국제톤수확인서	190	57	자체검사 합격증서	242
25	재화중량톤수증서발급신청서	192	58	제한하중등 신청서	243
26	재화중량톤수증서	194	59	제한하중등 확인서	244
27	어선등록신청서	195	60	하역설비검사기록부	245
28	어선원부	197	61	어선검사증서	248
31	변경등록신청서	199	62	어선검사증서	250
33	어선등록사항정정신청서	201	63	어선특별검사증서	252
34	어선등록말소신청서	203	64	임시항행검사증서	253
35	선박국적증서	205	65	건조검사증서	254
36	선적증서	206	66	예비검사증서	255
37	등록필증	209	67	검정증서	256
38	선박국적증서영역서발급신청서	211	68	건조(제조·정비)확인증	257
39	CERTIFICATE OF VESSEL'S NATIONALITY	213	69	어선검사증서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258
40	어선검사신청서	214	70	어선검사증서(국제협약검사증서) 유효기간 연장승인서	260
41	중간검사시기연기신청서	216	71	재검사등신청서	261
42	계선사유서	217	72	어선결함신고서	263
43	건조(별도건조) 검사신청서	219	73	어선결함신고기록부	264
44	예비검사신청서	221	74	어선결함신고자명부	265
45	팽창식 구명설비 정비시설 등 확인신청서	223	75	출항정지명령서	266
46	팽창식 구명설비 정비시설 등 확인서	225	76	증서등 재발급신청서	267

어선 [<input type="checkbox"/> 건조 <input type="checkbox"/> 건조발주] 허가신청서			
※ <input type="checkbox"/> 는 해당란에 <input checked="" type="checkbox"/> 표시하며,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 유 자	① 성명 (법인명)		②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③ 주소	(전화)	
건조 어선	④ 주요치수(m)	길이: 너비: 깊이:	⑤ 선체재질 <input type="checkbox"/> 강 <input type="checkbox"/> 목 <input type="checkbox"/> FRP <input type="checkbox"/> 기타()
	⑥ 총톤수	톤	⑦ 추진기관 기관 마력 대
	⑧ 선적항		⑨ 어업의 종류
추진 계획	⑩ 착공예정일	년 월 일	⑪ 준공예정일 년 월 일
	⑫ 재원구분	<input type="checkbox"/> 자기부담 만원	<input type="checkbox"/> 정부지원 만원
	⑬ 건조장소		⑭ 조선소명
⑮ 건조사유			
「어선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구비서류	없 음		

210mm×297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제출하는 곳	농림수산식품부, 시·군·구
처리부서	어선 건조허가 담당부서
수수료	부령 또는 조례에 따름
처리기간	농림수산식품부 : 4일, 시·군·구 : 3일
유의사항	<p>1. 벌칙규정</p> <p>어선의 건조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어선을 건조하거나 건조를 받주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p> <p>2. 어선의 건조·건조발주 허가기관</p> <p>가. 농림수산식품부장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원양어업에 사용할 어선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시험어업, 연구어업 또는 교습어업에 사용할 어선 3) 외항화물운송사업에 사용할 수산물운반선 4)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어업에 관한 기술보급·시험·조사 또는 지도·감독에 사용할 어선 <p>나. 시장·군수·구청장</p> <p>가목의 어선을 제외한 어선</p> <p>3. 기타</p> <p>가. 건조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선박안전기술공단에서 총톤수의 측정을 받아야 합니다.</p> <p>나. 건조어선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군·구에 어선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총톤수 20톤 이상의 어선은 관할 등기소에 선박등기를 하여야 합니다.</p>

<p style="font-size: 1.2em; margin: 0;">어선 [<input type="checkbox"/> 개조 <input type="checkbox"/> 개조발주] 허가신청서</p> <p style="font-size: 0.8em; margin: 5px 0;">※ <input type="checkbox"/>는 해당란에 √ 표시하며,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p>			
소 유 자	① 성명 (법인명)		②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③ 주소	(전화)	
개조 어선	④ 어선번호		
	⑤ 어선의 명칭	⑥ 선적항	
	구분	개조 전	개조 후
	⑦ 주요치수(m)	길이: 너비: 깊이:	길이: 너비: 깊이:
	⑧ 총톤수	톤	톤
	⑨ 추진기관	기관 마력 대	기관 마력 대
	⑩ 구조·설비		
	⑪ 어업의 종류	어업	어업
추진 계획	⑫ 착공예정일	년 월 일	⑬ 준공예정일 년 월 일
	⑭ 개조장소	⑮ 조선소명	
⑯ 개조사유			
<p>「어선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50px;">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center; font-weight: bold; margin-top: 10px;">귀하</p>			
구비서류	없음		

210mm×297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제출하는 곳	농림수산식품부, 시·군·구
처리부서	어선 개조허가 담당부서
수수료	부령 또는 조례에 따름
처리기간	농림수산식품부 : 4일, 시·군·구 : 3일
유의사항	<p>1. 벌칙규정 어선의 개조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어선을 개조하거나 개조를 발주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p> <p>2. 어선의 개조·개조발주 허가기관 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1) 원양어업에 사용할 어선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시험어업, 연구어업 또는 교습어업에 사용할 어선 3) 외항화물운송사업에 사용할 수산물운반선 4)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어업에 관한 기술보급·시험·조사 또는 지도·감독에 사용할 어선 나. 시장·군수·구청장 가목의 어선을 제외한 어선</p> <p>3. 기 타 가. 다음의 경우는 어선의 개조 또는 개조발주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1) 어선의 주요치수(길이·너비·깊이)를 변경하는 경우 2) 어선의 추진기관을 새로 설치하거나 추진기관의 종류 또는 출력을 변경하는 경우 3) 어선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어업의 종류를 변경할 목적으로 어선의 구조나 설비를 변경하는 경우 나. 총톤수 2톤 미만의 어선과 내수면어업에 사용할 어선은 개조·개조발주허가가 면제됩니다. 다. 등록사항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30일 이내에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p>

어선 [<input type="checkbox"/> 건조 <input type="checkbox"/> 건조발주 <input type="checkbox"/> 개조 <input type="checkbox"/> 개조발주] 허가사항변경허가신청서				
※ <input type="checkbox"/> 는 해당란에 √ 표시하며,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 유 자	① 성명 (법인명)		②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③ 주소	(전화)		
당초허가사항	④ 허가번호	제 호	⑤ 허가일자	년 월 일
변경 사항	구분	당초		변경
	⑥ 어선소유자			
	⑦ 선적항			
	⑧ 어업의 종류	어업		어업
	⑨ 주요치수(m)	길이: 너비: 깊이:	길이: 너비: 깊이:	
	⑩ 총톤수	톤		톤
	⑪ 추진기관	기관 마력 대		기관 마력 대
	⑫ 그 밖의 설비			
⑬ 변경사유				
「어선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구비서류	없음			

210mm×297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제출하는 곳	농림수산식품부, 시·군·구
처리부서	어선 건조·개조허가 담당부서
수수료	부령 또는 조례에 따름
처리기간	농림수산식품부 : 4일, 시·군·구 : 3일
유의사항	<p>1. 벌칙규정</p> <p>어선건조 등의 허가사항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사항을 변경하여 어선을 건조 또는 개조하거나 건조 또는 개조를 발주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p> <p>2. 허가사항 변경허가기관</p> <p>가. 농림수산식품부장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원양어업에 사용할 어선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시험어업, 연구어업 또는 교습어업에 사용할 어선 3) 외항화물운송사업에 사용할 수산물운반선 4)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어업에 관한 기술보급·시험·조사 또는 지도·감독에 사용할 어선 <p>나. 시장·군수·구청장</p> <p>가목의 어선을 제외한 어선</p>

[별지 제4호서식]

어선건조(건조발주)허가서				
제	호			
소 유 자	성명 (법인명)			
	주소			
건조 어선	주요치수(m)	길이:	너비:	깊이:
	총톤수	톤	선체재질	
	추진기관	기관	마력	대
	선적항			
	어업의 종류	어업		
건조장소				
허가조건:				
<p style="text-align: center;">「어선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 [인] </p>				

210mm×297mm (인쇄용지(특급) 120g/m²)

[별지 제5호서식]

어선개조(개조발주)허가서							
제 호							
소 유 자	성명 (법인명)						
	주소						
개조 어선	어선번호						
	어선의 명칭			선적항			
	구분	개조 전		개조 후			
	주요치수(m)	길이:	너비:	깊이:	길이:	너비:	깊이:
	총톤수			톤			톤
	추진기관	기관	마력	대	기관	마력	대
	기타설비						
	어업의 종류			어업			어업
개조장소							
개조사유							
허가조건:							
<p>「어선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 [인] </p>							

210mm×297mm(인쇄용지(특급) 120g/m²)

[별지 제6호서식]

어선건조(건조발주·개조·개조발주)허가사항변경허가서				
제 호				
소 유 자	성명 (법인명)			
	주 소			
당 초 허 가 사 항	허 가 번 호	제 호	일 자	년 월 일
구 분	당 초 허 가		변 경 허 가	
변 경 사 항				
변 경 사 유				
<p>「어선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50px;">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 </p>				
[인]				

210mm×297mm(인쇄용지(특급) 120g/m²)

<p style="font-size: 1.2em; margin: 0;">어선총톤수 [<input type="checkbox"/> 측정] 신청서</p> <p style="font-size: 1.2em; margin: 0;">[<input type="checkbox"/> 개측]</p> <p style="font-size: 0.8em; margin: 5px 0 0 0;">※ <input type="checkbox"/>는 해당란에 √ 표시하며, 뒷면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p>				
신청인	① 성명 (법인명)		②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③ 주소	(전화)		
측정(개측)어선	④ 어선번호			
	⑤ 어선의 종류	<input type="checkbox"/> 동력 <input type="checkbox"/> 무동력	⑥ 어선의 명칭	(원명:)
	⑦ 선적항		⑧ 진수연월일	년 월 일
	⑨ 주요치수(m)	길이: 너비: 깊이:	⑩ 선체재질	<input type="checkbox"/> 강 <input type="checkbox"/> 목 <input type="checkbox"/> FRP <input type="checkbox"/> 기타()
	⑪ 조선지		⑫ 조선자	
⑬ 측정(개측)을 받고자 하는 일자		년 월 일		
⑭ 측정(개측)을 받고자 하는 장소				
⑮ 신청사유				
<p style="margin: 0;">「어선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 10px 0 0 0;">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 0;">신청인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center; font-weight: bold; margin: 10px 0 0 0;">귀하</p>				
구비서류	<p style="margin: 0;">1. 도면(측정길이 24미터 이상의 어선에 한정합니다) 가. 일반배치도, 나. 선체선도, 다. 중앙횡단면도, 라. 강제배치도 또는 재료배치도, 마. 상부구조도, 바. 총톤수계산서(제16조에 따라 총톤수의 부분측정을 받은 어선으로 한정합니다), 사.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총톤수측정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p> <p style="margin: 0;">2. 조선지·조선자·진수일 및 선박의 원명을 증빙하는 서류(필요시에 한정합니다)</p>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제출하는 곳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선급, 영사
처리부서	지부·출장소
수수료	대행 검사기관이 정하는 수수료 기준에 따름
처리기간	5일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톤수 측정 또는 개측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선의 건조·건조발주허가를 받아 어선을 건조한 때 - 어선의 수리 또는 개조로 인하여 총톤수에 변경이 생긴 때 - 외국적 어선을 수입하여 우리나라 어선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때 - 외국에서 취득한 어선을 외국에서 항행 또는 조업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조 중인 어선은 준공 전에 총톤수의 부분측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별지 제21호서식]

어선총톤수측정증명서						
제 호						
소유자	성명 (법인명)					
	주소	(전화)				
어선번호		총톤수		톤		
호출부호 또는 명칭		용 적	폐위장소의 합계용적		m ³	
어선의 종류			상갑판아래의 용적		m ³	
어선의 명칭			상 갑 판 위 의 용 적	합계용적		m ³
선적항				선수루의 용적		m ³
선체재질				선교루의 용적		m ³
범선의 범장				선미루의 용적		m ³
추진기관			기관 마력 대		m ³	
추진기			추진기 대		m ³	
조선지			제 외 장 소 의 용 적	합계용적		m ³
조선자				선수루의 용적		m ³
진수연월일				선교루의 용적		m ³
주요 치수	길이			선미루의 용적		m ³
	깊이		갑판실의 용적		m ³	
	너비	그 밖의 장소의 용적		m ³		
<p>「어선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농림수산식품부장관 대한민국영사 [인]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 (한국선급회장)</p>						

210mm×297mm(인쇄용지(특급) 120g/m²)

<p>국제톤수 [<input type="checkbox"/> 증서] 발급신청서 <input type="checkbox"/> 확인서</p> <p>※ <input type="checkbox"/>는 해당란에 √표시하며, 뒷면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p>			
신청인	① 성명 (법인명)		②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③ 주소	(전화)	
④ 어선번호		⑤ 어선의 명칭	
⑥ 선적항		⑦ 진수연월일	년 월 일
⑧ 총톤수	톤	⑨ 국제총톤수	톤
⑩ 측정(개측)을 받고자 하는일자		년 월 일	
⑪ 측정(개측)을 받고자 하는장소			
<p>「어선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center; font-weight: bold; font-size: 1.2em;">귀하</p>			
구비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일반배치도 2. 선체선도 3. 중앙횡단면도 4. 강제배치도 또는 재료배치도 5. 상부구조도 6. 총톤수계산서(제16조에 따라 총톤수의 부분측정을 받은 어선으로 한정합니다) 7.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국제톤수의 측정 또는 그 개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국제톤수증서·확인서의 발급 신청안내

(뒤쪽)

제출하는 곳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선급, 영사	처리부서	지부·출장소
수수료	대행 검사기관이 정하는 수수료 기준에 따름		
처리기간	7일		
유의사항	<p>○ 벌칙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의 길이 24미터 이상의 어선으로서 국제톤수증서를 선내에 갖추지 아니하고 국제항해에 종사하거나 국제톤수증서를 반납(반납할 수 없는 경우는 신고)하여야 하는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p>○ 기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배의 길이 24미터 이상의 어선은 국제톤수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선내에 갖추어야 합니다. - 배의 길이 24미터 미만의 어선으로서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어선은 국제톤수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증서번호 제 호
Certificate No.

국제톤수증서(1969)

INTERNATIONAL TONNAGE CERTIFICATE(1969)

1969년 선박톤수측정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라 동협약이 1982년 7월 18일에 발효된 대한민국의 권한으로 _____ 발행합니다.

Issued under the Provisions of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onnage Measurement of Ships, 1969, under the authority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for which the Convention came into force on the 18th day of July, 1982 by _____.

어선의 명칭 Name of Ship	어선번호 또는 호출번호 Distinctive Number or Letters	선적항 Port of Registry	년월일(주) *Date

(주) 길이 거처되었거나 또는 유사한 건조단계에 있었던 일자[협약 제2조(6)] 또는 선박에 중요한 변경 또는 개조를 한 일자[협약 제3조(2)(b)]

*Date on which the keel was laid or the ship was at similar stage construction[Article 2(6)] or date on which the ship underwent alterations or modifications of a major character[Article 3(2)(b)], as appropriate.

주요치수

MAIN DIMENSIONS

길이 [협약 제2조(8)] Length [Article 2(8)]	너비[협약부속서 I 제2규칙(3)] Breadth[Regulation 2(3)]	선박의 중앙에서 상갑판까지의 깊이 [협약의 부속서 I 제2규칙(2)] Moulded Depth amidships to the Upper Deck[Regulation 2(2)]

선박의 톤수

THE TONNAGE OF THE SHIP ARE

국제총톤수

GROSS TONNAGE _____

순톤수

NET TONNAGE _____

이 증서는 1969년 선박톤수증서에 관한 국제협약의 규정에 따라 이 선박의 톤수가 결정되었음을 증명합니다.

This is to certify that the tonnages of this ship have been determin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International Convention of Tonnage Measurement of Ships, 1969.

_____년 _____월 _____일 _____에서 발행하였습니다.

(발행일자) (증서의 발행장소)

Issued at _____, the _____ day of _____

(Place of issue of certificate) (date of issue)

농림수산식품부장관

Minister of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서명자는 이 증서를 발행함에 있어서 위의 정부로부터 정당한 권한을 부여 받았음을 선언합니다.

The under signed declares that he is duly authorized by the said Government to issue this certificate.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

President of Korea Ship Safety Technology Authority

한국선급회장

President of Korean Register of Shipping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m²)

(뒤쪽)

톤수에 포함되는 장소 SPACES INCLUDED IN TONNAGE					
국제총톤수 GROSS TONNAGE			순톤수 NET TONNAGE		
장소의 명칭 Name of Space	위치 Location	길이 Length	장소의 명칭 Name of Space	위치 Location	길이 Length
			여객의 정원수(협약의 부속서 제4규칙(1)) Number of passengers(Regulation 4(1)) 정원 8인 이하의 여객실의 여객정원수 Number of passengers in cabins with not more than 8 berths 기타의 여객정원수 Number of other passengers		
제외장소[협약의 부속서 I 제2규칙(5)] Excluded spaces [Regulation 2(5)] 위 장소중 폐위장소 및 제외장소에 모두 해당되는 곳은 별표(*)로 표시 한다. An asterisk(*) should be added to those spaces listed above which comprise both enclosed and excluded spaces.			형홀수[협약의 부속서 I 제4규칙(2)] Moulded draught [Regulation 4(2)]		
최초의 측정일자 및 장소 Date and place of original measurement					
전회의 측정일자 및 장소 Date and place of last previous remeasurement					
비고 REMARKS:					

증서번호 제 호 Certificate No.	<p style="font-size: 1.2em; margin: 0;">국 제 톤 수 확 인 서</p> <p style="margin: 0;">TONNAGE CERTIFICATE</p>		
대한민국정부의 권한으로 _____ 발행합니다. Issued under the authority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by _____			
어선의 명칭 Name of Ship	어선번호 또는 호출번호 Distinctive Number or Letters	선적항 Port of Registry	연월일(주) *Date
(주) 용골이 거치되었거나 또는 유사한 건조단계에 있었던 일자[협약 제2조(6)] 또는 선박에 중요한 변경 또는 개조를 한 일자[협약 제3조(2)(b)] *Date on which the keel was laid or the ship was at similar stage construction[Article 2(6)], or date on which the ship underwent alterations or modifications of a major character[Article 3(2)(b)], as appropriate. 주요치수 MAIN DIMENSIONS			
길이 [협약 제2조(8)] Length [Article 2(8)]	너비[협약부속서 I 제2규칙(3)] Breadth[Regulation 2(3)]	선박의 중앙에서 상갑판까지의 깊이 [협약의 부속서 I 제2규칙(2)] Moulded depth amidships to the Upper Deck[Regulation 2(2)]	
선 박 의 톤 수 THE TONNAGE OF THE SHIP ARE 국제총톤수 GROSS TONNAGE _____ 순톤수 NET TONNAGE _____			
이 증서는 1969년 선박톤수증서에관한국제협약의 규정에 따라 이 선박의 톤수가 결정되었음을 증명합니다. This is to certify that the tonnages of this ship have been determin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International Convention of Tonnage Measurement of Ships, 1969.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 _____ 에서 발행하였습니다. (발행일자) (증서의 발행장소)			
Issued at _____, the _____ day of _____ (Place of issue of certificate) (day of issue)			
<p style="font-size: 1.1em; margin: 0;">농림수산식품부장관</p> <p style="margin: 0;">Minister of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p>			
서명자는 이 증서를 발행함에 있어서 위의 정부로부터 정당한 권한을 부여받았음을 선언합니다. The under signed declares that he is duly authorized by the said Government to issue this certificate.			
<p style="font-size: 1.1em; margin: 0;">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p> <p style="margin: 0;">President of Korea Ship Safety Technology Authority</p> <p style="font-size: 1.1em; margin: 0;">한국선급회장</p> <p style="margin: 0;">President of Korean Register of Shipping</p>			

210mm×297mm(인쇄용지(특급) 120g/m²)

(뒤쪽)

톤수에 포함되는 장소 SPACES INCLUDED IN TONNAGE					
국제총톤수 GROSS TONNAGE			순톤수 NET TONNAGE		
장소의 명칭 Name of Space	위치 Location	길이 Length	장소의 명칭 Name of Space	위치 Location	길이 Length
			여객의 정원수(협약의 부속서 제4규칙(1)) Number of passengers(Regulation 4(1)) 정원 8인 이하의 여객실의 여객정원수 Number of passengers in cabins with not more than 8 berths 기타의 여객정원수 Number of other passengers		
제외장소[협약의 부속서 I 제2규칙(5)] Excluded spaces [Regulation 2(5)] 위 장소중 폐위장소 및 제외장소에 모두 해당되는 곳은 별표(*)로 표시 한다. An asterisk(*) should be added to those spaces listed above which comprise both enclosed and excluded spaces.			형홀수[협약의 부속서 I 제4규칙(2)] Moulded draught [Regulation 4(2)]		
최초의 측정일자 및 장소 Date and place of original measurement					
전회의 측정일자 및 장소 Date and place of last previous remeasurement					
비고 REMARKS:					

재화중량톤수증서의 발급 신청안내

(뒤쪽)

제출하는 곳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선급, 영사	처리부서	지부·출장소
수수료	대행 검사기관이 정하는 수수료 기준에 따름		
처리기간	7일		
유의사항	○ 어선의 안전항해를 위한 최대적재량을 확인하기 위하여 어선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재화중량톤수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증서번호 제 호
Certificate No.

재 화 중 량 톤 수 증 서

DEADWEIGHT TONNAGE CERTIFICATE

대한민국정부의 권한으로 발행합니다.

Issued under the authority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by

어 선 의 명 칭 Name of Ship	어선번호 또는 호 출 부 호 Distinctive Number or Letters	선적항 Port of Registry	총톤수 Gross Tonnage	연월일(주) *Date

(주) 용골이 거치되었거나 또는 유사한 건조단계에 있었던 일자 또는 개조를 한 일자
*Date on which the keel was laid or the ship was at similar stage of construction or date on which the ship underwent alterations or modifications of a major character, as appropriate.

주요치수

MAIN DIMENSIONS

길이 Length	너비 Breadth	선박의 중앙에서 상갑판까지 의 형깊이 Moulded depth amid ships to the Upper Deck	선박의 중앙에서 기준흘수선 까지의 형깊이 Moulded Depth amid ships to the Summer Load Line

재화중량톤수

DEADWEIGHT TONNAGE

이 증서는 대한민국정부의 권한으로 재화중량톤수가 결정되었음을 증명합니다.
This is to certify that the deadweight tonnages of this ship have been determined under the authority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년 월 일 에서 발행합니다.

(발행일자)

(증서의 발행장소)

Issued at _____, the _____ day of _____,

(Place of issue of certificate) (date of issue)

농림수산식품부장관

Minister of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대한민국영사

The Consul of the Republic of Korea

서명자는 이 증서를 발행함에 있어서 위의 정부로부터 정당한 권한을 부여 받았음을 선언합니다.

The under signed declares that he is duly authorized by the said Government to issue this certificate.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

President of Korea Ship Safety Technology Authority

한국선급회장

President of Korean Register of Shipping

210mm×297mm(인쇄용지(특급) 120g/m²)

어선등록신청서			
※ <input type="checkbox"/> 는 해당란에 <input checked="" type="checkbox"/> 표시하며, 뒷면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① 성명 (법인명)		②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③ 주소	(전화)	
④ 어선의 명칭(원명)			
⑤ 선적항		⑥ 진수연월일	년 월 일
⑦ 총톤수	톤	⑧ 주요치수(m)	길이: 너비: 깊이:
⑨ 신청사유	<input type="checkbox"/> 건조 <input type="checkbox"/> 수입 <input type="checkbox"/> 기타()		
<p style="text-align: center;">「어선법」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50px;">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귀하</p>			
구비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어선건조허가서 또는 어선건조발주허가서(제21조제2항에 따른 선박의 경우에는 수산업 또는 수산업에 관한 시험·조사·지도·단속 또는 교습에 종사할 수 있음을 증빙하는 서류) 2. 어선총톤수측정증명서 3. 선박등기부등본(「선박등기법」 제2조에 해당하는 어선에 한정합니다) 4. 대체되는 어선의 처리에 관한 서류(어선을 대체하기 위하여 건조 또는 건조발주한 경우에 한정합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제출하는 곳	시·군·구	처리 부서	어선등록 담당부서
수수료	조례에 따름		
처리기간	2일		
유의사항	<p>1. 벌칙규정</p> <p>어선등록 시 교부된 선박국적증서 등을 선내에 갖추지 아니하고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에 사용한 때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p> <p>2. 등록대상 어선</p> <p>가. 건조 또는 건조발주의 허가를 받아 건조한 어선 나. 어선의 등록이 말소된 어선을 다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다. 「선박법」에 따라 등록된 선박을 어선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라. 외국에서 수입한 선박을 어선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p> <p>3. 기타</p> <p>가. 다음의 선박을 어선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산업 또는 수산업에 관한 시험·조사·지도·단속·교습에 종사할 수 있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p> <p>1) 어선의 등록이 말소된 선박 2) 「선박법」에 따라 등록된 선박 3) 외국에서 수입한 선박</p> <p>나. 총톤수 20톤 이상의 어선은 관할 등기소에 선박등기를 하여야 합니다.</p> <p>다. 어선등록을 한 어선의 소유자는 해당 어선에 어선번호판을 부착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산업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어선표지판을 설치하는 어선에 대하여는 어선번호판 부착을 면제합니다.</p>		

어선원부				
조선지		조선자		
진수연월일		원명		
어선번호				
호출부호				
어선의 종류				
어선의 명칭				
선적항				
선체재질				
범선의 범장				
주요 치수 (m)	길이			
	너비			
	깊이			
총톤수(톤)				
용적 (m³)	폐위장소의 합계용적			
	상갑판아래의 용적			
	상갑판위의 용적			
	선수루의 용적			
	선교루의 용적			
	선미루의 용적			
	갑판실의 용적			
	그 밖의 장소의 용적			
	제외장소의 합계용적			
	선수루의 용적			
	선교루의 용적			
	선미루의 용적			
	갑판실의 용적			
	그 밖의 장소의 용적			
기관 종류·마력 및 대수	기관 대 마력	기관 대 마력	기관 대 마력	기관 대 마력
추진기 종류와 수	추진기 기	추진기 기	추진기 기	추진기 기
소유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법인등록번호 및 주소)				
등록 및 변경등록 연월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등록 및 변경등록 사유 등 기타				

210mm×297mm (보존용지(1종) 70g/m²)

제출하는 곳	시·군·구	처리부서	어선등록 담당부서
수수료	조례에 따름		
처리기간	즉시(선적항 변경등록의 경우: 2일)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벌칙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선등록사항의 변경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선의 명칭 또는 선적항을 변경하는 경우 - 수리 또는 개조로 어선의 주요치수 또는 총톤수가 변경되는 경우 - 추진기관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추진기관의 종류 또는 출력을 변경하는 경우 - 어선의 소유자 또는 공유자의 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 기타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선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30일 이내에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어선등록사항정정 신청안내

(뒤쪽)

제출하는 곳	시·군·구	처리부서	어선등록 담당부서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즉시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선등록사항의 정정신청을 하여야 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사항에 착오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 ○ 어선소유자가 어선등록사항에 착오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어선 등록사항의 정정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등록사항에 착오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직권으로 어선원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 선박국적증서 등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선박국적증서 등을 다시 작성하여 발급합니다. 이 경우 종전증서는 반납하여야 합니다. 		

제출하는 곳	시·군·구	처리부서	어선등록 담당부서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즉시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벌칙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선등록말소의 사유가 생긴 때에 30일 이내에 등록말소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 등록말소어선의 어선번호판 및 선박국적증서 등을 반납하지 아니하거나 분실 등의 사유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 등록말소를 신청하여야 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선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경우 -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경우 - 멸실·침몰·해체 또는 노후·파손 등의 사유로 인하여 어선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 6개월 이상 행방불명이 된 경우 ○ 선적항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직권으로 등록말소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 어선의 소유자가 등록말소신청을 기간 내에 하지 아니한 경우 - 해당 어선으로 영위하는 수산업의 허가·신고·면허 등의 효력이 상실된 후 1년이 지난 경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선의 말소등록의 사유가 생긴 때에는 30일 이내에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말소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 말소등록된 어선에 붙어 있는 어선번호판을 지체 없이 제거하여야 하며, 14일 이내에 어선번호판 및 선박국적증서등을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합니다. - 어선번호판 및 선박국적증서등을 분실 등의 사유로 반납할 수 없는 때에는 14일 이내에 그 사유를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선박국적증서					
제	호				
소유자	성명 (법인명)				
	주소	(전화)			
어선번호		총톤수	톤		
어선의 명칭		용적	폐위장소의 합계용적	m ³	
호출부호 또는 명칭			상갑판아래의 용적	m ³	
어선의 종류			상갑판위의 용적	m ³	
선체재질			선수루의 용적	m ³	
선적항			선교루의 용적	m ³	
범선의 범장			선미루의 용적	m ³	
추진기관	기관 대		갑판실의 용적	m ³	
추진기	추진기 기		그 밖의 장소의 용적	m ³	
조선지			제외장소의 합계용적	m ³	
조선자			선수루의 용적	m ³	
진수연월일	년 월 일		선교루의 용적	m ³	
주요 치수	길이		m	선미루의 용적	m ³
	너비		m	갑판실의 용적	m ³
	깊이	m	그 밖의 장소의 용적	m ³	
위의 사항은 모두 정확하며, 이 선박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 [인]					

210mm×297mm(인쇄용지(특급) 120g/m²)

선적증서				
제 호				
소유자	성명 (법인명)	(전화)		
	주소			
어선번호		주요 치수	길이	m
어선의 명칭			너비	m
어선의 종류			깊이	m
선적항		총톤수		톤
추진기관	기관 대			
조선자		진수연월일	년 월 일	
<p>「어선법」 제1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시장 · 군수 · 구청장 [인]</p>				

210mm×297mm(인쇄용지(특급) 120g/m²)

선박국적증서영역서 발급 신청안내

(뒤쪽)

제출하는 곳	시·군·구	처리부서	어선등록 담당부서
수수료	조례에 따름		
처리기간	1일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선의 국제항해 등으로 선박국적증서의 영역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선박국적증서영역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한국어선이 외국에 있는 동안 선박국적증서를 멸실 또는 훼손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외국주재 대한민국 영사에게 가선박국적증서(영역서 포함)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선박국적증서 또는 가선박국적증서의 영역서를 소지한 자가 선박국적증서 또는 가선박국적증서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반납하는 때에는 그 영역서도 같이 반납하여야 합니다. 		

CERTIFICATE OF VESSEL'S NATIONALITY			
Cert. No.			
Owners	Name(Company): Address:		
Official Number	Total Capacity of Enclosed spaces		
Name of Vessel	cubic metres		
Signal Letters	Under the Upper Deck		
Kind of Vessel	cubic metres		
Material of Hull	Closed-in Spaces above the upper		
Port of Registry	deck		
Riggings(If a Sailing Vessel)	cubic metres		
Type and Number of Engines	Forecastle		
Type and Number of Propellers	cubic metres		
Where Built	Bridge		
Name of Builders	cubic metres		
Date of Launch	Poop		
Total Capacity of Exempted spaces			
cubic metres			
Main Dimension	Length	metres	Forecastle
	Breathth	metres	Bridge
	Depth	metres	Poop
Gross Tonngge			Deck Houses
tons			Other Spaces
Other Spaces			
cubic metres			
<p style="text-align: center;">It is hereby certified that the above described particulars are exact in all respect, and that the above-mentioned vessel is of Korean Nationality.</p> <p style="text-align: center;">The day of .</p> <p style="text-align: center;">REPUBLIC OF KOREA</p>			
<p style="text-align: center;">It is hereby certified that the above is a true translation of "Certificate of Vessel's Nationality" of the above-mentioned Vessel.</p> <p style="text-align: right;">The day of , .</p> <p style="text-align: right;">(Signature)</p> <p style="text-align: right;">(Official Position)</p>			

210mm×297mm(인쇄용지(특급) 120g/m²)

어선검사 신청안내

(뒤쪽)

제출하는 곳	선박안전기술공단, 선급법인	처리부서	지부·출장소
수수료	대형 검사기관의 수수료 기준에 따름	처리기간	25일
유의사항	<p><input type="checkbox"/> 어선검사의 종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기검사: 최초로 항행에 목적에 사용하는 때 또는 어선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때 행하는 정밀한 검사 ○ 중간검사: 정기검사와 다음의 정기검사 사이에 행하는 간단한 검사 ○ 특별검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로 특수한 용도에 사용하는 때 행하는 간단한 검사 ○ 임시검사: 정기검사, 중간검사, 특별검사 외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행하는 검사 ○ 임시항행검사: 어선검사증서를 발급받기 전에 어선을 임시로 항행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때 행하는 검사 <p><input type="checkbox"/> 어선검사 면제대상어선</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총톤수 5톤 미만의 무동력어선 2. 「내수면어업법」 제6조, 제9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면허어업, 허가어업 또는 신고어업에 사용되는 어선으로서 최초의 정기검사를 받은 어선 3. 어선검사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일정기간 동안 운항하지 아니할 목적으로 그 증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반납한 후 해당 어선을 계류한 어선 <p><input type="checkbox"/> 기 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기검사는 해당 어선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중간검사는 검사기준일 또는 지정된 검사일 전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1종 및 제2종 중간검사를 받은 어선에 있어서 선저검사는 전회의 선저검사일로부터 3년을 초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해당 어선이 검사받을 장소에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외국에서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로서 새로운 어선검사증서를 어선에 갖추어 둘 수 없는 경우에는 5개월의 범위에서 어선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을 연장 받을 수 있습니다. 		

중간검사시기 연기 신청안내

(뒤쪽)

제출하는 곳	선박안전기술공단, 선급법인	처리부서	지부·출장소
수수료	대행 검사기관의 수수료 기준에 따름	처리기간	3일
유의사항	<p><input type="checkbox"/> 중간검사 연기신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수역에서의 장기간 항행·조업 등 부득이 한 사유로 인하여 중간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중간검사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p><input type="checkbox"/> 기 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간검사시기의 연기로 인하여 연기된 중간검사와 정기검사가 겹치는 경우에는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제1종 중간검사와 제2종 중간검사가 겹치는 경우에는 제1종 중간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건조(별도건조)검사 신청안내

(뒤쪽)

제출하는 곳	선박안전기술공단, 선급법인	처리부서	지부·출장소
수수료	대행 검사기관이 정하는 수수료 기준에 따름	처리기간	건조기간 + 25일 (별도건조검사의 경우 25일)
유의사항	<p><input type="checkbox"/> 건조검사 대상 어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의 어선을 제외한 어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동력어선 - 총톤수 2톤 미만의 어선 - 「내수면어업법」 제6조, 제9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면허어업, 허가어업 또는 신고어업에 사용되는 어선 - 배의 길이 24미터 미만의 목선 - 외국의 조선소에서 건조하는 어선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외국정부 또는 국내외의 공인된 선박검사기관에서 건조검사에 준하는 검사를 받은 어선 <p><input type="checkbox"/> 별도건조검사 대상 어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에서 수입되는 모든 어선 ○ 건조검사를 받지 아니한 모든 어선 <p><input type="checkbox"/> 건조검사를 받아야 하는 설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체, 기관, 배수설비, 조타·계선·양묘설비 및 전기설비 ○ 만재흡수선(해당 어선만 검사받습니다) <p><input type="checkbox"/> 기 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조검사는 해당 어선이 건조에 착수한 때부터 받아야 합니다. ○ 건조검사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 중 기본설계도면 외의 설계도면과 예비검사증서, 검정증서, 건조·제조확인증 또는 정비확인증은 해당 어선시설의 공사착수 전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건조검사에 합격한 부분에 대하여는 최초의 정기검사를 생략합니다. 		

예비검사 신청안내

(뒤쪽)

제출하는 곳	선박안전기술공단, 선급법인	처리부서	지부·출장소
수수료	대행 검사기관이 정하는 수수료 기준에 따름	처리기간	25일
유의사항	<p><input type="checkbox"/> 예비검사대상: 선체·기관·배수 등 별표 3의 어선용품</p> <p><input type="checkbox"/> 기 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비검사는 해당 어선용품의 제조·개조·수리·정비에 착수한 때부터 받아야 합니다. ○ 팽창식 구명설비의 수리·정비에 따른 예비검사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곳 또는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54조 제4항에 따라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부터 팽창식구명설비정비시설등확인서를 발급 받은 곳에서 받아야 합니다. ○ 예비검사에 합격한 어선용품에 대하여는 건조검사 또는 어선검사를 최초로 하는 검사에서 그 합격된 부분의 검사를 생략합니다. 		

팽창식 구멍설비 정비시설 등 확인 신청안내

(뒤쪽)

제출하는 곳	농림수산식품부	처리부서	담당부서
수수료	부령에 따름	처리기간	5일
유의사항	<p><input type="checkbox"/> 팽창식 구멍설비의 종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팽창식 구멍뿔목 ○ 팽창식 구멍부기 ○ 팽창식 구멍조끼 ○ 팽창형(복합형) 구조정 ○ 강하식 탑승장치 <p><input type="checkbox"/> 정비시설 등의 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 작업장, 수세장, 누설시험장, 정비한 구멍뿔목을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이중으로 겹쳐서 저장하는 것을 금한다), 부품 진열장, 사무실 및 위험물 저장소를 갖추어야 합니다. ○ 인원: 팽창식 구멍설비의 제작회사 또는 정비사업장에서 3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자 또는 이와 같은 정비기술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를 2명 이상 확보하고 정비작업에 종사하는 작업원 2명 이상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p><input type="checkbox"/> 기 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에 확인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제 호 팽창식 구멍설비 정비시설 등 확인서	
수리 또는 정비 사업자	① 성명 (법인명)
	② 법인등록번호
	③ 주소
④ 시설의 소재지	
<p style="text-align: center;">「어선법 시행규칙」 제52조제5항에 따라 팽창식 구멍설비에 대한 수리 또는 정비시설 등이 갖추어져 있음을 확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 년 월 일 </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50px;">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인] </p>	

210mm × 297mm[보존용지(1종) 220g/m²]

[별지 제47호서식]

체 호 Certificate No.:			
별도건조검사증서 SPECIAL SHIP-BUILDING SURVEY CERTIFICATE			
건조자 Builder	① 성명 (법인명) Name(Company)		
	② 주소 Address		
③ 어선의 명칭 Name of Ship		④ 건조번호 Building No.	
⑤ 선적항 Port of Registry		⑥ 선질 Ship Material	
⑦ 어업의 종류 Type of Fishery		⑧ 계획총톤수 Design Gross Tonnage	톤 tons
⑨ 주요 치수 Principal Dimensions	길이: 미터, 너비: 미터, 깊이: 미터 Length: m, Breadth: m, Depth: m		
⑩ 추진기관 Main Engine	기관 Type	[킬로와트(kW)] [마력(PS)] Output	대 Nos.
⑪ 비고 Remarks			
「어선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제3항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의 권한으로 이 증서를 발급합니다. This certificate is issu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22 of the Fishing Vessels Act and Article 53.3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Fishing Vessels Act under the authority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년 월 일 Y M D			
농림수산식품부장[인] Minister of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사장) (President of Korea Ship Safety Technology Authority) (선급법인의 장) (President of Classification Society)			

210mm × 297mm[보존용지(1종) 220g/m²]

도면승인(변경) 신청안내

(뒤쪽)

제출하는 곳	선박안전기술공단, 선급법인	처리부서	지부·출장소
수수료	대행 검사기관의 수수료 기준에 따름	처리기간	25일
유의사항	<p><input type="checkbox"/> 도면승인 신청</p> <p>○ 건조(별도)검사, 정기검사, 중간검사, 특별검사, 임시검사, 예비검사 및 만재흡수선을 지정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어선의 도면에 대하여 미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p>		

형식승인 신청안내

(뒤쪽)

제출하는 곳	농림수산식품부	처리부서	담당부서
수 수 료	부령에 따름	처리기간	5일
유의사항			

[별지 제50호서식]

형식승인증서 CERTIFICATE OF TYPE APPROVAL			
발급번호: 제 - 호 Issuing No.:		증서번호: 제 - 호 Certificate No.:	
신청인 Applicant	① 성명(법인명) Name(Company)		
	② 생년월일 Date of Birth (법인등록번호) Registration No.		
	③ 주소 Address		
제조자 Manufacturer	④ 성명(법인명) Name(Company)		
	⑤ 주소 Address		
형식승인대상물건 Particular of Articles	⑥ 품명 Name of Articles		
	⑦ 규격 Size		
	⑧ 형식 Type		
시험인증 사항 Test Certificate including Test Report	⑨ 시험 기관 Testing Laboratory		
	⑩ 합격증명서번호 Certificate No.	⑪ 증명서 발급일자 Date of Issue	
⑫ 비고 Remarks			
<p>「어선법 시행규칙」 제59조제3항에 따라 이 증서를 발급합니다.</p> <p>This certificate is issued under Article 59.3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Fishing Vessels Act and the provisions of SOLAS (COLREG, IMO Res., LSA Code)</p> <div style="text-align: right; margin-top: 20px;"> 년 월 일 Y M D </div>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농림수산식품부장관[인]</p> <p style="text-align: center;">Minister of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p>			

210mm × 297mm[보존용지(1종) 220g/m²]

검정신청서

※ 뒤 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① 성명 (법인명)		② 법인등록번호	
	③ 주소	(전화:)		
제조사	④ 성명 (법인명)			
	⑤ 주소			

형식승인대상물건의 내용

⑥ 형식승인 증 서번호, 형식승인 일자	⑦ 품명	⑧ 규격	⑨ 형식	⑩ 수량	⑪ 제조번호	⑫ 제조일자
⑬ 검정요청일				⑭ 검정장소		
⑮ 비고						

「어선법 시행규칙」 제59조의2제1항에 따라 검정을 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210mm × 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형식승인대상물건의 검정신청안내

(뒤쪽)

제출하는 곳	선박안전기술공단, 선급법인	처리부서	지부·출장소
수수료	대행 검사기관의 수수료의 기준에 따름	처리기간	5일
유의사항	<p><input type="checkbox"/> 형식승인을 받은 자는 제조하거나 수입한 형식승인대상물건에 대하여 검정을 받아야 합니다.</p> <p><input type="checkbox"/> 형식승인대상물건에 표시하여야 할 사항(크기나 모양을 고려하여 표시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형식승인 품명·형식 및 규격(규격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 형식승인증서 번호와 형식승인 일자 ○ 제조번호와 제조일자 		

형식승인사항변경승인 신청안내

(뒤쪽)

제출하는 곳	농림수산식품부	처리부서	담당부서
수 수 료	부령에 따름	처리기간	5일
유 의 사 항			

[별지 제53호서식]

제 호 Certificate No. : 형식승인사항 변경승인서 CERTIFICATE OF CHANGE OF TYPE APPROVAL CONTENTS			
신청인 Applicant	① 성명(법인명) Name(Company)		
	② 생년월일 Date of Birth (사업자등록번호) Registration No.		
	③ 주소 Address		
제조사 Manufacturer	④ 성명(법인명) Name(Company)		
	⑤ 주소 Address		
형식승인대상 물건 Particular of Articles	⑥ 품명 Name of Articles		
	⑦ 규격 Size		
	⑧ 형식 Type		
시험인증사항 Test Certificate including Test Report	⑨ 시험기관 Testing Laboratory		
	⑩ 합격증명서번호 Certificate No.	⑪ 증명서 발급일자 Date of Issue	
변경사항 Contents Changed	⑫ 변경 전 Before		⑬ 변경 후 After
「어선법 시행규칙」 제59조의3제2항에 따라 이 승인서를 발급합니다. This certificate is issued under Article 59-3.2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Fishing Vessels Act <div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 년 월 일 Y M D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인] Minister of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div>			

210mm × 297mm[보존용지(1종) 220g/m²]

<p>구 비 서 류</p>	<p>5) 시험과 검사체계 라. 지정대상물건의 정비에 관한 규정(우수정비사업장의 인정을 받으려는 자로 한정합니다) 1) 분해 및 조립방법과 사용공구 2) 부품 또는 부재별 점검 및 정비방법 3) 부품 또는 부재별 사용시간과 손상정도 등에 따른 사용한도의 판정기준, 4) 조립 후의 조정방법 마. 지정대상물건에 대한 자체검사기준 2. 우수사업장으로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할 경우 지정받은 사항의 변경내용 및 사유를 적은 서류</p>		
<p>제출하는 곳</p>	<p>농림수산식품부</p>	<p>처리부서</p>	<p>담당부서</p>
<p>수 수 료</p>	<p>부령에 따름</p>	<p>처리기간</p>	<p>25일</p>
<p>유 의 사 항</p>			

우수사업장지정서 CERTIFICATE OF RECOGNIZED MANUFACTURING (MAINTENANCE) FACTORY			
발급번호: 제 - 호 Issuing No.:		증서번호: 제 - 호 Certificate No.:	
사업자	① 성명(법인명) Name(Company)		
	② 생년월일 Date of Birth (법인등록번호) Registration No.		
	③ 주소 Address		
④ 사업장의 주소 Factory Address			
지정대상물건 Particular of Articles			
⑤ 형식승인증서 번호 Type Approval Certificate No.	⑥ 품명 Name of Articles	⑦ 규격 Size	⑧ 형식 Type
⑨ 비고 Remarks			
<p>「어선법 시행규칙」 제59조의5제2항에 따라 이 지정서를 발급합니다. This is to certify that the factory above has been designated as a recognized manufacturing and maintenance factory in accordance with Article 59-5.2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Fishing Vessels Act.</p> <div style="text-align: right; margin-top: 20px;"> 년 월 일 Y M D </div>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인] Minister of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210mm × 297mm[보존용지(1종) 220g/m²]

지정대상물건의 확인신청안내

(뒤쪽)

제출하는 곳	선박안전기술공단, 선급법인	처리부서	지부·출 장소
수 수 료	대행 검사기관이 정하는 수수료 기준에 따름	처리기간	5일
유 의 사 항	<input type="checkbox"/> 확인대상 ○ 건조·제조·정비 확인대상 품목(제59조의7제1항) <input type="checkbox"/> 지정대상물건에 표시하여야 할 사항(크기나 모양을 고려하여 표시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우수사업장의 명칭, 지정번호 및 지정일자 ○ 지정 품명·형식 및 규격(규격이 있는 경우에만 표시합니다) ○ 건조일자·제조일자 또는 정비일자 ○ 건조번호·제조번호 또는 정비번호		

제 호 Certificate No. : 자체검사 합격증서 CERTIFICATE OF SHIP-BUILDING (MANUFACTURING · MAINTENANCE) APPROVED USE						
사 업 자	① 성명(법인명) Name(Company)	② 생년월일 Date of Birth (법인등록번호) Registration No.				
	③ 주소 Address					
④ 사업장 주소 Factory Address						
형식승인 대상물건의 내용 Particular of Articles						
⑤ 형식승인증서 번호 Type Approval Certificate No.	⑥ 품명 Articles	⑦ 규격 Size	⑧ 형식 Type	⑨ 수량 Quantity	⑩ 건조·제조 (정비)번호 Manufacturer Serial No.	⑪ 비고 Remarks
<p style="text-align: center;">「어선법」 제2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의7제4항에 따라 대한 민국 정부의 권한으로 이 증서를 발급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This certificate is issued under Article 27.1 of the Fishing Vessels Act and Article 59-7.4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Fishing Vessels Act under the authority of the Government of Republic of Korea.</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 년 월 일 Y M D </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 우수사업장의 장[인] President of Designated Factory </p>						

210mm × 297mm[보존용지(1종) 220g/m²]

제 호					
제한하중 등 확인서					
① 어선의 명칭				② 어선번호	
③ 종류·위치 및 번호	④ 하중시험을 할 때 붐의 각도(지브크레인의 선화반경)	⑤ 시험하중 (톤)	⑥ 제한하중 (톤)	⑦ 제한각도 (제한반경)	⑧ 비 고
<p>「어선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 확인서를 발급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농림수산식품부장관[인]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사장) (선 급 법 인 의 장)</p>					

210mm × 297mm[보존용지(1종) 220g/m²]

하역설비검사기록부

① 어선의 명칭	
② 어선번호	
③ 선적항	

210mm × 297mm[보존용지(1종) 220g/m²]

(1) 하역장치(크레인, 윈치 및 호이스트는 제외한다)의 검사 기록

위치 또는 번호	제한하중 등 지정서 번호	정기검사		중 간 검 사				비고
		연월일	선박검사원의 성명	연월일	선박검사원의 성명	연월일	선박검사원의 성명	

210mm × 297mm[보존용지(1종) 220g/m²]

(2) 하역장치(크레인, 윈치 및 호이스트)의 검사 기록

종류 및 그 위치 또는 번호	제한하중등 지정서 번호	검사 연월일	선박검사원의 성명	검사 연월일	선박검사원의 성명	비고

210mm × 297mm[보존용지(1종) 220g/m²]

제 호 Certificate No:			
어선검사증서 FISHING VESSEL SURVEY CERTIFICATE			
① 어선의 명칭 Name of Ship		② 어선번호 Official Number	
③ 선질 Ship's Material		④ 총톤수 Gross Tonnage	톤 tons
⑤ 어업의 종류 Type of Fishery			
⑥ 추진기관 Main Engine	기관 Type	[kW] [PS] Output	대 Number of Units
⑦ 배의 길이 Ship's Length	미터 m	⑧ 무선설비 Radio Equipment	
⑨ 최대승선인원 Max. Number of Allowable Persons on board	명(어선원: 명, 기타의 자: 명) Total p(Crew: p, Other Personnel: p)		
⑩ 항해와 관련한 조건 Conditions for Navigation			
⑪ 유효기간 Validity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This certificate is valid from . . . until . . .		
<p>「어선법」 제2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의 권한으로 이 증서를 발급합니다.</p> <p>This certificate is issu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27.1 of the Fishing Vessels Act and Article 63.1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Fishing Vessels Act under the authority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p> <p style="text-align: right;"> 년 월 일 Y M D </p> <p style="text-align: center;">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인] Minister of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사장) (President of Korea Ship Safety Technology Authority) (선급법인의 장) (President of Classification Society) </p>			

210mm × 297mm[보존용지(1종) 220g/m²]

(뒤쪽)

검사기록 Survey Records					
차기검사 Next Survey			검사완료일 Date of Survey	선박검사의원 성명 Name of Surveyor	검사기관(인) Survey Organization
검사기준일 Anniversary Date	검사종류 Kind of Survey	검사사항 Survey Items			
비 고 Remarks					

제 호 Certificate No:			
어선검사증서 FISHING VESSEL SURVEY CERTIFICATE			
① 어선의 명칭 Name of Ship		② 어선번호 Official Number	
③ 선질 Ship's Material		④ 총톤수 Gross Tonnage	톤 tons
⑤ 어업의 종류 Type of Fishery			
⑥ 추진기관 Main Engine	기관 [kW] Type	[PS] 대 Output Number of Units	
⑦ 배의 길이 Ship's Length	미터 m	⑧ 무선설비 Radio Equipment	
⑨ 최대승선인원 Max. Number of Allowable Persons on board	명(어선원: 명, 기타의 자: 명) Total p(Crew: p, Other Personnel: p)		
⑩ 항해와 관련한 조건 Conditions for Navigation			
⑪ 유효기간 Validity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This certificate is valid from . . . until . . .		
<p>「어선법」 제2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의 권한으로 이 증서를 발급합니다.</p> <p>This certificate is issu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27.1 of the Fishing Vessels Act and Article 63.1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Fishing Vessels Act under the authority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 Y M D</p> <p style="text-align: center;">농림수산식품부장관[인] Minister of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사장) (President of Korea Ship Safety Technology Authority) (선급법인의 장) (President of Classification Society)</p>			

210mm × 297mm[보존용지(1종) 220g/m²]

(뒤쪽)

⑫ 만재 흘 수선 의 위 치 Load Line	갑판선의 상면의 위치: 배의 길이의 중앙에 있어서 갑판의 선측 상면의 연장과 외판의 외면과의 교 점으로부터방향으로 밀리미터 The upper edge of the deck line from which these freeboards are measured is mm from the top of the deck at side				
	만재흘수를 표시하는 수평선[하기만재흘수선(S)·해수만재흘수선 또는 만재흘수선]의 상면의 위치: 갑판선의 상면으로부터 하방으로 밀리미터 Summer Load Line(S) below from the upper edge of deck line				
	동기만재흘수선(W)의 위치: S의 하방으로 밀리미터 Winter Load Line(W): below from Summer Load Line				
	동기북대서양만재흘수선(WNA)의 위치: S의 하방으로 밀리미터 Winter North Atlantic Load Line(WNA): mm below from Summer Load Line				
	열대만재흘수선(T)의 위치: S의 상방으로 밀리미터 Tropical Load Line(T): above from Summer Load Line				
위의 각 만재흘수에 대응하는 담수만재흘수선의 위치: 각 만재흘수선 상방으로 밀리미터 Allowance for fresh water for all freeboards other than timber:					
「어선법 시행규칙」 제67조에 따른 어선검사증서 유효기간 연장 Endorsement to extend the Validity of the Certificate					
연장된 유효기간 Extended Date of Validity		년 월 일까지 This certificate is valid until . . .		검사기관(인) Survey Organization	
검사기록 Survey Records					
차기검사 Next Survey			검사완료일 Date of Survey	선박검사원의 성명 Name of Surveyor	검사기관(인) Survey Organization
검사기준일 Anniversary Date	검사종류 Kind of Survey	검 사 사 항 Survey Items			
비 고 Remarks					

[별지 제63호서식]

제 호 Certificate No.: 어선특별검사증서 FISHING VESSEL SPECIAL SURVEY CERTIFICATE			
① 어선의 명칭 Name of Ship		② 어선번호 Official Number	
③ 선질 Ship's Material		④ 총톤수 Gross Tonnage	톤 tons
⑤ 어업의 종류 Type of Fishery			
⑥ 추진기관 Main Engine	기관 [kW] Type	[PS] Output	
⑦ 배의 길이 Ship's Length	미터 m	⑧ 무선설비 Radio Equipment	
⑧ 최대승선인원 Max. Number of Allowable Persons on board	명(어선원: 명, 기타의 자: 명) Total p(Crew p, Other Personnel p)		
⑨ 유효기간 Validity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This certificate is valid from . . . until . . .		
⑩ 항해와 관련한 조건 Conditions for Navigation			
<p>「어선법」 제2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의 권한으로 이 증서를 발급합니다.</p> <p>This certificate is issu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27.1 of the Fishing Vessels Act and Article 63.1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Fishing Vessels Act under the authority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 Y M D</p> <p style="text-align: center;">농림수산식품부장관[인] Minister of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사장) (President of Korea Ship Safety Technology Authority) (선급법인의 장) (President of Classification Society)</p>			

210mm × 297mm[보존용지(1종) 220g/m²]

제 호 Certificate No.: 임시항행검사증서 TEMPORARY NAVIGATION CERTIFICATE			
① 어선의 명칭 Name of Ship		② 어선번호 Official Number	
③ 선적항 Port of Registry		④ 선질 Ship's Material	
⑤ 총톤수 Gross Tonnage	톤 Tons	⑥ 어업의 종류 Type of Fishery	
⑦ 배의 길이 Ship's Length	미터 m		
⑧ 최대승선인원 Max. Number of Allowable Persons on board	명(어선원: 명, 기타의 자: 명) Total p(Crew p, Other Personnel p)		
⑨ 항로 Navigation Route			
⑩ 유효기간 Validity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This certificate is valid from . . . until . . .		
⑪ 항해와 관련한 조건 Conditions for Navigation			
<p>「어선법」 제2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의 권한으로 이 증서를 발급합니다.</p> <p>This certificate is issu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27.1 of the Fishing Vessels Act and Article 63.1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Fishing Vessels Act under the authority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 년 월 일 Y M D </p> <p style="text-align: center;">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인] Minister of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사장) (President of Korea Ship Safety Technology Authority) (선급법인의 장) (President of Classification Society) </p>			

210mm × 297mm[보존용지(1종) 220g/m²]

제 호 Certificate No.:			
건조검사증서 SHIP-BUILDING SURVEY CERTIFICATE			
건조자 Builder	① 성명 (법인명) Name(Company)		
	② 주소 Address		
③ 어선의 명칭 Name of Ship		④ 건조번호 Building No.	
⑤ 선적항 Port of Registry		⑥ 선질 Ship Material	
⑦ 어업의 종류 Type of Fishery		⑧ 계획총톤수 Design Gross Tonnage	톤 tons
⑨ 주요치수 Principal Dimensions		길이: 미터, 너비: 미터, 깊이: 미터 Length: m, Breadth: m, Depth: m	
⑩ 추진기관 Main Engine		기관 Type	[킬로와트(kW)] [마력(PS)] Output 대 Nos.
⑪ 비고 Remarks			
「어선법」 제2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의 권한으로 이 증서를 발급합니다. This certificate is issu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27.1 of the Fishing Vessels Act and Article 63.1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Fishing Vessels Act under the authority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년 월 일 Y M D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인] Minister of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사장) (President of Korea Ship Safety Technology Authority) (선급법인의 장) (President of Classification Society)			

체 호 Certificate No.:					
예비검사증서 CERTIFICATE OF ARTICLES FOR SHIP USE					
신청인 Applicant	① 성명(법인명) Name(Company)			②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Registration No.	
	③ 주소 Address	(전화(Tel.):)			
어선용품의 내용 PARTICULAR OF ARTICLES					
④ 품명 Name of Articles	⑤ 규격 Size	⑥ 형식 Type	⑦ 수 량 Quantity	⑧ 제조번호 Manufacturer Serial No.	⑨ 검사번호 Inspection No.
⑩ 비고 Remarks					
<p style="text-align: center;">「어선법」 제2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제1항에 따라 대한 민국 정부의 권한으로 이 증서를 발급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This certificate is issu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27.1 of the Fishing Vessels Act and Article 63.1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Fishing Vessels Act and the provisions of (<input type="checkbox"/> IMO Res. <input type="checkbox"/> SOLAS <input type="checkbox"/> LSA Code <input type="checkbox"/> COLREG) under the authority of the Government of Republic of Korea.</p> <div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 년 월 일 Y M D </div>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인] Minister of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사장) (President of Korea Ship Safety Technology Authority) (선급법인의 장) (President of Classification Society) </p>					

210mm × 297mm[보존용지(1종) 220g/m²]

체 호 Certificate No.:						
검정증서 CERTIFICATE OF SHIP EQUIPMENT INSPECTION FOR SHIP USE OF APPROVED TYPE						
신청인 Applicant	① 성명(법인명) Name(Company)					
	②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Registration No.					
	③ 주 소 Address					
형식승인대상물건의 내용(PARTICULAR OF ARTICLES)						
④ 형식승인증서 번호 Type Approval Certificate No.	⑤ 품명 Name of Articles	⑥ 규격 Size	⑦ 형식 Type	⑧ 수량 Quantity	⑨ 제조번호 Manufacturer Serial No.	⑩ 제조일자 Date of Manufacturer
⑪ 비고 Remarks						
<p style="text-align: center;">「어선법」 제2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제1항에 따라 대한 민국 정부의 권한으로 이 증서를 발급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This is to certify that the above articles have been examined and tested in accordance with the requirements of Article 27.1 of the Fishing Vessels Act and Article 63.1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Fishing Vessels Act and the provisions of (<input type="checkbox"/> IMO Res. <input type="checkbox"/> SOLAS <input type="checkbox"/> LSA Code <input type="checkbox"/> COLREG) under the authority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p> <div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 년 월 일 Y M D </div>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인] Minister of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사장) (President of Korea Ship Safety Technology Authority) (선급법인의 장) (President of Classification Society) </p>						

210mm × 297mm[보존용지(1종) 220g/m²]

제 호 Certificate No.						
건조(제조·정비)확인증 CERTIFICATE OF SHIP-BUILDING(MANUFACTURING · MAINTENANCE) VERIFICATION						
사업자	① 성명(법인명) Name(Company)					
	②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Registration No.					
	③ 주소 Address					
④ 사업장 주소 Factory Address						
지정대상물건의 내용 Particular of Articles						
⑤ 형식승인증서 번호 Type Approval Certificate No.	⑥ 품명 Articles	⑦ 규격 Size	⑧ 형식 Type	⑨ 수량 Quantity	⑩ 제조(정비)번호 Manufacturer Serial No.	⑪ 비고 Remarks
<p>「어선법」 제2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의 권한으로 증서를 발급합니다.</p> <p>This certificate is issued under Article 27.1 of the Fishing Vessels Act and Article 63.1 Enforcement Decree of the Fishing Vessels Act under the authority of the Government of Republic of Korea.</p> <p style="text-align: right;"> 년 월 일 Y M D </p> <p style="text-align: center;">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인] Minister of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사장) (President of Korea Ship Safety Technology Authority) (선급법인의 장) (President of Classification Society) </p>						

210mm × 297mm[보존용지(1종) 220g/m²]

어선검사증서 유효기간연장 신청안내

(뒤쪽)

제출하는 곳	선박안전기술공단, 선급법인	처리부서	지부·출장소
수수료	대행 검사기관의 수수료 기준에 따름	처리기간	2일
유의사항	<p><input type="checkbox"/> 어선검사증서의 유효기간: 5년</p> <p><input type="checkbox"/> 어선검사증서 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어선이 정기검사를 받을 장소에 있지 아니하여 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그 유효기간을 연장 받을 수 있습니다. ○ 해당 어선이 외국에서 정기검사를 받는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로서 새로운 어선검사증서를 즉시 발급할 수 없거나 어선에 갖추어 둘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5개월의 범위에서 그 유효기간을 연장 받을 수 있습니다. <p><input type="checkbox"/> 기 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장된 기간 내에 해당 어선이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장소에 도착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제 호 어선검사증서(국제협약검사증서) 유효기간 연장증인서			
① 어선의 명칭		② 어선번호	
③ 선적항		④ 선질	
⑤ 총톤수	톤	⑥ 어업의 용도	
⑦ 현증서유효기간	년 월 일	일부터	년 월 일까지
⑧ 연장된기간	년 월 일	일부터	년 월 일까지
⑨ 연장조건	연장된 기간 내에 해당 어선이 검사받을 장소에 도착한 경우에는 검사일 후의 기간에 대한 연장의 효력은 상실됩니다.		
「어선법 시행규칙」 제67조제3항제1호에 따라 이 증인서를 발급합니다. <div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 년 월 일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인]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사장) (선급법인의 장) </div>			

210mm × 297mm[보존용지(1종) 220g/m²]

재검사·재검정 또는 재확인 신청안내

(뒤쪽)

제출하는 곳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처리부서	담당부서
수수료	부령에 따름	처리기간	14일
유의사항	<p><input type="checkbox"/> 어선의 검사 등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사유서를 갖추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p> <p><input type="checkbox"/> 재검사 등을 신청한 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관계 부분의 원상을 변경할 수 없으며, 관계 부분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에는 재검사 등을 하지 아니합니다.</p>		

어선결함신고서			
신고자	① 성명		
	② 주소	(전화:)	
③ 어선의 명칭		④ 선적항	
⑤ 선장		⑥ 어선회사	
⑦ 결함내용			
「어선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 따라 위의 어선에 대한 결함을 신고합니다.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margin-top: 20px;"> 신 고 인 년 월 일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margin-top: 10px;"> (서명 또는 인) </div>			
귀하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제 호 출항정지명령서			
① 어선의 명칭		② 선장명	
③ 어선번호		④ 국적	
⑤ 총톤수		⑥ 어업의 종류	
⑦ 입항일자	년 월 일	⑧ 출항예정일자	년 월 일
⑨ 출항정지사유			
⑩ 출항정지기간 및 해제조건			
⑪ 비고	출항정지 사유가 해소되면 바로 출항할 수 있으니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해당 선박검사원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p style="text-align: center;">「어선법 시행규칙」 제70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출항정지명령서를 발급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 font-weight: bold; margin-top: 20px;">농림수산식품부장관[인]</p>			

210mm × 297mm[보존용지(1종) 220g/m²]

증서등 재발급신청서				
※ <input type="checkbox"/> 는 해당란에 <input checked="" type="checkbox"/> 표시하며, 뒷면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증서명				
② 증서번호	제 호	③ 교부일자	년 월 일	
신청인	④ 성명(법인명)	⑤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⑥ 주소	(전화)		
어선내역	⑦ 어선번호			
	⑧ 어선의 명칭	⑨ 총톤수	톤	
	⑩ 진수연월일	년 월 일	⑪ 선체재질	<input type="checkbox"/> 강 <input type="checkbox"/> 목 <input type="checkbox"/> FRP <input type="checkbox"/> 기타()
	⑫ 선적항			
⑬ 신청사유				
<p style="text-align: center;">「어선법」 제18조,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center; font-weight: bold; font-size: 1.2em; margin-top: 20px;">귀하</p>				
구비서류	1. 잃어버린 경우: 사유서 2. 헐어 못쓰게 된 경우: 해당 증서 등 3.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해당 증서 등 및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제출하는 곳	농림수산식품부, 시·군·구, 영사,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선급
처리부서	어선 등록관련 담당부서
수수료	조례 및 대행 검사기관 수수료 기준에 따름
처리기간	즉시
유의사항	<p>○ 재발급하는 증서의 종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선(건조·건조발주)허가서·어선(개조·개조발주)허가서·어선건조(건조발주·개조·개조발주)허가사항변경허가서, 어선총톤수측정증명서, 국제톤수증서·국제톤수확인서, 재화중량톤수증서, 선박국적증서·선적증서·등록필증, 선박국적증서영역서, 어선검사증서, 어선특별검사증서, 임시항행검사증서, 건조검사증서, 예비검사증서, 검정증서, 건조(제조·정비)확인증, 별도건조검사증서, 팽창식 구명설비 정비시설 등 확인서, 형식승인증서, 형식승인사항 변경승인서, 우수사업장지정서, 어선검사증서 유효기간 연장승인서, 출항정지명령서 <p>○ 재발급 받고자 하는 해당증서의 기재사항의 변경이 있거나 헛어서 못쓰게 된 경우 또는 잃어버린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해당증서를 발급한 기관에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합니다.</p>

어선의 건조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칙

전부개정 2010.02.10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13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어선법」 제39조에 따라 어선의 건조·개조허가, 형식승인 또는 우수건조사업장 등의 지정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 내야 할 수수료의 금액과 그 납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및 수수료 금액) ① 「어선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어선의 건조·개조허가 및 그 변경허가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24조에 따른 어선용품 등의 형식승인 및 그 변경승인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③ 법 제25조에 따른 어선 등 우수건조사업장 등의 지정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제3조(수수료의 납부방법) 제2조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내야 한다. 다만,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직불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게 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어선의 건조·개조허가 등에 대한 수수료(제2조제1항 관련)

(단위: 원)

구 분	수 수 료	
	건조허가	개조허가
1. 「원양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원양어업에 사용할 어선	2,000	1,000
2. 「수산업법」 제45조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시험어업, 연구어업 또는 교섭어업에 사용할 어선	1,000	1,000
3. 「해운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하는 외항화물운송사업에 사용할 수산물운반선	2,000	1,000
4.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어업에 관한 기술보급, 시험·조사 또는 지도·감독에 사용할 어선	1,000	1,000
※ 비고 ○ 건조허가는 건조허가 또는 건조발주허가 및 그 변경허가를 포함한다. ○ 개조허가는 개조허가 또는 개조발주허가 및 그 변경허가를 포함한다.		

[별표 2]

어선용품 등의 형식승인에 대한 수수료(제2조제2항 관련)

(단위: 원)

구 분	수 수 료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	3,000

[별표 3]

우수사업장의 지정에 대한 수수료(제2조제3항 관련)

(단위: 원)

구 분	수 수 료
1. 우수건조사업장의 지정	100,000
2. 우수제조사업장의 지정	100,000
3. 우수정비사업장의 지정	100,000
※ 비고 우수사업장의 지정은 「어선법 시행규칙」 제59조의4에 따른 지정대상물건별 별로 지정하며, 물건을 추가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의 물건별 추가 또는 변경 수수료는 30,000원으로 한다.	

어선 검사업무 등에 관한 대행업무 범위

제정 1979.01.05 수산청고시	제1979-01호
전문개정 1999.12.23 해양수산부고시	제1998-54호
전문개정 2009.12.14.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09-405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어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에 따른 「선박안전법」 제45조에 따라 설립된 선박안전기술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이하 "선급법인"이라 한다)이 대행하는 업무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행업무의 범위) 공단 또는 선급법인이 대행하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선급법인의 경우 제2호 및 제6호의 업무는 제외한다.

1. 법 제6조에 따른 국제협약의 적용을 받는 어선의 검사 및 증서교부
2. 법 제14조에 따른 어선의 총톤수 측정·개측
3. 법 제21조에 따른 어선의 검사
4. 법 제22조에 따른 어선의 건조검사, 어선용품의 예비검사 및 별도 건조검사
5.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어선 또는 어선용품의 검정
6. 법 제25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우수건조사업장·우수제조사업장 또는 우수정비사업장의 지정을 위한 조사 및 어선·어선용품의 확인
7. 법 제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검사증서·검정증서·확인증 또는 어선총톤수측정증명서(국제톤수증서, 국제톤수확인서 및 재화중량

톤수증서를 포함한다) 발급

8.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어선검사증서의 유효기간 연장

제3조(어선검사증서 등) 제2조제6호에 따른 어선검사증서 등의 발급과 증인의 표시는 다음에 따른다.

1. 어선검사증서 등의 서식 적용에 있어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공단 이사장 또는 선급법인 회장으로 한다. 다만, 소유자 또는 제조자가 요청할 때에는 동 서식의 영역서를 교부할 수 있다.
2. 검사에 합격된 어선 또는 어선용품에 대하여는 공단 또는 선급법인의 증인을 타각 또는 날인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행검사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공단 또는 선급법인이 대행한 어선검사 등의 업무는 이 고시에 따라 대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고시의 폐지) 「어선의 총톤수 측정 등에 관한 대행업무 범위(해양수산부고시 제1999-100호, 1999. 12. 23)」는 폐지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2년 12월 13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어선 건조·개조허가 오차 허용범위

제정 1994.01.06 수산청고시 제1994-01호
개정 1998.06.13 해양수산부고시 제1998-37호
(원양선원및어선사고관리요령등일
제정비에관한고시)

개정 2009.09.10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09-315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어선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어선건조·개조허가를 받은 어선의 주요치수, 총톤수 등에 관하여 오차허용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오차허용범위) 어선건조·개조허가를 받은 어선의 주요치수 및 총톤수 등에 관한 오차허용범위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다만, “어업허가및신고등에관한규칙”등에서 정한 상한톤수 또는 기관마력을 초과하거나 하한톤수를 미달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98. 6. 13]

1. 주요치수 : 제한없음. 다만 길이 24미터미만의 어선은 길이 24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2. 총톤수 : 총톤수 8톤미만의 어선은 10퍼센트이내
총톤수 8톤이상의 어선은 5퍼센트이내
3. 기관마력 : 제한없음

부 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 (다른 고시의 폐지)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어업별어선의적정규모(척당상한톤수)및기준총선복량등에관한고시”(‘93. 3. 2 수산청 고시

제93-4호)는 폐지한다.

부 칙 [1998.06.13]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어선명칭의크기및표시방법등에관한고시

제정 1993.09.02. 수산청고시 제1993-13호

개정 1998.06.13. 해양수산부고시 제1998-37호

(원양선원및어선사고관리요령등일
제정비에관한고시)

개정 2009.09.10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09-317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어선법시행규칙 제24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업종별 어선 명칭의 크기 및 표시방법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고시의 적용대상어선은 다음과 같다.

1. 대형기선저인망어업에 사용하는 어선
2. 대형트롤어업에 사용하는 어선

제3조(어선 명칭의 크기 및 글자획의 굵기) ①어선 명칭의 글자 또는 숫자당 크기는 선수인 경우 가로 $T/4.5+10(\text{cm})$ 이상 세로 $T/3.5+10(\text{cm})$ 이상으로 하고 선미인 경우 가로 세로 각각 선수 선명의 크기의 60% 이상으로 하되 10센티미터보다는 크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T는 총톤수의 값을 말한다.

③글자 및 숫자의 획의 굵기 및 글자와 글자 또는 숫자와의 간격은 글자 또는 숫자 세로높이의 8분의 1 이상으로 하되 원거리에서 식별이 가능하여야 한다.

제4조(어선 명칭의 표시방법 및 위치) ①어선 명칭의 표시방법은 선수양현 및 선미에 음각이나 양각으로 표시한다. 다만 선미에 슬립웨이(Slipway)가 있는 경우에는 선미양현에 표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선 명칭의 표시는 한글로 표시하고 숫자가 포함된 경우에는 아라비아숫자로 표시하되 흐려 써서는 아니된다.

③어선명칭의 표시위치는 별표 1에 의한다. 다만 어선 명칭의 표시 위치가 선형이나 구조상 부적합할 경우에는 가장 근접한 위치로 조정할 수 있으며 숫자가 포함되어 있는 어선의 명칭에는 한글명칭상단에 숫자를 표시할 수 있다.

제5조(선적항 표시의 크기 및 표시위치) ①선적항 표시의 크기는 선미 어선 명칭의 가로 세로 각각 60%이상으로 하되 10센티미터보다는 크게하여야 한다

②선적항 표시위치는 선미 어선 명칭의 하단에 표시하되 어선명칭과 선적항표시와의 간격은 선적항표시 세로크기의 50%이상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기존어선에 대하여는 '93.12.31까지 동 고시에 의한 어선의 명칭 및 선적항을 표시하고 확인은 당해어선의 어선검사(정기,중간,임시검사)시에 실시한다.

부 칙 [1998.06.13]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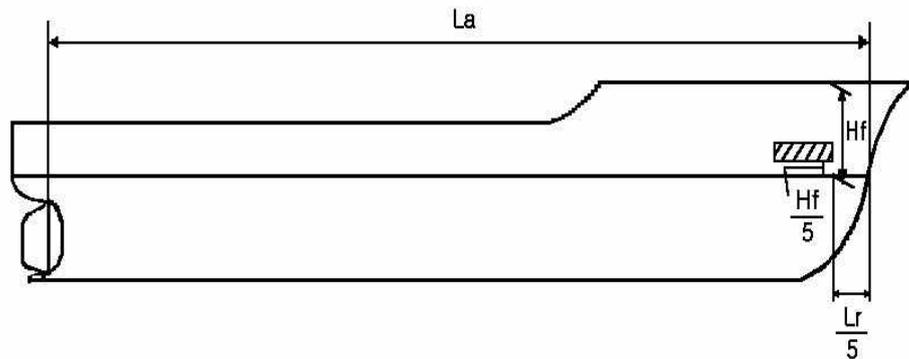
[별표 1]

어선 명칭의 표시위치(제4조제3항 관련)

○ 선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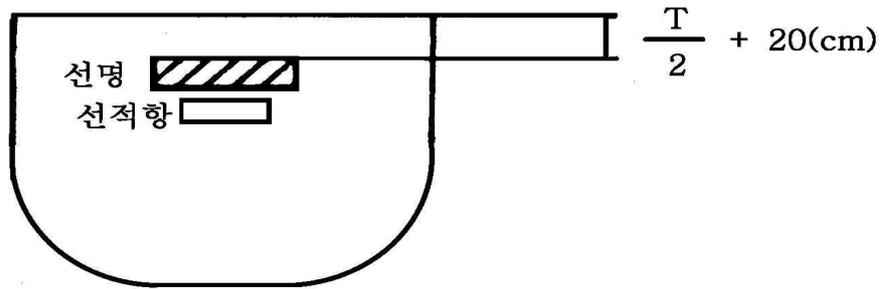
- 상갑판상 선수재 전면으로부터 선미방향으로 $L_r/20(M)$ 되는 점과 동지점의 상갑판상에서 현장쪽으로 $H_f/5(M)$ 되는 점과의 교차점에 어선 명칭의 첫글자나 끝글자의 우측하단이 오도록 표시 이경우에 L_r 은 등록된 길이의 값으로 하고 H_f 는 상갑판상 선수재 전면으로부터 $L_r/20(M)$ 되는 지점의 상갑판상에서 현장상단까지의 수직거리의 값으로 한다.

[표시예]



○ 선미

- 슬립웨이(Slipway)가 없는 경우에는 선미현장 상단에서 수직으로 $T/2 + 20(\text{cm})$ 하부 위치의 중앙부에 표시 이경우 T 는 총톤수 값으로 한다.



- 슬립웨이(Slipway)가 있는 경우에는 선미현장 상단에서 수직으로 1미터 하부와 선미의 끝단에서 선수쪽으로 1.2-1.5미터 되는 위치와의 교차점에 어선의 명칭의 첫 글자나 끝글자의 좌측상단이 오도록 표시

[표시 예]

